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2022.11.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 담당

전상곤	교수(경상국립대)	연구총괄, 통계, 법률, 정책 자료 분석
문동현	교수(경상국립대)	농가경제통계 분석
박동주	학생(경상국립대)	연구, 행정 보조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2022.11.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의견 및 주장이며 한우자조금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

제 출 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귀중

이 보고서를 귀 회와 본 학교 간에 체결한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목적	3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 2장 축산분야 농가 유형 기준 설정 선행연구 조사	6
제 1절 국내 농가 유형 구분 방식 조사	6
제 2절 해외 농가 유형 구분 방식 조사	32
제 3장 한우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 검토	46
제 1절 통계 자료 검토	46
제 2절 한우 산업 관련 정책 검토	125
제 3절 한우 산업 관련 법률 검토	136
제 4장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지표 설정과 유형화	145
제 1절 한우 농가 유형 설정을 위한 지표 검토	145
제 2절 한우 농가 유형화	161
제 3절 한우 농가 유형 구분에 대한 제언	169
제 5장 요약 및 결론	175
참고문헌	181
<부록 1> 이력제 통계	182

표 목차

표 2-1. 토지경작규모와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영농계층 구분 비교	8
표 2-2.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구분 내용	15
표 2-3.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	21
표 2-4. 경영체DB 분석을 통한 농가 유형	22
표 2-5. 농가 유형의 분류	23
표 2-6. 입법목적에 따른 농업인 정의규정의 분류	24
표 2-7. 기존 농가유형 구분	26
표 2-8. 선행연구들의 한우 사육방식 구분	29
표 2-9. 전상근 외(2020) 사육방식 분류 결과	30
표 2-10. ESU 크기에 따른 계층 구분	33
표 2-11.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독일의 유형 분류	36
표 2-12. 독일과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37
표 2-13.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38
표 2-14.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41
표 2-15. 대만·우리나라·일본의 통계상 농가 정의	43
표 2-16. 농업발전조례상 농민 관련 정의	44
표 2-17. 농민, 농가, 전업농가, 주력농가의 정의	44
표 3-1.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77
표 3-2.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78
표 3-3. 전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82
표 3-4. 전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82
표 3-5. 1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83
표 3-6. 1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83
표 3-7. 2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84
표 3-8. 2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84
표 3-9. 전문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88
표 3-10. 전문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88

표 3-11. 일반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89
표 3-12. 일반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89
표 3-13. 부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0
표 3-14. 부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0
표 3-15. 자급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1
표 3-16. 자급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1
표 3-17. 경지면적(1.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5
표 3-18. 경지면적(1.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5
표 3-19. 경지면적(1.0~3.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6
표 3-20. 경지면적(1.0~3.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6
표 3-21. 경지면적(3.0~7.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7
표 3-22. 경지면적(3.0~7.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7
표 3-23. 경지면적(7.0ha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98
표 3-24. 경지면적(7.0ha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98
표 3-25. 경영주 연령(5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102
표 3-26. 경영주 연령(5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102
표 3-27. 경영주 연령(50~6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103
표 3-28. 경영주 연령(50~6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103
표 3-29. 경영주 연령(60~7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104
표 3-30. 경영주 연령(60~7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104
표 3-31. 경영주 연령(70세 이상)-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105
표 3-32. 경영주 연령(70세 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105
표 3-33. 법인특성별 법인수	106
표 3-34.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사육두수와 경지면적)-농어업법인조사(2001)	107
표 3-35.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사육두수와 경지면적)-농업법인조사(2020)	108
표 3-36.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농어업법인조사(2001)	109
표 3-37.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농업법인조사(2020)	109
표 3-38. 법인의 경지면적 소유 현황(평)-농어업법인조사(2001)	110
표 3-39. 법인의 경지면적 소유 현황(평)-농업법인조사(2020)	110

표 3-40. 사업유형별 법인수(2020)	111
표 3-41. 품목별(작물재배업) 법인수(2020)	112
표 3-42. 품목별(축산업) 법인수(2020)	112
표 3-43.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농어업법인조사(2001)	113
표 3-44.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농업법인조사(2020)	114
표 3-45.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농어업법인조사(2001)	114
표 3-46.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농업법인조사(2020)	115
표 3-47. 사육규모별 사육방식	117
표 3-48.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추계소득	118
표 3-49.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세분화), 추계소득	119
표 3-50. 사육규모별 농가 주수입원	120
표 3-51. 사육규모별 농가 부채규모	120
표 3-52.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7년)	121
표 3-53.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8년)	122
표 3-54.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9년)	122
표 3-55.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20년)	123
표 3-56.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21년)	123
표 3-57. 연도별 사육규모별 소득변화 추이	124
표 3-58. 농식품사업 안내서 분류 세부기준	126
표 3-59. 생산기반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128
표 3-60. 축산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130
표 3-61. 농생명산업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134
표 3-62.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135
표 4-1. 한우 산업 통계·정책·법률 비교 검토	146
표 4-2. 한우 사육 사육규모별 비중	148
표 4-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149
표 4-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149
표 4-5.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150
표 4-6.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	150

표 4-7. 한우 사육 사육규모별 비중	151
표 4-8. 축산업허가제 도입 과정에서의 전업규모 구분	153
표 4-9. 도시 가구 연간 소득(2021년 기준)	155
표 4-10. 한우 사육농가 추계소득(2021년 기준)	155
표 4-11. 개인 한우 사육 연령대별/사육규모별 비중	156
표 4-12. 개인 한우 사육 연령대별/사육규모별 비중	157
표 4-13. 한우 사육 방식별 비중	158
표 4-14.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추계소득	159
표 4-15. 지표 도출과 유형 구분	165
표 4-16. 한우 사육 100두 규모 세부 사육두수 내역	167
표 4-17. 한우 사육 100두 규모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노동 시간 추계	168
표 4-18. 농식품사업 안내서 분류 세부기준	169
표 4-19. 미래 한우 산업 정책분야와 대응방향	171
표 4-20.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매칭	174

부표 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 2014년)	182
부표 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 2014년)	183
부표 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 2021년)	184
부표 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 2021년)	185
부표 5.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농장수: 2014년)	186
부표 6.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사육두수: 2014년)	187
부표 7.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농장수: 2021년)	188
부표 8.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사육두수: 2021년)	189
부표 9.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14년)	190
부표 10.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50세~59세(2014년)	191
부표 1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60세~69세(2014년)	192
부표 1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14년)	193
부표 1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14년)	194
부표 1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50세~59세(2014년)	195

부표 15.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60세~69세(2014년) ····	196
부표 16.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14년) ····	197
부표 17.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21년) ·····	198
부표 18.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50세~59세(2021년) ·····	199
부표 19.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60세~69세(2021년) ·····	200
부표 20.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21년) ·····	201
부표 2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21년) ····	202
부표 2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50세~59세(2021년) ····	203
부표 2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60세~69세(2021년) ····	204
부표 2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21년) ····	205

그림 목차

그림 2-1.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유형 분류	10
그림 2-2. 농가유형 구분	11
그림 2-3. 농가유형구분(표준영농규모/연령)	14
그림 2-4. 고정자산에 따른 농가 유형화	16
그림 2-5. 가족농 유형 구분	19
그림 2-6. 인정농업자의 인정체계	42
그림 2-7. 대만의 농가 구조	45
그림 3-1. 7년간 한우 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55
그림 3-2.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57
그림 3-3. 7년간 한우 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59
그림 3-4.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61
그림 3-5. 지표에 따른 농가 분포 변화	63
그림 3-6. 법인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65
그림 3-7. 법인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69
그림 3-8. 개인 연령대별 사육규모별 농장수 변화	71
그림 3-9. 개인 연령대별 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73
그림 3-10.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77
그림 3-11. 대동물 사육 농가의 농가소득 소득원별 추이	79
그림 3-12. 전업/겸업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과 경상소득 추이	81
그림 3-13. 주/부업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과 경상소득 추이	87
그림 3-14. 경지면적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94
그림 3-15. 경영주 연령대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101
그림 3-16. 연도별 사육규모별 소득변화 추이	124

〈 요약 〉

□ 한우농가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

- 최근 한우 산업을 둘러싸고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한우 수요 감소 등 농가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이 연구는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 농가의 사육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음. 이를 기초로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먼저, 한우농가 사육 유형 구분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지표를 최종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농가 유형을 분류함.
 - － 유형 구분 지표: 법인 여부, 사육 규모, 경영주 연령, 사육 방식, 노동 의존 방식
- ① 법인 여부: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
- ② 사육 규모: ‘전업농’과 ‘비전업농’
- ③ 경영주 연령: ‘고령농’, ‘후계농’
- ④ 사육 방식: ‘번식농가’, ‘비육 농가’, ‘일관사육 농가’
- ⑤ 노동 의존 방식: ‘가족전업농’과 ‘일반농’

□ 맞춤형 정책 제언

- 법인 여부, 사육규모, 경영주 연령, 사육방식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처방하여 한우 산업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분야에 따라 농가 유형을 매칭하면;
 - 축산업 진입: 기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한우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매칭. ex) “축사은행 설립”을 통한 개인농 사육 활성화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소규모 비전업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융자 외에 보조 검토
 - 후계인력양성: 한우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 후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매칭
 - 경영안정: 한우 산업의 근간인 번식농가와 가족전업농에 대한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 개발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 개편
 - 규모화, 전업화 되는 한우 사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축인 ‘가족전업농’의 소득 수준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수급안정: 과거 한우 수급과동시 피해를 크게 본 소규모 번식농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대규모 법인 농장도 수급균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프로그램 강화.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의 필요성 :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
 - 향후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수급안정/가격안정”이라고 답한 농가가 55.0%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보장” 26.3%, “가축 개량” 9.0%, “생산비 절감” 8.0%로 조사됨. 최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우 사육농가들의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임.
 -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에 대한 불안심리는 농가 소득 변동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농가 소득은 한우 수급 변동성과 그에 따른 가격변동성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한우 사육두수의 변동은 한우사육 농가의 사육 유형별 비중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혹은 완만하게 변화할 수 있어 한우 사육 유형별 비중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
 - 암소 사육 농가가 송아지 생산을 늘리면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시차를 두고 공급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하락하며 농가 소득은 하락함. 다만, 사육 유형에 따라 시장 상황(현재의 사육두수 과다에 따른 미래의 가격 하락)에 반응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 최근, 소규모 번식농가 감소, 농가의 규모화 및 전업화, 일관사육농가의 증가추이 등, 사육두수의 변화 양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전상곤 외, 2020).

- 앞으로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 및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농가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사육두수, 산지가격, 농가 소득에 대한 자료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존 연구 결과의 문제점

- 과거 선행 연구들(GS&J 2017; 전상곤 외 2020)은 한우 사육방식(번식, 비육, 일관)에만 초점을 맞추어 농가를 구분하였음.
- 그러나, 단순 사육 방식만이 아니라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지표에 따라 설정할 수 있고, 그러한 유형 구분을 통해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확대된 한우 사육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단순 사육 방식만이 아니라, 사육규모, 소득 정도, 농가의 성격(농가, 법인), 연령, 자산/부채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유형 설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안 제시가 가능함.

□ 본 연구의 차별점

- 한우농가 사육방식에 구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모두 자의적 기준에 따라 한우 사육방식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하였음. 하지만,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에서는 한우농가 사육방식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한우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함.
- 사육방식 외 한우 사육 유형 구분 설정 지표 마련 및 유형화
 - 현재의 모든 한우산업 관련자료는 사육 규모를 근거로 발표되고 있고 일

부 사육방식에 대한 자료로 가공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농가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농가 소득 정도와 다양한 사육 유형간의 관계 설정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육방식(번식, 비육, 일관사육) 외에 다양한 지표(사육규모, 표준소득, 농가 연령, 농가 성격, 자산/부채규모 등)에 따라 한우 농가 사육 유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표 설정과 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함.

제 2절 연구목적

- 한우농가 사육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설정과 유형화
 - 사육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설정
 - ※ 가능 지표: 사육규모, 사육방식, 연령, 표준 소득 등
 - 지표 설정에 따른 한우 농가 유형화
- 한우농가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
 - 한우 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각 정책과 한우 농가 유형간의 관계 분석
 - 유형별 한우 농가 맞춤 정책 대안 제시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축산분야 농가 유형 기준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 한우농가 유형 구분 필요성 및 연구방법 제시
- 국내외 농가 유형 구분 방식 검토
 - － 국내 농가 유형 구분 방식 및 문제점
 - － 해외 농가 유형 구분 방식(EU, 미국, 일본 등)
- 한우농가 유형 구분 지표 설정 및 유형화
 - － 유형 구분의 목적: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농가 구분
 - － 유형 구분의 산출방법 및 지표 설정(사육규모, 사육방식, 연령, 표준 소득 등)
 - － 지표 설정에 따른 유형화(영세농, 소농, 중농, 대농 / 표준소득에 따른 유형구분)
- 한우농가 유형구분을 통한 정책 제언
 - － 맞춤형 정책 대안 정책 대안
 -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2) 연구방법

- 축산분야 농가 유형 기준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 문헌 조사
 - － 전문가 자문회의
- 국내외 농가 유형 구분 방식 검토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해외 자료: 필요시 원고 위탁
- 한우농가 유형 구분의 지표 설정과 유형화
 - 공공기관 자료 분석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제 자료(사육규모, 사육방식, 연령, 개인/법인, 자가/위탁 사육)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법인조사 등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 경영컨설팅 자료
 - 전문가 및 담당자 자문회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축산물생산비통계, 한우협회(한우정책연구소), 농협중앙회, KREI 축산관측팀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농가 유형별 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조사
- 한우농가 유형구분을 통한 정책 제언: 자문회의 개최

제 2장 축산분야 농가 유형 기준 설정 선행연구 조사

제 1절 국내 농가 유형 구분 방식 조사

1. 농업 분야

(1) 김수석(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우리나라에서 농가 유형은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림부에서 각각 다른 용어 및 기준으로 서로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 농가 유형 구분에 있어 유형 구분의 기준이나 유형의 수에 대해 농업 통계나 관계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김수석(2006)은 농가 유형에 대한 분류방법을 재검토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농가 유형 구분을 제시하고자 함.
- 농가 유형 구분은 크게 비교적 단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과 연령, 소득, 생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형별 특성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음.
- 김수석(2006)은 유형 구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표인 경우에 제시된 새로운 지표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음.

-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보다는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환산영농규모지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산출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함.
- 환산영농규모지표 : “환산영농규모(Transformed Size of Farming: TSF)”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 규모로 파악하는 것.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TSF = Lc + FA/Lp$

TSF: 환산영농규모

Lc: 경지면적

FA: 농업고정자산평가액(토지제외)

Lp: 농업용 전국 평균지가 (2004년 중급의 논과 밭의 평균지가인 평당 42,000을 기준)

- 도입의 필요성

- (가) 농업의 상업화, 다변화, 그리고 자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규모 파악과 그것에 대한 농가 간의 생산활동과 자원 이용 및 생산효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지경작규모를 보완하는 지표가 필요함.
- (나) 평가단위를 화폐로 설정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경영 규모의 과대평가, 지가의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화폐를 평가단위로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다) 토지면적 평가단위는 경작규모의 사실적 평가만 가능하며, 토지를 제외한 축산, 과수 또는 대농기구를 토지면적으로 환산시켜 경작면적과 합쳤을 때, 경지면적으로 표현된 종합적인 농업경영규모의 파악이 가능함.

－ 적용결과

- 토지경작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비하여 분석 대상 3,056호 농가의 계층이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되었으며, 이는 영농규모에 작용하는 경지의 외적 요인이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 토지경작규모와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영농계층 구분 비교
단위 : 호, %

농업경영계층	토지경작규모 적용시 농가호수	환산영농규모 적용시 농가호수
0.5ha 미만	804 (26.3)	321 (10.5)
0.5~1ha	768 (25.1)	606 (19.9)
1~2ha	894 (29.3)	1,112 (36.4)
2~3ha	318 (10.4)	490 (16.0)
3~5ha	171 (5.6)	349 (11.4)
5ha 이상	101 (3.3)	178 (5.8)
계	3,056 (100.0)	3,056 (100.0)

자료: 2004년 농가경제조사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임. 농가들의 실제 농업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함.
- 현행 농산물소득조사방식은 소득자료를 산출하는 기관마다 표본선정기준이 다르고, 통일된 기준하에 경영비 및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만한 표본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품목별 표준소득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소득조사 방식을 개량하고 종합화함으로써 품목별 지표를 산출함.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가들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일정크기의 표준소득을 영농규모단위(Farm Size Unit, FSU)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영농규모단위(FSU)는 기준 연도의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일정크기로 정할 수 있음. (예, 1 FSU = 표준소득 100만원)
 - 영농규모 단위의 실제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등식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음.
 - 영농규모 단위가 정해지면 농가에 대한 유형 구분은 FSU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 영세농 (10 FSU 미만), 중소농(10~30 FSU), 전업농(30 FSU 이상) 등
- 유형별 종합적 특성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는 농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연령, 영농 형태가 농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음.
 - ① 제1유형 : 쌀전업농
 - ② 제2유형 : 원예중소농
 - ③ 제3유형 : 축산전업농
 - ④ 제4유형 : 고령복합농
 - ⑤ 제5유형 : 고령영세농
 - ⑥ 제6유형 : 부업농
 - 위의 6가지 유형을 농업소득, 연령, 품목의 3가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도식화 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유형 분류



-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산전업농, 쌀전업농, 고령복합농, 원예중소농, 고령영세농, 부업농 순으로 평균값이 커지지만 중소농과 고령복합농의 수준이 비슷하다 할 수 있음.
-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세가 고령농을 구분하는 경계치에 해당함.

(2) 오내원(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 분석)

- 오내원(2013)은 농가소득의 전반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층별·지역별 농가소득의 차별화 현상을 분석함.
- 농가소득의 문제는 농가의 다양한 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형별로 농가의 소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농가의 소득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농가 유형 구분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표는 영농규모, 경영주의 연령과 영농후계자 유무, 농외활동의 정도에 따른 분류임.
- 오내원(2013)은 사후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농외활동의 정도를 제외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유형을 구분하였음.
 - 영농규모
- 농업조수입이나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심한 사후 결과치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전적 지표로서 표준영농규모를 채택하였음.

- 표준영농규모는 각 농가의 대동식물, 대농기구, 시설 등 농업용 고정자산의 평가금액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지면적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농지와 기타 고정자산의 환산 기준은 당년도 전국 농업 진흥지역 농지의 평균가격으로 함.
- 경영주의 연령 및 영농후계자 유무
-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가와 70세 이상인 경우 후계자 유무에 따라 구분함.
- 고용통계 등에서 노동력으로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농업의 경우 70세까지 노동능력의 큰 저하가 없다고 판단함.
- 표준영농규모를 1ha 미만, 1~3ha, 3ha 이상으로 나누고 이를 경영주 조건과 결합하여 총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함.

그림 2-2. 농가유형 구분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후계자 없음	70세 이상, 후계자 없음	
	[유형1] 고령영세농	[유형2] 고령중대농	
70세	70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70세 미만	70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70세 미만	70세 이상, 후계자 있음 또는 70세 미만
	[유형3] 일반영세농	[유형3] 일반 중농	[유형5] 일반 대농
	1ha 미만	1~3ha	3ha 이상
표준영농규모			

- [유형 1]은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후계자가 없으며 표준영농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로 ‘고령 영세농’으로 부를 수 있음.
- [유형 2]는 경영주의 연령과 후계자의 유무가 [유형 1]과 동일하나 표준영농규모가 1ha 이상인 농가로 ‘고령 중대농’으로 부를 수 있음.
- [유형 3]은 경영주가 70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는 농가이며 표준영농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로 ‘일반(비고령) 영세농’으로 부를 수 있음.
- [유형 4]와 [유형 5] 역시 경영주가 70세 미만이거나 후계자가 있는 농가이며 표준영농규모가 1ha 이상인 농가들로서 ‘일반 중농’, ‘일반 대농’임.

(3) 김미복(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김미복(2016)은 농가성격에 따라 소득의 변화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 분석을 하고자 함. 통계청(2015) 등 기존의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찾기 위해 새로운 농가유형 구분과 소득 분석을 시도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농가유형을 구분하였음.
 - 다수의 전업농이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 기계화로 인해 65세까지는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65세를 기준으로 함.
 - 표준영농규모는 농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라 유형자산을 영농 규모에 반영하도록 경지로 환산한 ‘규모’개념임.
 - 축산, 시설농가는 경지규모가 작더라도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농가의 영농규모는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 Size of Farming:SSF) 개념을 적용하여 재정의할 수 있음(최양부 외 1983).
 - 농업용 고정자산과 경지면적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SSF = L_C + \frac{FA}{L_P}$$

L_C : 경지면적, FA : 농업용 고정자산, L_P : 당년평균농지가

- 위의 기준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은 다음 그림과 같음.
 - 그룹1(L/Y) 청장년 중대농 :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를 차지함. 농업성장과 연계성이 높으며 전문농가로 발전시켜야 할 그룹임.
 - 그룹2(S/Y) 청장년 소농 : 겸업형태가 농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귀농 등 신규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농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활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S/O) 고령 소농 : 우리나라 농업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이며 평균 연령이 74세로 50%는 75세 이상 초고령농가이고, 은퇴 직전의 계층임.
 - 그룹4(L/O) 고령 중대농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원 측면에서 비중이 높은 농가이며 주로 단작인 논벼농가가 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연령은 71세인 은퇴를 앞둔 농가로 영농후계가 가능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가 포함됨.

그림 2-3. 농가유형구분(표준영농규모/연령)



(4) 우병준(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 농가 유형이 다양해지고 영농 활동이 다각화되면서 기존에 주된 분석 단위인 농지면적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농가를 산정하여 분석하기엔 한계가 존재하므로 농가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표준영농규모라는 개념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우병준(2017)은 표준영농규모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고정자산의 경우 농가의 고정자산별 소유구분에 따라 임대를 제외한 소유, 임차 규모의 합계를 활용하였음. 이러한 방식은 농가 유형을 구분하면서 농가의 자산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실제 경영규모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함임.
- 우병준(2017)은 산출된 농가의 표준영농규모와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총 144개 구간으로 세분화 한 후, 최종적으로 총 9개의 그룹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음.

-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를 다음 표와 같이 3단계씩으로 구분함.

표 2-2.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구분 내용

연령	표준영농규모
40세 이하	0.5ha 미만
41세 이상 ~ 64세 이하	0.5ha 이상 ~ 2.0ha 미만
65세 이상	2.0ha 이상

자료: 우병준·임소영·이두영·이형용·한보현(2017).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5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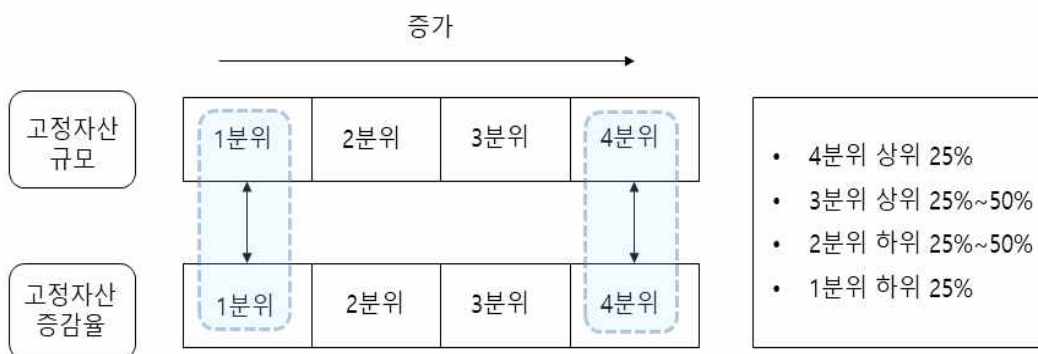
- 농가 유형에 따른 농가 수 및 비중을 확인한 결과, 40세 이하의 농가가 다른 유형의 농가에 비해 비중이 현저히 낮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65세 이상의 농가 유형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표준영농규모가 0.5ha 이상 ~ 2.0ha 미만이 약 38.7%로 가장 비중이 높았음.
- 영농형태에 따른 농가 비중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40세 이하 농가유형에서는 겸업농가가 유일하며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경종농가의 경우 65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겸업농가는 41세 이상 ~ 65세 미만 그룹과 65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5) 국승용(2017, 농업경영체 현황 및 농업투자 실태)

- 국승용(2017)은 연령 및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연도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형별 농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총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① 고령 소농
 - ② 고령 중대농
 - ③ 청장년 소농
 - ④ 청장년 중대농

- 2014년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경영 상태를 흑자와 적자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 경영 상태별 유형에 따른 농가 분석을 실시함.
 - 2015년도 기준 흑자 그룹
 - 흑자 전환 (2014년도 적자 → 2015년도 흑자)
 - 흑자 전환 (2014년도 적자 → 2015년도 흑자)
-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고정자산 증가율 분위와 고정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농가 그룹을 유형화하였음.
 - 고정자산 규모 및 증감률을 4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 중 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낮은 1분위 그룹과 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4분위 그룹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2-4. 고정자산에 따른 농가 유형화



자료 : 국승용(2017, 농업경영체 현황 및 농업투자 실태)

- 국승용(2017)은 농업투자 실태 조사를 위하여 2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부문에 투자했다고 응답한 167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형태별 영농규모와 연령별로 분석하였음.
 - 영농형태의 경우 벼농사, 과수, 노지 채소, 시설 채소, 화훼·특작, 축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영농규모의 경우 1ha 미만, 1~2.9ha, 3~4.9ha, 5~6.9ha, 7ha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경영주 연령의 경우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6) 황의식(2008,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 농가 경영규모별 소득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규모를 산출하는데 있어 시설투자농가는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농업고정투자를 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만을 고려하지 않음.
- 표준경영규모 산정을 위해 3.3m² 당 평균 농지가격 3만원을 농업용 자본투자 규모에 적용한 후, 농지규모와 합산함.
- 시설농업에 대해서도 규모화의 정도를 반영한 것이므로 경지면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L^s = A + \frac{FA}{3\text{만원}}$$

L^s : 표준 경영규모 A : 농지 경작면적 FA : 토지자산을 제외한 농업용 고정자산

- 경영규모는 1ha 미만, 1~2ha, 2~3ha, 3~5ha, 5~7ha, 7ha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농업소득변동률은 40%를 기준으로 구분함.
- 소득변동 분석을 전업농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패널자료에서 표준화된 경영규모가 2ha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가만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음. 이때, 전업농가를 경영주 연령별, 품목별 소득변동 수준별로 분석함.
- 연령은 40세 미만, 40~50세, 50~60세, 60~70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함.
- 농업소득 변동률은 0~10%, 10~30%, 30~50%, 50~70%, 70% 이상으로 구분함.
- 품목은 논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전작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기타농가로 구분함.

-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에 대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는 소득변동 크기에 따라 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독립변수로는 학력,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소득비율(농업소득/농가소득), 자산규모, 부채비율, 영농규모, 나이 등으로 구성함.
- 학력은 경영주의 해당 학력에 해당하는 교육연수로 구성함.
- 영농규모는 과수, 축산농가 등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대상 농가의 전체 영농규모를 합산하여 농지 평당 평균 가격(30,000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음.

(7) 정훈희(2016, 가족농 유형별 경영전략 차이 분석)

- 가족농이라는 용어는 농민단체나 학자들이 농정방향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 가족농의 존재형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경영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영학에서 가족기업과 가족농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정훈희(2016)은 가족농을 가족기업의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가족농과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논문을 비교, 검토하여 이들이 경영전략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자 함.
-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족농이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농가들의 특성인지, 일부 농가들의 특성인지를 밝히고 이들의 차별적인 특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가족농의 경영전략적인 면에서의 특성을 밝히고자 함.
- 정훈희(2016)은 우리나라 가족농의 존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가족농이라는 전제하에서 우수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기업이 이윤확대 보다 사업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족농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경영소득 수준과 경영규모 확대 의도의 두 가지를 기본 조건으로 적용하여 농가를 구분함.

그림 2-5. 가족농 유형 구분



자료: 정훈희(2016, 가족농 유형별 경영전략 차이 분석)

- 고소득 경영확대(HE) 유형의 경우 대부분이 영농경력 20~30년인 40대와 50대의 젊은 경영주이며, 대규모 축산, 과수 농가라고 할 수 있음. 소유지는 2ha 이상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임차지가 있는 농가는 5ha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경영확대(LE) 유형 역시 연령이 40대와 50대의 젊은 경영주가 대부분이며, 영농경력 10~20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이 유형의 농가

는 중규모 과수농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소유지와 임차지 모두 2ha 미만을 보유하는 농가가 대부분임.

- 고소득 경영유지(HM) 농가는 대부분이 50대 경영주이며 60대의 고령농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30년의 영농경력을 갖고 있으며, 대규모이고 과수농가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가족노동력은 대부분 2명으로 '부부 혹은 혼자' 농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경영유지(LM) 농가의 경우 고소득 경영유지(HM) 농가와 유사하게 경영주의 연령이 50대와 60대의 고령농이고 영농경력은 20~30년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있음. 중·소규모 과수, 채소농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유지는 1~2ha 미만 구간에 높은 비율로 나타남.

(8) 김은순(2003, 농가유형별 생산기술효율 및 환경성과 비교분석)

- 생산기술효율 측면에서 근래 농가의 계층 간 격차 확대 또는 농가소득 정책의 원인을 농가 유형별로 진단·분석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농가 유형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선 농가 유형별 또는 계층별로 생산기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변화하고 있는지, 생산기술의 효율성은 농가 유형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등에 개별 농민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농가 유형을 소득계층별, 경지규모별, 경영 형태별로 구분하였음.
 - 소득계층별로는 매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5분 위계층으로 구분하였음.
 - 경지규모별 계층구분은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경영 형태별 농가구분은 미작농, 채소농, 과수농, 화훼농, 축산농, 기타농으로 구분하였음.

- 경영형태구분의 지표로는 해당되는 품목의 조수입이 농가조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중에 의하여 구분하였음.

(9) 임청룡(2018, 농가유형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효과 분석)

- 임청룡(2018)은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2016년 3월 발표된 경영체 유형 구분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효과를 분석함.
- 농가경제조사와 농업경영체 DB 자료를 기초로 하여 농가유형을 구분함.
 -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는 영농경력에 대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영농경력이 5년 미만인 해당되는 ‘창업농’과 ‘취미농’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전업과 겸업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적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농으로 통합함.

표 2-3. 농가경제조사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

연령	경영지표	농가유형
65세 미만	상위 30% +조수입 5천만 원	전문농
	+조수입 3천만 원	예비전문농
	기타	일반농
65세 ~ 75세 사이	-	고령농
75세 이상	-	은퇴농

-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한 농가유형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158만 개인 농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구조(Decision Tree)를 통해 분류함.
 - DB에 포함된 농가특성(연령, 품목(군), 영농경력) 및 경영특성(전겸업, 신고조수입, 판매액, 추정농업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음.
 - 전문농, 일반농(예비전문농, 6차농, 일반농), 고령농(고령농, 은퇴농), 창업농, 취미농으로 분류하였음.

표 2-4. 경영체DB 분석을 통한 농가 유형

영농경력	연령		경영지표(조합)		농가유형	
5년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후계농)		상위30% +조수입 5천만 원	→	전문농	
			+조수입 3천만 원	→	일반농	예비전문농
			기타	→		6차농
					→	
	65세 이상		—	→	고령농	
		75세 이상	—	→	은퇴농	
5년 미만	65세 미만		—	→	창업농	
5년 미만	65세 이상		—	→	취미농	

자료: 경영체DB 분석에 기초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기본구상(안), 경영체유형화특별추진단, 2016년 3월.

(10) 권오상(2018, 농업부문 연구개발투자가 농가유형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 권오상(2018)은 지난 9년간 이루어진 농업 R&D 투자가 농업생산자의 소득에 기여한 바를 요인별, 농가유형별로 분리하여 계량분석 하였음.
- 농가 유형별로 수익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농가 유형별로도 투입·산출자료를 모두 구축함.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입과 산출의 수량지수를 먼저 구축하고 가격지수를 구하게 되면 모든 농가 유형들이 서로 다른 가격에 직면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오상(2018)은 가격지수를 먼저 구축하고, 각 농가유형별 암묵적 수량지수를 도출하는 역순을 취함.
- 농가 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농가경제조사에서 분류하는 농가 유형을 따랐으며 다음 표와 같음.

표 2-5. 농가 유형의 분류

	1 전·겸업별	2 주·부업별	3 영농형태	4 경지규모	5 경영주연령	6 가구원	7 지역
1	전업	전문	논벼	0.5ha 미만	39세 이하	2명	경기도
2	1종겸업	일반	과수	0.5ha-1.0ha	40-49세	3명	강원도
3	2종겸업	부업	채소	1.0ha-1.5ha	50-59세	4명	충청북도
4		자급	특용작물	1.5ha-2.0ha	60-69세	5명	충청남도
5			화훼	2.0ha-3.0ha	70세 이상	6명 이상	전라북도
6			진작	3.0ha-5.0ha			전라남도
7			축산	5.0ha-7.0ha			경상북도
8			기타	7.0ha-10ha			경상남도
9				10.0ha 이상			제주도

- 위의 표와 같이 분류된 농가유형(43개)과 전체 표본을 대표하는 대표농가에 대해서 농가경제조사의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농가소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농업 KIAM자료(권오상 외 2015)의 방법을 따라 산출물 가액자료, 투입물 가액자료를 구축함.
 - 산출물 가액자료의 경우 이용 가능한 국가통계가격지수와 분류를 맞추었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 실질금액으로 환산함.
- 가격지수는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와 농가판매가격지수를 이용함.

(11) 김현희(2016, ‘농업인’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 김현희(2016)은 ‘농업인’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 다르게 정의된 이유와 그 문제점, 산만한 정의규정을 일정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농업인’ 정의규정을 유형화 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검토와 해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입법 방식에 따라
 - ② 입법 내용에 따라

③ 용어의 의미에 따라

- 입법 방식에 따른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기술적 분류로서,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은 다양한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위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경우

②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련된 경우

③ 농업인의 조직에 관련된 경우

- 입법목적의 분류에 따라 농업인 정의규정도 크게 「농업식품기본법」 류의 농업인, 「농지법」 류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법」 류의 농업인으로 구별할 수 있음.

표 2-6. 입법목적에 따른 농업인 정의규정의 분류

법명	입법목적	정의규정
농업식품기본법	농업, 농촌 및 식품의 산업 정책 방향	제3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제2조(정의)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인 협동조직의 촉진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 관련 법령에서 ‘농업인’은 국가정책의 상대방이 되거나 법령의 수범자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법률 용어로 채택하는 경우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 혼동이 없도록 명확해야 함.

(12) 하지희(2018, 농업회계 재무지표를 활용한 벼 재배농가 유형구분)

- 김현희(2018)은 농업부문과 제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재무지표 중 농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재무지표를 선정하고, 산출된 재무지표를 기초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였음.
- 재무지표간의 상호독립성을 확보하고 변수를 축소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산출된 요인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음.
- 총 8종류, 53개의 진단지표 중에서 농업부문에 활용이 가능한 유동성, 지급능력, 수익성, 효율성, 성장성으로 구분하여 재무지표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재무지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 요인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벼의 수익성, 자산과 자본의 수익성 및 성장률, 유동성 및 지급능력임.
- 3개 요인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제 1유형 : 경영주 연령이 가장 높은 고령농 집단으로 규모가 작고 겸업 및 부업 농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성과가 좋지 않음.
 - 제 2유형 : 연령이 가장 낮고,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대농집단이며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우수한 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제 3유형 : 임차비율이 가장 높고 겸업률도 높음. 임차자산은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대비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 4유형 : 도시근교 농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산이 매우 크게 나타남. 벼에 대한 수익성은 좋지만 자산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수익성이 낮게 나타남.
- 하지희(2018)은 각 유형에 속한 농가들에 대해서 해당 유형 내에서 경영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동일한 작목과 동질의 경영구조에 기초한 경영 비교와 진단이 이루어질 때 실행 가능한 컨설팅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함.

(13) 강혜정(2006,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 강혜정(2006)은 2004년 농가경제 원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전체 농가를 유형화하고 농가특성변수가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의 농가 유형화에 대한 검증과 새로운 농가 유형화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농가 유형 구분은 유형구분의 기준이나 유형의 수에 대해 농업 통계나 관계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표 2-7. 기존 농가유형 구분

관련 통계 및 법	농가유형 구분
농업총조사	• 전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조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 겸업농가: 농업수입이 농업 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 농업 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농업기본 통계조사	•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 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주업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 일반농가: 주업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 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농업·농촌 기본법	•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

- 농가특성변수로는 총 21개로 경영규모지표, 경영성과지표, 경영능력지표, 영농형태지표, 농가경제실태까지 총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눔.
 - 경영규모지표 : 경지면적, 농업자본, 농업노동시간
 - 경영성과지표 :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

산성

- 경영능력지표 : 연령, 학력
- 영농형태지표 : 쌀수입 비중, 채소수입 비중, 과수수입 비중, 축산수입 비중
- 농가경제실태 : 가족구성원수, 임차농지 비율, 농외소득, 가계비, 부채비율
- 강혜정(2006)은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경지면적, 농업수입, 임금소득, 경영주 연령 및 교육수준, 영농형태(쌀 수입 비중)은 주요 지표로, 나머지 변수들은 보조지표로 활용할 때 현실에서 적용이 용이한 농가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고 봄.
- 군집분석 결과, 총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제 1유형 : 젊은 경영주이며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이 높고 쌀 수입이 농업 총수입에서 비중이 70% 이상인 쌀 전업농의 특징을 가짐.
 - 제 2유형 : 채소수입 비중이 57%로 원예 전업농의 특징을 가짐.
 - 제 3유형 : 평균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축산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축산 전업농의 특징을 나타냄.
 - 제 4유형 : 경영주의 연령이 높고 복합 영농형태를 나타내는 고령 복합경영농의 특징을 가짐.
 - 제 5유형 : 경영주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은 가장 낮으며 쌀 수입 비중은 76%인 영세고령농의 특징을 나타냄.
 - 제 6유형 : 평균 경작 면적, 농업노동시간,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은 유형들 중 가장 낮으나 농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이 가장 높아 부업농의 특징을 나타냄.
- 위의 농가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결과, 총 6개의 유형으로 군집화되었음.

2. 축산 분야

□ 과거 선행 연구들(GS&J 2017; 전상곤 외 2020)

- 한우 사육방식에 따라 농가 구분
 - 한우 사육은 사육방식에 따라 보면, 번식과 비육, 그리고 둘 다 모두 겸하는 일관사육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과거에는 일본과 같이 소규모 대다수의 번식 농가와 일부 비육 농가로 분류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번식과 비육을 겸하는 일관 사육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의 사육방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음.
-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한우 사육농가들의 사육방식(비육, 번식, 일관사육)에 따라 분류한 바가 있음.

(1) GS&J(시선집중 GS&J 231호, 한우 일관사육구조의 진실, 2017)

- 한우 사육방식 분류 기준
 - 번식농가: 1세이상 한우 중 암소비중이 90% 이상
 - 비육농가: 1세이상 한우 중 수소비중이 90% 이상
 - 일관사육농가: 1세이상 한우 중 암소비중이 40~80%
- 주요 연구 내용
 - 지난 10여년 사이에 일관사육경영구조의 농가수가 증가함. 이유는 번식농의 소득감소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수소비육도 시작함.
 - 일관사육 농가가 번식농가에 비해 암소개량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 비육능력도 비육전문 농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 일관사육농가는 상대적으로 형질이 낮은 송아지를 판매할 가능성이 커 비육전문 농가도 송아지 자체생산에 대한 유인이 커져 일관사육화가 앞

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농가들의 의향조사에서도 일관전환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일관화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여건을 개선하여 번식과 비육전문농가(과거처럼 이원화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이 가능할 것임.

(2) 전상곤 외(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 2020)

○ 한우 사육방식 관련 선행연구 정리

- 농협과 한우자조금을 통한 농가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60% 내외의 농가가 일관사육으로 생각하고 있음(하지만, 이에 대한 분류 기준이 무엇 인지는 모호함).
-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볼 때, 농가 사육 전체두수 중 암소 비중이 90% 이상이면 번식, 10% 미만이면 비육, 10%~90% 사이면 일관사육으로 추계하는 방식이 농가의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한우 사육방식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2-8. 선행연구들의 한우 사육방식 구분

		번식	비육	일관사육	DIV ²⁾
농가 직접 설문 조사	농협(2018년, 856농가)	33.9%	5.9%	54.7%	—
	한우자조금 (2018년 8월, 355농가)	22.7%	8.0%	69.3%	—
이력제 자료 이용 구분 ¹⁾	전체두수 이용	35.1%	5.7%	59.2%	—
	6개월령 이상 이용	59.0%	5.7%	35.1%	0.2%
	1세 이상 이용	67.0%	5.4%	26.1%	1.5%

주: 1. 2018년 6월 1일 기준 통계청의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보유 두수 중 암소 비중이 90% 이상이면 번식, 10% 미만이면 비육, 10%~90% 사이면 일관사육으로 추계하였음.

2. DIV는 해당 사육두수 범위에 잡히지 않아 누락된 농가 비율임.

○ 이 연구에서 한우 사육방식 분류기준

- “분류기준”: $\frac{\text{번식우 두수}}{\text{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 암소)}}$
- 번식우 기준 : 15개월령 이상 한우 암소(가임암소) - 27개월 이상 암소 중 분만내역이 없는 암소 - 40개월령 이상 한우 경산우 중 최근 2년간 송아지 출생이 없는 암소
- 한우 사육방식에 대한 정의
 - 비육농장: 위의 “분류기준”이 0% 이거나, 수소만 있는 농장
 - 번식농장: 분류기준이 100%인 농장에서 15개월령 수소가 1마리라도 있는 농장을 뺀 나머지 농장
 - 일관사육농장: 전체 농장 - 비육농장 - 번식농장 (기준을 폭넓게 선택함)
- 분류기준에 따른 한우 사육방식 분류 결과
 - 농장수를 기준으로 보면(2020년 기준), 번식농장이 49.7%, 일관사육농장이 41.1%, 비육농장이 9.3% 순으로 나타남.
 -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보면(2020년 기준), 일관사육농장이 68.2%, 번식농장이 22.4%, 비육농장이 9.4% 순으로 나타남.

표 2-9. 전상곤 외(2020) 사육방식 분류 결과

단위: %

<농장수 기준 사육방식별 비중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육농장	10.8	10.9	10.4	9.8	9.9	9.7	9.3
번식농장	49.7	47.8	49.7	50.3	50.4	49.3	49.7
일관사육농장	39.5	41.3	39.8	39.9	39.8	41.0	41.1
<전체 사육두수 기준 사육방식별 비중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육농장	8.5	8.6	8.7	8.9	9.3	9.2	9.4
번식농장	20.1	18.7	20.3	20.7	21.9	21.6	22.4
일관사육농장	71.4	72.7	71.0	70.4	68.9	69.3	68.2

주: 각 년도 3월 기준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제 통계자료

- 전상곤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관계자와 협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필요가 있음.

제 2절 해외 농가 유형 구분 방식 조사

1. EU

(1) 김수석(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 두 가지 유형 구분은 모두 경영체의 표준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음.
- EU에서 농업 경영체 유형 구분 시스템의 목적은 유럽연합 내에서 구분 기준에 상응하는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들 간 및 회원국들 간의 경영체들을 상호 비교하여 공동농업정책(CAP) 수립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음.
-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 크기로 정해지고, 유형화를 위해서 일정 크기의 표준총수입을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로 나타내고 있음.
- ESU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음.

표 2-10. ESU 크기에 따른 계층 구분

계층	ESU 크기
I	2 ESU 미만
II	2~4 ESU 미만
III	4~6 ESU 미만
IV	6~8 ESU 미만
V	8~12 ESU 미만
VI	12~16 ESU 미만
VII	16~40 ESU 미만
VIII	40~100 ESU 미만
IX	100~250 ESU 미만
X	250 ESU 이상

자료: EU 집행위원회결정 85/377/EEC, 부속서 III

- 그러나 EU 농정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적으로 주업농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규모에 의한 계층화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타낼 수 있음.

① 16~40 ESU 미만

② 40~100 ESU 미만

③ 100~250 ESU 미만

④ 250 ESU 이상

○ 품목별 전문성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① 일반적 유형, ② 주된 유형, ③ 세부유형, ④ 세부유형의 상세화로 단계적으로 분화됨.

○ 일반적 유형은 해당 품목류의 표준수입 2/3 이상을 기준으로 ① 경종농업, ② 원예농업, ③ 과수농업, ④ 초지축산, ⑤ 사육축산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복합경영체로 분류됨.

○ 농업경영체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유형분류는 대분류(일반적 유형)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농 5개, 복합농 3개로 나타난다.

① 경종농업경영체

② 원예농업경영체

③ 과수농업경영체

- ④ 초지축산(소, 말, 양)경영체
- ⑤ 사육축산(돼지, 닭, 기타 가금)경영체
- ⑥ 복합농업경영체
- ⑦ 복합축산경영체
- ⑧ 복합농축경영체

(2)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EU는 농장구조조사와 농산물 생산방식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에 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양적 최소규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농장구조조사와 농산물 생산방식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2조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 또는 경영체(holding)는 단일한 경영을 갖추고 열거된 농업활동을 유럽연합의 경제적 영역 내에서 행하는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개별 단위를 의미함.

농장구조조사와 농산물 생산방식에 대한 조사에 관한 규정

3조 조사대상

1. 이 규정에서 정한 조사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 (a) 농업을 위해서 이용되는 농지가 1ha 이상인 농업경영체
 - (b) 농업을 위해서 이용되는 농지가 1ha 미만인 농업경영체는 경영체가 매출의 특정한 비율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 단위가 특정한 물리적 최소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그러나 1ha를 넘는 최소수준을 사용하는 회원국들은 이 최소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공유지(common land)를 제외한 사용된 농지의 2%이하에 기여하고 또한 총 농업가축단위(farm livestock unit)의 2% 이하에 기여하는 최소규모의 농업경영체들만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 FAO에 따르면, 가족농은 농장 정규노동력의 50% 또는 그 이상이 가족 구

성원인 농장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노동력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농가와 50% 혹은 그 이상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농가로 세분류 됨.

- 직접지불제는 EU 공동농업정책(CAP)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EU 규칙 (EU) 1307/2013, (EU) 2017/2393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규칙에서 주목할 점은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장구조조사와 달리 지불 대상이 농업경영체가 아닌 농업인이므로 농업인 (farmer)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임.

EU 규칙 1307/2013 4조 1항 (a)

농업인이란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TFEU) 349조 및 355조와 연계하여 유럽연합조약(TEU) 52조가 정한 영토 범위 안에 그 경영체(holding)가 위치해 있으며 농업 활동을 행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집단이며 이때 국가 수준의 법률이 그러한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부여한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

2. 독일

(1) 김수석(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독일에서의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은 기본적으로 EU의 유형 구분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EU의 유형 구분 시스템은 2003년부터 독일에 적용되었음. 즉 2003년 이전에 독일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EU 방식이지만, 부분적으로 독일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의 크기에 의한 유형화와 표준수입의 내부구성에 의한 유형화가 EU의 방식을 따른 것이지만, 지표 설정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짐.
-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것에 따른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합쳐서 1개의 유형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2-11.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독일의 유형 분류

농업경영체의 유형	경영체의 (법적) 형태
개인경영체	농가
인적회사	민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인경영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록조합

- 독일에서는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 구분을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구분으로 유형화 하고 있으며, ESU의 크기에 의해 주업농과 그 밖의 유형 경영체를 구분하고, 다시 주업농 내에서 ESU의 크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함.
- 독일에서 주업농은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회사 중에서 유럽규모단위(ESU)가 16 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단위(AWU, annual work unit)가 1 AWU 이상인 경영체가 해당됨.
 - $1 \text{ AWU} = 1 \text{ 단위노동력} * 8 \text{ 시간} * 225 \text{ 일} = 1,800 \text{ 시간}$. 65세를 초과하면 단위노동력 0.5
- 독일과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음.

표 2-12. 독일과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구분	이전의 독일	현재의 독일	EU
표준수입/ 지역구분	시·군 차원 (약 430개)	EU와 동일	광역지역 차원 (38개)
표준수입/ 업데이트	매년	매년	2년마다
영농규모/ 단위지표	표준경영체소득(STBE)	EU와 동일	유럽규모단위(ESU) 1ESU=1,200€
영농규모/ 주업농	경영주 노동시간 $\geq$ 50% 농외소득 $<$ 50%	표준총수입 $\geq$ 16ESU 노동시간 $\geq$ 1AWU	표준총수입 $\geq$ 16ESU
전문화/ 유형	농업과 원예 구분 농업5개 유형 원예3개 유형	EU와 동일	원예를 농업에 포함 5개의 전문농 3개의 복합농
전문화/ 기준	품목군의 표준수입 비중 $\geq$ 75%	EU와 동일	품목군의 표준수입 비중 $\geq$ 2/3
법적 형태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같은 유형으로 통합	구분 없음

(2)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의 농업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전업농 및 겸업농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업농(Haupterwerb)과 부업농(Nebenerwerb)가 있음.
 - － 주업농(Haupterwerb)은 농업경영으로부터의 소득이 경영 이외로부터의 소득에 비해서 많은 경영체이고 부업농(Nebenerwerb)은 그 외의 경영체.
- 독일에서의 농업경영체는 타 산업 경영체와 세제 집행상 구분하기 위한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와 농업정책 대상인 지원법상 농업경영체로 구분함.
 - －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독일에서도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 유류세 면제 또는 감면, 주업농의 경우 개발억제영역에 농업용 건축물의 건설 가능 등 농업 활동과 관련한 조세에서 다른 경제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의 여러 소득세법 중 농림업소득이란 농업, 임업, 포도재배, 원예 그리고 자연력의 도움을 받아서 식물과 식물 부분을 재배하는 경영체로부터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소득의 경우 농림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축 두수 상한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가축사육두수가 면적당 일정규모 이상으로 영위될 경우 축산소득을 농업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 상공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상 농업소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음.

표 2-13.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면적당 최대 가축두수

농지	가축단위(VE)/ha
최초 20ha	10
다음 10ha	7
다음 20ha	6
다음 50ha	3
그 이상	1.5

주: 평가법이 정하고 있는 사료필요에 따른 동물환산 단위. 성우(成牛) 1마리를 1.0으로 하여 축종별로 수치가 정해져 있음. 예컨대 성돈(成豚)은 0.33, 육계(肉鷄) 0.0017등임.

자료: 독일 소득세법 13조(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13.html 2020.7.28.).

3. 프랑스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프랑스는 농촌 및 해양어업법전에서 농업·농촌과 해양어업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농업활동에서 농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농업법전 L311-1조

식물이나 동물적 성격의 생물학적 주기에 대한 통제 및 이용에 해당하고 이 주기들이 전개되는데 필요한 하나 또는 다수의 단계로 구성되는 활동, 그리고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un exploitant agricole)이 행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연장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전에서 농업인이라는 단어를 빈번히 사용은 하고 있지만 명시적,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진 않음.

- 프랑스에서 농업통계 의미상 농업경영체는 농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영이 독립적이면서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거나 그 규모를 넘어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제적 그리고 생산상의 단위로 정의됨.
- 그 규모에 대해서는 2016년 행해진 EU 농업구조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됨.
- 프랑스에서 소득세법상 농업소득은 농업산출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농장, 소작인, 농장 지주가 농업용 자산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며, 농산물을 구입하였다가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재판매하여 발생한 소득, 농지관광산업 등을 통한 소득은 일반 상업 및 산업소득으로 취급됨.
- 농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① 상업 및 비상업 활동이 농업소득과 비교했을 때 부수적이어야 함.
 - ② 농업소득이 정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 ③ 과세연도 시작일 이전 3년 동안 연간 상업 및 비상업 부수입 소득이 평균적으로 농업활동 수입의 50%를 넘지 않거나 1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스위스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스위스에서는 농업법을 통해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중요 농업정책 수단들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농업개념 및 경영형태 인정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위 시행령에서 농업경영인, 표준노동력, 농업경영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1. 경영인(Bewirtschafter/in)이란 경영체를 자신의 계산과 위험에 기초해서 운영하고 따라서 영업상의 위험을 지는 자연인, 법인, 또는 인적 회사이다(2조 1항).
경영인이 여러 생산처(Produktionsstätten)를 운영하면 이것은 하나의 경영체로 본다(2조 2항).
2. 표준노동력(standardarbeitskraft)이란 경영체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노동경제적 기초에 토대를 둔 표준화된 계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3조 1항).
3. 농업경영체(Bewirtschaft)란 농업을 행하는 영업체(ein landwirtschaftliches Unternehmen)로서
 - a. 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행하고 있고
 - b. 하나 또는 다수의 생산처(Produktionsstätte)를 포괄하며
 - c. 다른 경영체로부터 법적, 경영적, 조직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적 및 독립적이며
 - d. 그 자체적 경영성과를 제시하고
 - e. 연중(年中) 계속해서 경영하는 것이다. (6조 1항)

- 경영인의 정의에서는 자기 책임하의 위험부담이 중요한 개념이고, 경영체의 정의에서는 농업활동 이외에 생산처 보유, 독립성, 계속성이 중요 요소로 포함됨. 표준노동력은 직접지불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규모를 정하는데 농지 등 기준에 더불어 스위스에서 특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임.

5. 일본

□ 김수석(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일본에서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가족농업경영인 농가가 주체이며 경영의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경영을 종전에는 취업 상태에 따라 전업농, 겸업농(1종겸업, 2종겸업) 등으로 구분하였음.
- 1990년 이후에는 고령 전업농가가 증가하는 등 전업농도 성격이 상반되는 농가가 나타나는 실태를 반영하여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농가’, ‘자급적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본에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4.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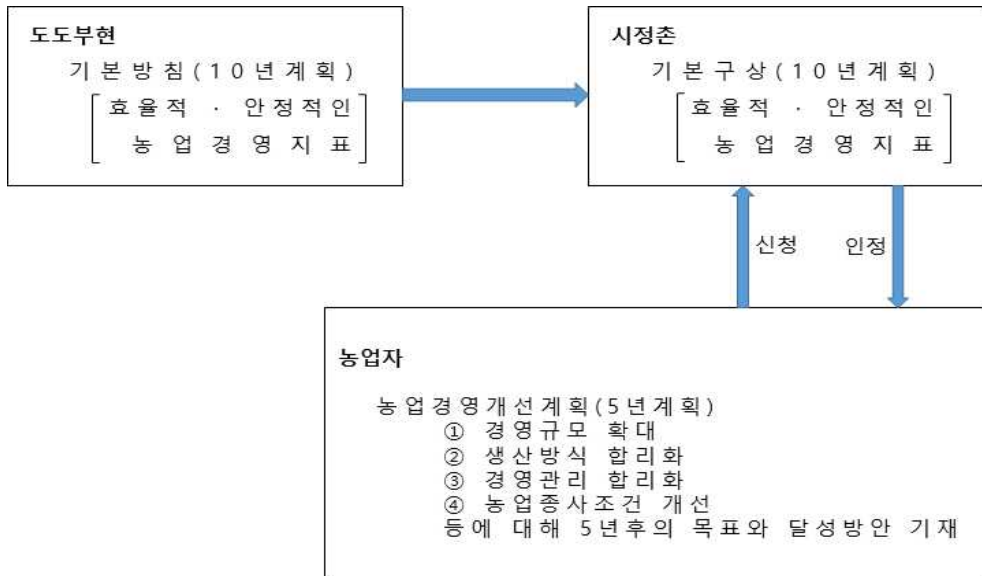
구분	2004	비고
1. 농가구분	2,934	- 경지면적 10a 이상,
판매농가	2,161	- 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판매금액 50만엔 이상
지급농가	773	- 경지면적 30a 미만인면서 판매금액 50만엔 미만
2. 전점업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전업농가	441	- 세대원중 겸업종사자가 없는 농가
제1종겸업농가	282	-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농업소득>농외소득
제2종겸업농가	1,439	-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농업소득<농외소득
3. 주부업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주업농가	434	-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준주업농가	512	- 농외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부업적농가	1,216	-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없는 농가
4. 농업노동력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농업종사자	6,230	- 15세 이상 세대원, 연간 1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한 자
농업취업인구	3,620	- 자영농업만 종사한 자 또는 자영농업 이외에 종사해도 연간 노동일수가 자영농업이 많은 자
기간적	2,200	- 농업취업인구 중, 주된 상태가 농업인 자
농업종사자	1,670	- 농업종사자 중, 자영농업에 150일 이상 종사한 자
농업전종자		

- 일본에서 농업법인은 전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초 농지법에서는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작자 주체의 법인(농업생산법인)에 한정하여 농지 취득을 인정하였으나 2001년부터 주식회사(주식양도 제한) 형태의 농업생산법인도 농지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부락단위로 농지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마을영농이 특수한 경영 형태로 존재함. 이는 농기계 과잉투자나 후계자 부족 등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수단으로 마련되었음.
- 일반 농업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농업경영체 유형으로 인정농업자를 선정하

여 육성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음.

- 인정농업자는 농업경영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로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그 계획을 시정촌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것임.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2-6. 인정농업자의 인정체계



- 일단 인정농업자로 인정이 되면, 금융을 비롯하여 세제, 연금 등의 지원이 있으며, 농지규모화 관련의 각종 자금이나 우대 조치, 농지나 농기계 등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장기 저리자금, 경영 안정대책, 각종 경영상담 및 연수 기회 제공까지 마련됨.

6. 대만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대만에서의 농가는 농지, 농업소득, 품목 등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동일 요소를 농가 기준으로 삼더라도 각국의 인구밀도, 1인당 GDP 등에 따라 그 임계치에 차이가 있음.
- 농산물 판매액 2만 NTD(한화 75만 4,800원), 경작농지규모 0.05ha
- 대만·우리나라·일본의 농가 정의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15. 대만·우리나라·일본의 통계상 농가 정의

국별	통계상 농가 정의
대만	경영 경지규모가 0.05ha 이상인 가구 대동물 1마리 또는 중동물 3마리 또는 소동물 100마리 이상 사육 연간 농축산물생산가액 2만 NTD(한화 75.5만 원) 이상인 가구
대한민국	경영 경지규모가 0.1ha 이상인 가구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2015년 12월 1일)현재 가축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일본	경영 경지규모가 0.1ha 이상인 가구 그 미만이라도 연간 판매금액이 15만 엔 이상인 가구

주: 나라별 농업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자료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대만에서 법적 근거를 갖는 농민 관련 용어는 크게 농민, 농업생산판매반(農業產銷班), 농장, 농민단체로 나뉘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의 작목반과 성격이 유사한 농업생산판매반이 법적 근거가 있고, 농장등록규칙에 따라 등록되는 농장이 있다는 점임.
- 농장은 자연인이 경영하는 자연인 농장과 법인 농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벼농사와 같은 토지이용형 농장의 경우 5ha 이상, 시설이용형 농장은 1ha 이상일 경우 농장을 등록해야 함.
- 각 농장은 한 명 이상의 국내외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기술자를 두어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추도록 규명하고 있음.
- 각종 농업에 대한 지원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면 농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농업발전조례라는 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특별법의 개념으로 농업지원관련법을 제정함.

- 농업발전조례는 농업발전기금, 수입농산물피해구제기금 등 농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각종 기금 설치,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2-16. 농업발전조례상 농민 관련 정의

명칭	정의	비고
농민 (Farmers)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	제3조3항
가족농 (Family farm)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구 단위를 기초로 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장	제3조4항
농업생산판매반 (Cooperation group)	농업생산판매반은 만 18세이고, 동시에 토지가 서로 인접하거나 같은 품목을 영위하는 농민을 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16항
농민단체 (Farmers' Organization)	농민이 농회법, 어회법, (농업)협작사법, 농전수리회조직통칙에 의거, 조직한 농회, 어회, 농업협작사 및 농전수리회	제3조7항

자료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대만의 농업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는 농민건강보험조례, 노령농민복지수당임시조례, 농민퇴직금조례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법은 농민건강보험조례이며, 이 조례가 정책대상으로서의 농민 여부를 판정하는 데 기준임.
- 대만은 농가를 전·겸업농가와 주력농가로 나누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전업농을 신설하였음. 농민, 농가, 전업농가, 주력농가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7. 농민, 농가, 전업농가, 주력농가의 정의

구분	정의	근거
농민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연인	농업발전조례 제2조3항
농가	경영경지 면적 0.05ha, 대형 동물 1마리 사육, 중형 동물 3마리 사육, 소형 동물 100마리 사육, 또는 연간 농업수입 2만 NTD 이상의 가정	농업총조사
전업농가	농가 가족원 중 농업 외 종사자가 없는 농가	농업총조사
	노령농민농지전업농임차(小地主大專業農)	농업위원회
주력농가	연간농축업수입이 20만 NTD 이상이며 가구 내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65세 이하의 농업 주종사자가 있는 농가	행정원 주계총처와 농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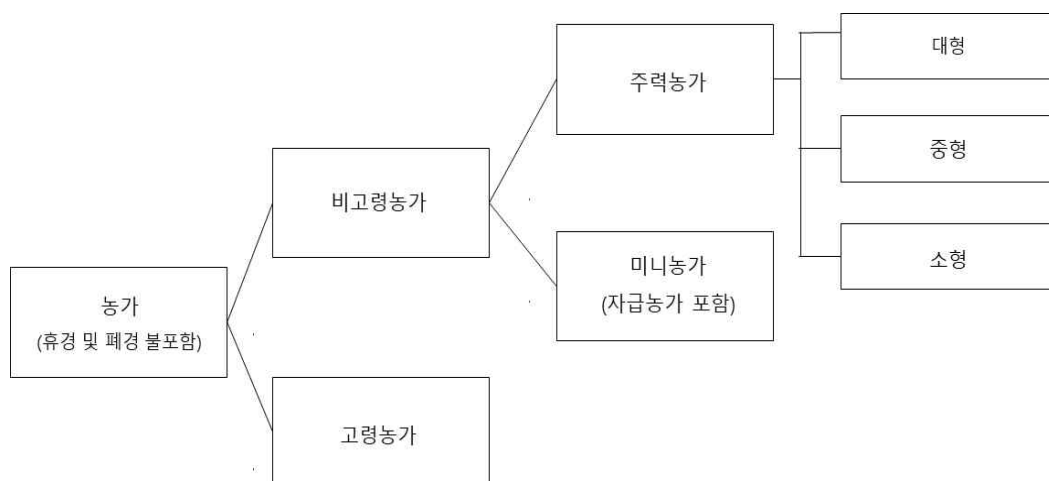
주 : 겸업농가는 15세 이상의 농가 가족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이 비상근(파트타임) 또는 상근

(폴타임)으로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칭함.

자료 : 전찬익(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

- 대만 농업위원회는 농업에 대한 규모별 농가의 기여와 투입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 가구 내의 노동력 작업, 영농종사 인구의 연령 및 농업경영규모 등의 요소에 따라 농가 구조를 세분화함.

그림 2-7. 대만의 농가 구조



자료 : 農業委員會(2019). 『農業統計年報』.

- 대형농가 : 농경업은 연 판매액 180만 NTD(한화 6,793만 원) 이상, 목축업은 연간 500만 NTD(한화 1억 8,870만 원) 이상 판매
- 중형농가 : 농경업은 연간 판매액 70만~180NTD 미만(한화 2,641~6,793만 원), 목축업은 연간 매출액 150만~5백만 NTD 미만(한화 5,661~1억 8,870만 원)
- 소형농가 : 농경업은 연간 판매액 20만~70만 NTD 미만(한화 754~2,641만 원), 축산업은 연 매출 20만~150만 NTD 미만(한화 754~5,661만 원)
- 미니농가 : 농업총조사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이면서, 최소한 한 명의 비노령 종업종사자가 있으며 동시에 1차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20만 NTD 미만

제 3장 한우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 검토

제 1절 통계 자료 검토

☐ 공공기관 자료

① 소이력제 자료

② 농가경제통계 자료

③ 농업법인조사 자료

☐ 민간 자료

① 한우협회 경영실태조사 자료

② 한우자조금 농가컨설팅 자료

○ 각 자료의 분류체계 및 자료의 한계 비교

	자료의 분류 체계	자료의 한계
1. 소이력제 자료	사육규모, 사육방식, 개인/법인별 농장수와 사육두수	경영 관련 자료 부재
2. 농가경제통계 자료	개별 농가에 대한 세부 경영자료	한우 축종만 추출 불가
3. 농업법인조사 자료	법인에 대한 세부적 경영자료	등록된 법인만 확인 가능
4. 한우협회 경영실태조사 자료	농가 경영성적 자료	설문자료로 대표성 부족
5. 한우자조금 농가컨설팅 자료	농가 컨설팅 자료	설문자료로 대표성 부족

1. 공공기관 통계 자료 검토

1.1. 공공기관 통계 자료 개요

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제 자료)

☐ 축산물 이력제(소) 사업 소개

- 이력제 시스템이란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 도입배경
 - －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 － 축산물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로 축산업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

☐ 소이력관리현황(현재 공표 방식)

- 전체 사육두수 및 농장현황
- 지역별 사육현황
- 월령별 사육현황
- 지역별/사육규모별 농장수
- 지역별 출생신고 현황
- 월령별 도축신고 현황
- 지역별 폐사현황
- 폐사원인별 신고현황
- 월령별 폐사현황

- 한우암소 산차별 도축현황

□ 추출 가능 방식

- 사육방식별
- 경영주 연령별
- 농가/법인별

나. 통계청 자료

(1)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 개요

- 조사목적
 -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와 분포, 농림어업 경영구조 및 지역 현황 등을 파악하여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이를 통한 농림어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7조 1항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1호
- 조사기간
 - 준비조사: 2015.11.30.(1일간)
 - 본조사 및 합동내검: 2015.12.1.~12.15(기간 중 11일간)
- 공표주기: 5년
- 조사대상
 - 가구조사: 2015년 12월 1일 현재 농림어가정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지역조사: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
- 조사항목
 - 농림부문: 51개 항목

- 어업부문: 60개 항목
- 지역부문: 19개
- 농업부문 조사항목(8개 분류)
 - 가구에 관한 사항
 - 경지에 관한 사항
 - 작물에 관한 사항
 - 가축에 관한 사항
 - 판매 및 경영형태에 관한 사항: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전업 및 겸업, 영농지역
 - 생산자 조직 및 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농업 고용 및 농기계 보유에 관한 사항
 - 정보화기기 및 교통수단 등에 관한 사항
- 조사구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그대로 이용

□ 주요 용어 정의

- 농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2015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m^2(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전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가 없는 농가
- 겸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가 있는 농가
 - 1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수입 보다 많은 농가

○ 경영형태(9개로 분류)

-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¹⁾,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중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업부문

(2) 농가경제통계

□ 개요

○ 조사목적

-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2호

○ 조사기간

- 조사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조사대상기간: 1년)
- 원부: 매년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년 2회, 자산변동 시에는 수시)

○ 공표주기: 연간

○ 공표내용: 전국, 전·겸업별, 주·부업별, 영농형태별,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규모별, 지역별(9개 도)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

○ 조사대상 가구

- 대상농가수: 전국 3,000 표본농가(가구원 2인 이상 2,900농가, 1인 단독 100농가)
- 조사 대상 농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000m²(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시가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1) 농가경제통계에는 이 항목이 없음.

○ 조사항목

- 가구원 현황, 작물재배현황, 가축사육현황 및 구입·판매 내역
- 수입: 농업총수입, 농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
- 지출: 농업지출, 농업외지출, 가계지출
- 농업노동 투입내역
- 농가자산/부채

○ 표본설계

- 조사모집단: 2015년 농업총조사에서 파악된 농가(1,088,518농가)
- 표본규모: 3,000가구

□ 주요 용어 정의(농가의 구분)

○ 전·겸업별

-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 보다 적은 농가

○ 주·부업별

-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
-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 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영농형태별(8개로 분류)
 - 논벼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수입이 최대인 농가
 - 과수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서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채소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특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용작물수입이 최대인 농가
 - 화훼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수입이 최대인 농가
 - 전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 축산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수입이 최대인 농가
 - 기타농가: 이외 기타농산물(묘, 벚짚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수입이 최대인 농가

□ 농가경제조사 활용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 구성 현황 파악 : 맞춤형 농업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농가 자산/부채 현황 파악: 농가부채 대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전국 가계 및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 도농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 지원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이 농업 손실 보상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소득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촌진흥청
 - 농업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가경제 동향, 농가경쟁력분석, 산업 전망 등

(3) 농업법인조사

☐ 개요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조사목적
 -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주기
 - 1년
- 공표주기
 - 1년

☐ 분류방식

- 사업유형별
- 법인특성별
- 품목별
- 운영주체 및 사업유형별
- 법인특성별/출자자/규모별
- 법인특성별/출자금/규모별
- 법인특성별/설비투자/

- 법인특성별/연령별 종사자수
- 법인특성/상시종사자 규모별
- 법인특성별/가축사육두수(연평균)
- 매출액
- 자산/부채/자본규모별
- 매출액/영업이익 규모별

(4) 축산물생산비통계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 축산가구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3호
- 주요조사내용
 - － 가축 사육 및 구입 현황, 축산물 판매수입
 - － 가축사육에 투입되는 경영비
 - － 사료작물 생산 및 노동력 투입
 - － 사양관리 노동력 투입
 - － 가축·토지·건물·대농구에 대한 자본평가액, 상각비 및 자본이자 등
- 조사대상: 7개 축종의 표본가구 1,400가구
 - － 한우 번식우: 420가구, 한우 비육우: 190가구
- 표본설계
 - － 2015년 농업총조사와 2016년 농림어업조사, 2017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의 자료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 유형 구분 방식
 - － 사육규모별로 마리당 기준 산출(가구의 개념이 아님)

1.2. 공공기관 통계 자료 분석

1.2.1. 소 이력제 자료

(1)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농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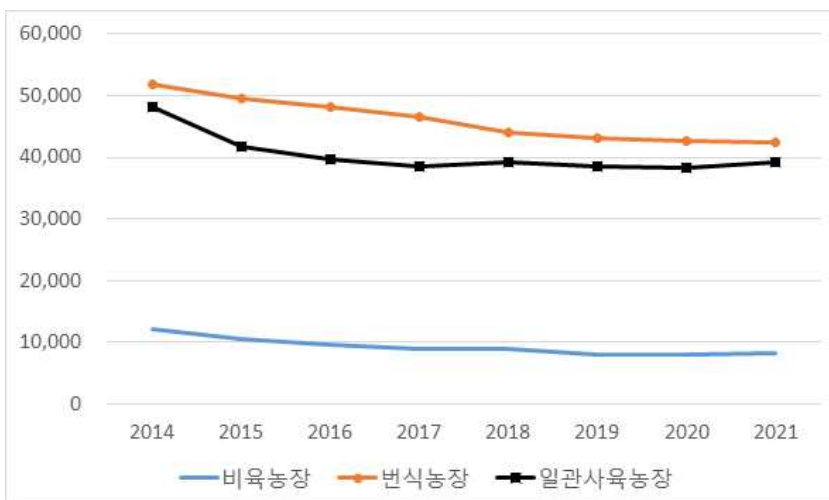
□ 농장수 변화

○ 사육방식별²⁾ 농장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지난 7년간 사육농장수는 111,914개에서 89,824개로 감소함.

- 사육방식별 농장수는 2014년에 번식 46.3%(51,765개), 비육 10.8%(12,050개), 일관사육 43.0%(48,099개)이었음.
- 2021년의 사육방식별 농장수는 번식 47.3%(42,455개), 비육 9.1%(8,130개), 일관사육 43.7%(39,239개)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은 꾸준히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일관사육농장은 2017년 이후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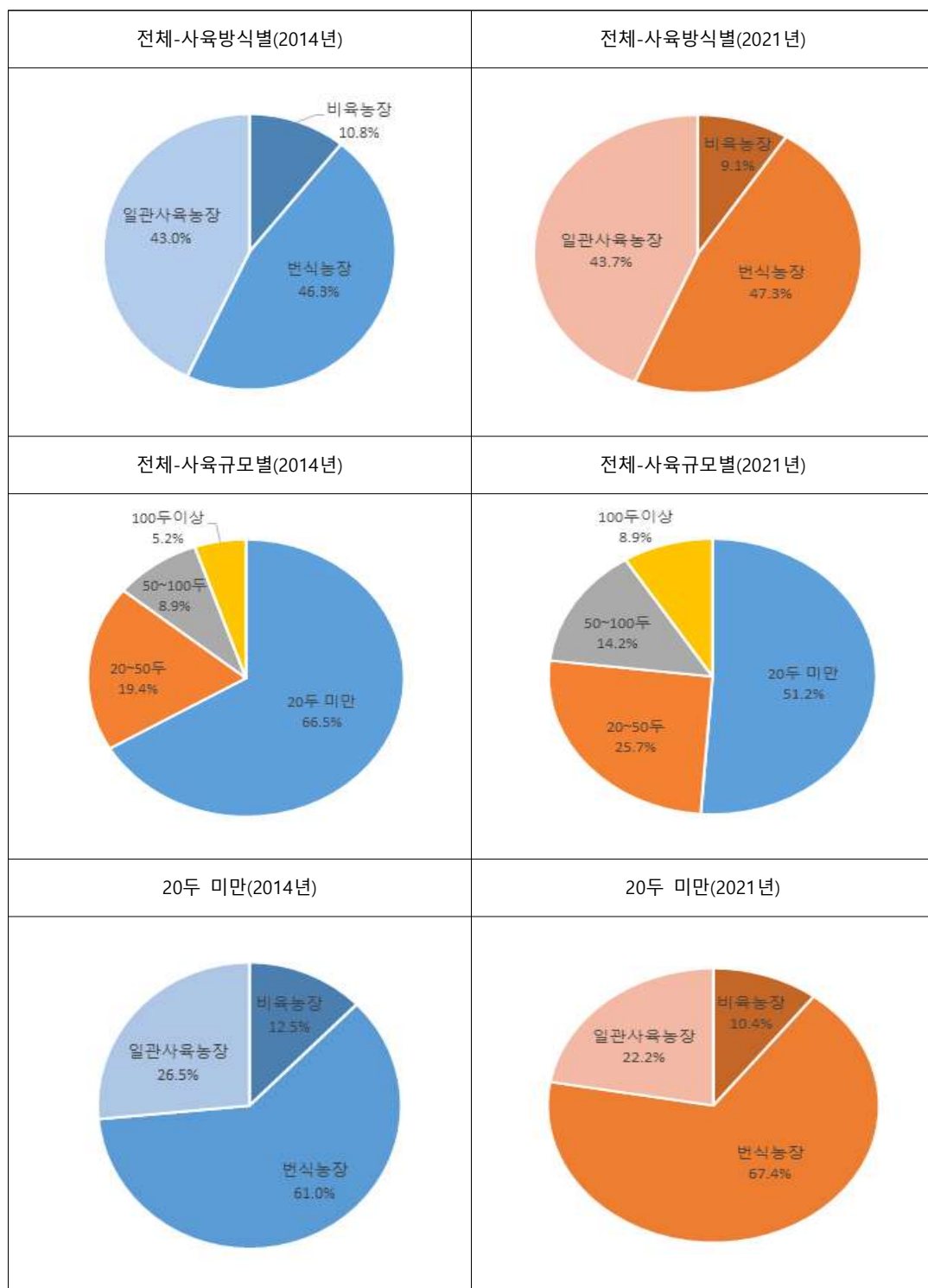
그림 3-1. 7년간 한우 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2) 30페이지 정의 참조

- 사육방식별 농장수의 상대적 비율 변화
 - 지난 7년간('14-'21) 번식농장의 비율은 46.3%에서 47.3%로 소폭 증가하였고, 비육농장의 비율은 10.8%에서 9.1%로 감소하였으며, 일관사육농장의 비율은 43.0%에서 4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사육규모별 농장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사육규모별 농장수의 경우 2014년 20두 미만은 66.5%(74,444), 20두~50두 미만은 19.4%(21,675), 50두~100두 미만은 8.9%(9,922), 100두 이상은 5.2%(5,873)이었음.
 - 2021년 사육규모별 농장수는 20두 미만은 51.2%(45,950), 20두~50두 미만은 25.7%(23,100), 50두~100두 미만은 14.2%(12,776), 100두 이상은 8.9%(7,998)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20두 미만 농장수는 66.5%에서 51.2%로 감소하였고, 20두~50두 미만은 19.4%에서 25.7%로 증가하였으며, 50두~100두 미만과 100두 이상의 농장에서도 각각 8.9%에서 14.2%, 5.2%에서 8.9%로 증가하였음. 2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음.(농장의 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3-2.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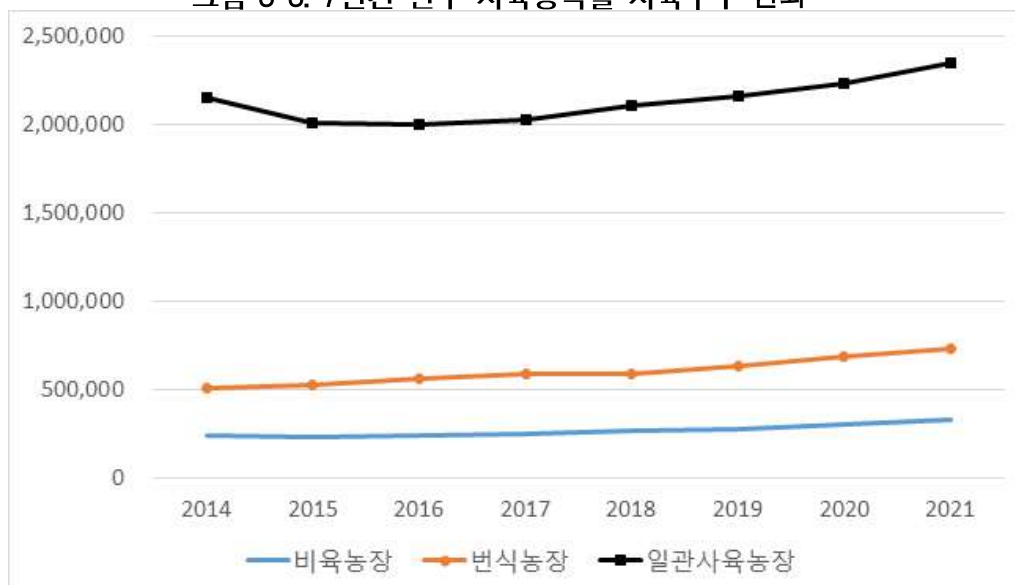
□ 사육두수 변화

○ 사육방식별 전체사육두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지난 7년간 사육마릿수는 290만4천두에서 341만5천두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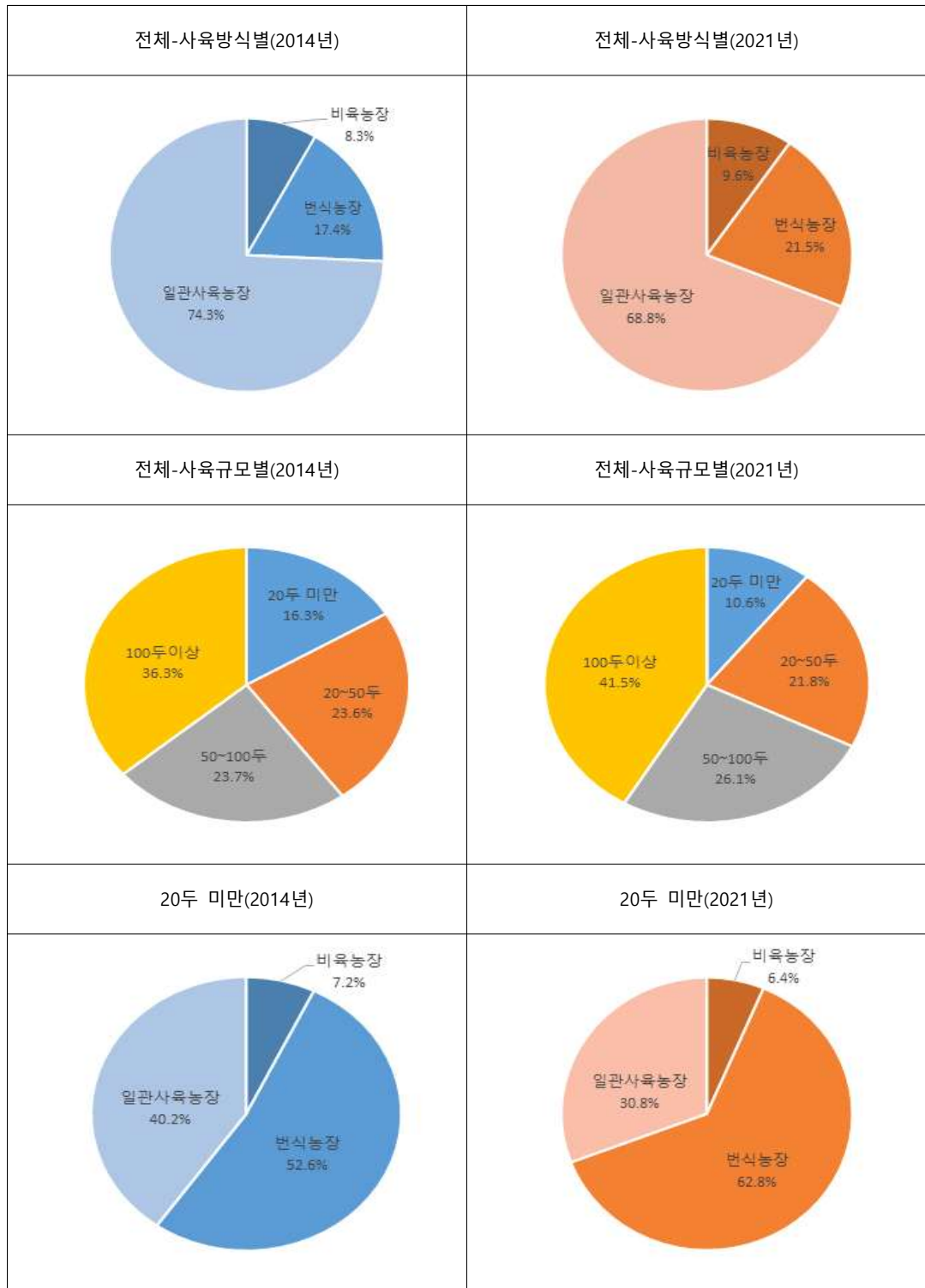
-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2014년에 번식농장 17.4%(506,434), 비육농장 8.3%(241,749), 일관사육 74.2%(2,156,091)이었음.
- 2021년에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21.5%(734,800), 비육농장 9.6%(329,376), 일관사육 68.8%(2,351,156)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일관사육농장과 번식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 마릿수는 꾸준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육농장의 사육마릿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7년간('14-'21) 전체 사육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17.4%에서 21.5%로 증가하였고, 비육농장의 비율은 8.3%에서 9.6%로 증가하였으며, 일관사육 농장의 비율은 74.2%에서 68.8%로 감소하였음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에서 사육하는 마릿수의 상대적 비율은 증가하고 일관사육 농장에서 사육하는 마릿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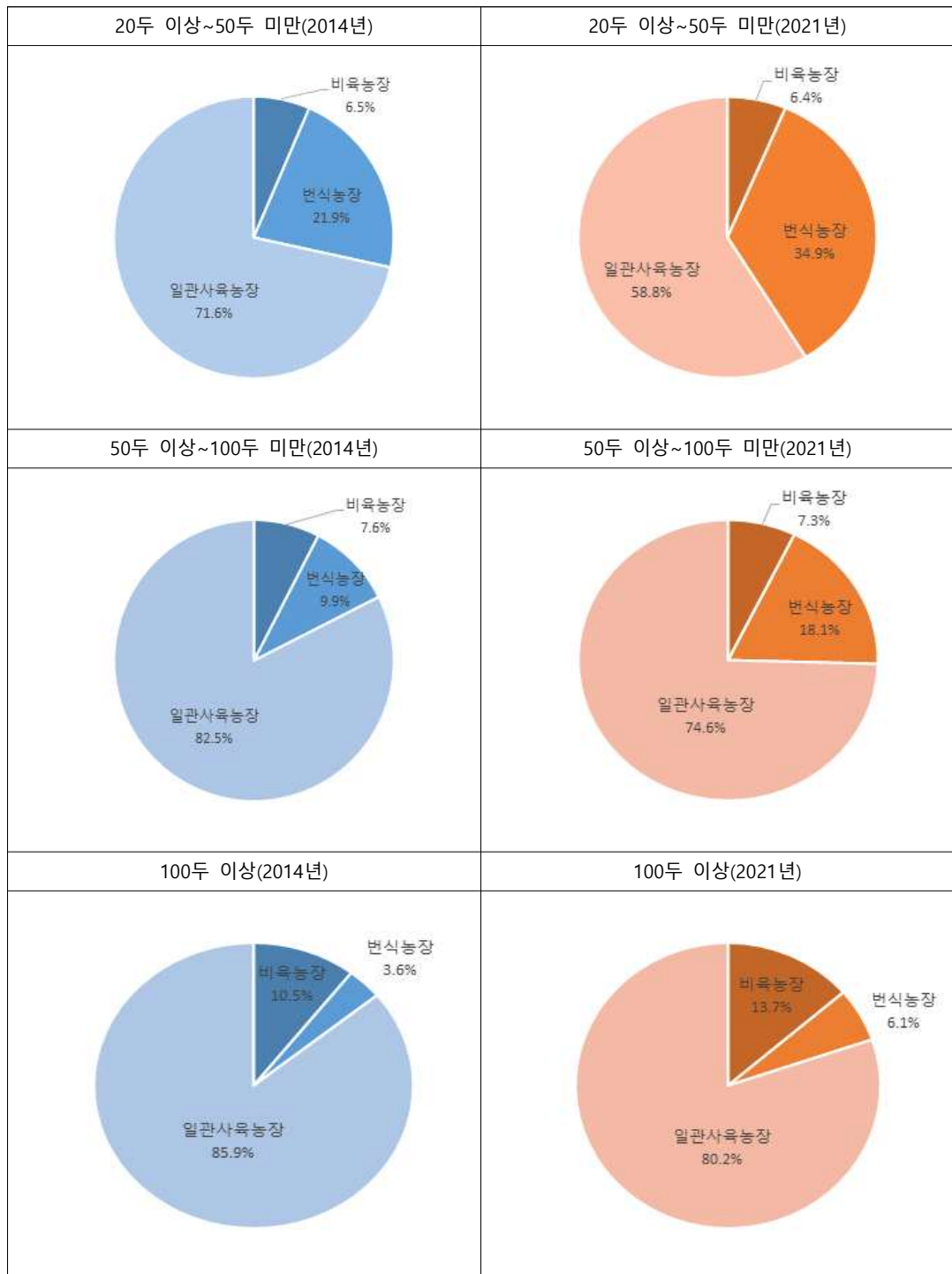
그림 3-3. 7년간 한우 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 가임암소두수 기준 서술(2014년~2021년, 12월 기준)
 - 2014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19.5%(270,229), 비육농장 0.6%(7,772), 일관사육농장 79.9%(1,107,726)이었음.
 - 2021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23.7%(386,923), 비육농장 0.2%(3,529), 일관사육농장 76.1%(1,240,881)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가임암소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19.5%에서 23.7%로 증가하였고, 일관사육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79.9%에서 76.1%로 감소하였음.
- 번식우두수 기준 서술(2014년~2021년, 12월 기준)
 - 2014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22.6%(270,228), 비육농장 0%(0), 일관사육농장 77.4%(926,043)이었음.
 - 2021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26.1%(386,923), 비육농장 0%(0), 일관사육농장 73.9%(1,097,360)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번식우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22.6%에서 26.1%로 증가하였고, 일관사육농장은 77.4%에서 73.9%로 감소하였음.
- 사육규모별 사육두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사육규모별 사육두수의 경우 2014년 20두 미만은 16.3%(474,755), 20두~50두 미만은 23.6%(686,599), 50두~100두 미만은 23.7%(689,332), 100두 이상은 36.3%(1,053,588)이었음.
 - 2021년 사육규모별 사육두수는 20두 미만은 10.6%(360,966), 20두~50두 미만은 21.8%(745,564), 50두~100두 미만은 26.1%(891,884), 100두 이상은 41.5%(1,416,918)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20두 미만 농장수는 16.3%에서 10.6%로 감소하였고, 20두~50두 미만도 23.6%에서 21.8%로 감소하였으며, 50두~100두 미만은 23.7%에서 26.1%로, 100두 이상은 36.3%에서 41.5%로 증가하였음.(50두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마릿수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

그림 3-4.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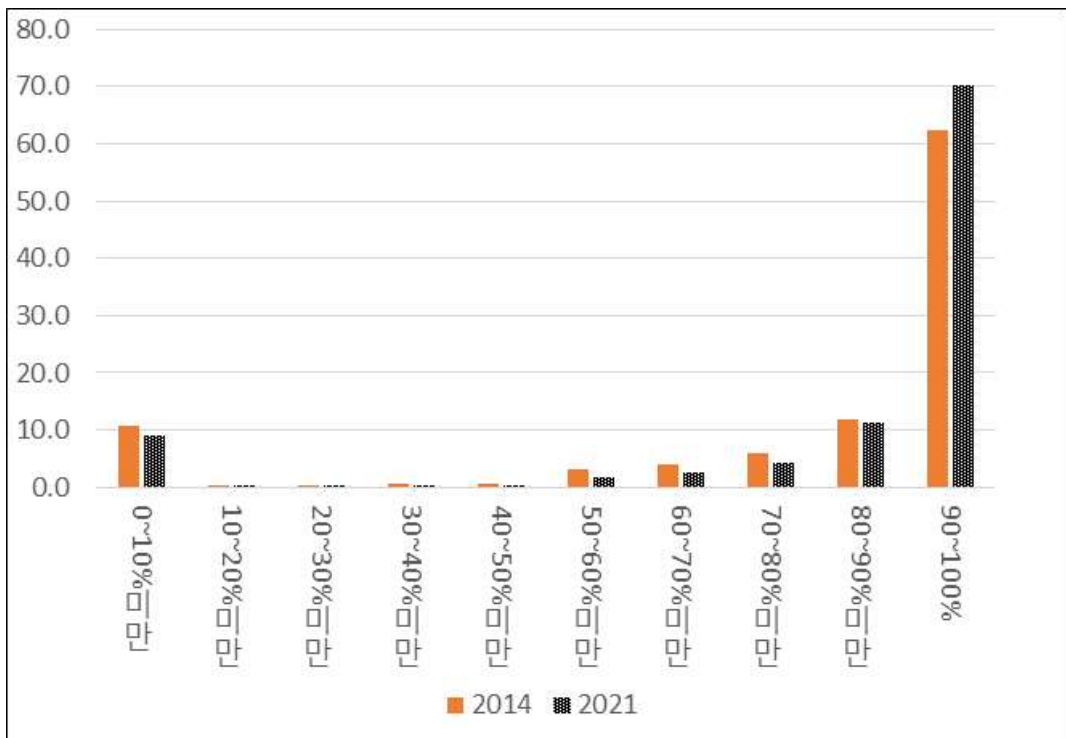




□ 일관사육 농장의 분포 변화

- 사육방식 구분 지표에 따른 농가 분포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사육방식 구분 지표(번식은 100%, 비육은 0%, 나머지 일관사육)의 분포를 보면, 지표값이 90% 이상에 몰려 있어 번식에 가까운 일관사육 형태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지난 7년간의 변화를 보면, 90~100% 구간에 들어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좀 더 번식쪽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육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5. 지표에 따른 농가 분포 변화



(2) 개인/법인별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로 사육두수/농장수³⁾

□ 법인 농장수

○ 법인별 농장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지난 7년간(‘14-‘21) 법인의 농장수는 665개에서 820개로 증가함.

– 사육방식별 농장수는 2014년에 번식농장 10.7%(71), 비육농장 36.4%(242), 일관사육 농장 52.9%(352)이었음.

– 2021년의 사육방식별 농장수는 번식농장 13.5%(111), 비육농장 37.7%(309), 일관사육 48.8%(400)이었음.

– 번식농장수는 71개에서 111개로 증가하고, 비육농장수는 242개에서 309개로 증가하고, 일관사육농장수는 352개에서 400개로 증가함. 농장수를 기준으로 보면, 번식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 사육규모별 농장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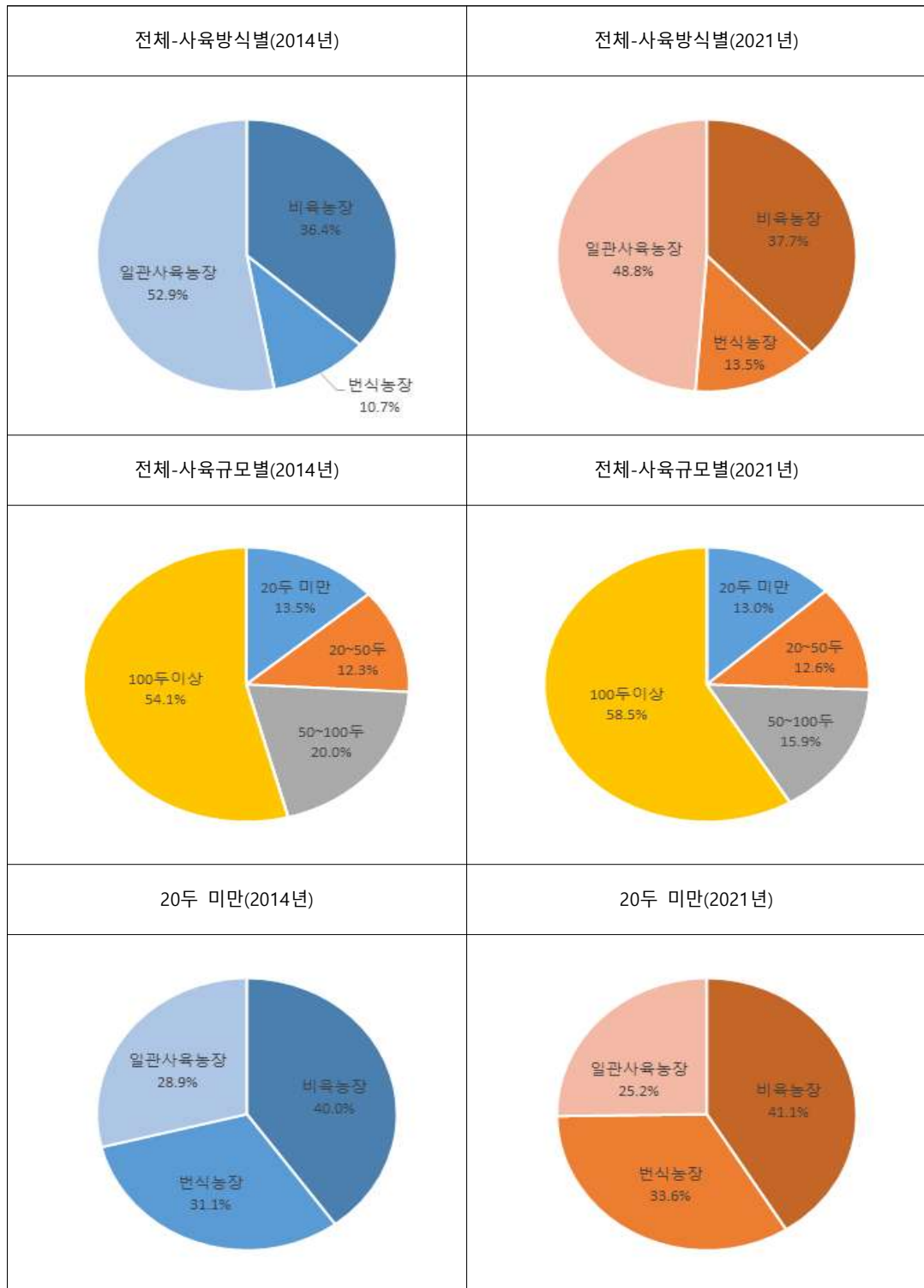
– 사육규모별 농장수의 경우 2014년 20두 미만은 13.5%(90), 20두~50두 미만은 12.3%(82), 50두~100두 미만은 20.0%(133), 100두 이상은 54.1%(360)이었음.

– 2021년 사육규모별 농장수는 20두 미만은 13.0%(107), 20두~50두 미만은 12.6%(103), 50두~100두 미만은 15.9%(130), 100두 이상은 58.5%(480)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20두 미만 농장수의 상대적 비율은 13.5%에서 13.0%로 감소하였고, 20두~50두 미만은 12.3%에서 12.6%로 증가하였으며, 50두~100두 미만은 20.0%에서 15.9%로 감소하고, 100두 이상은 54.1%에서 58.5%로 증가하였음.(100두 이상 규모의 법인 농장수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3) 이 절에서 언급하는 법인은 이력제 자료상 법인으로 분류된 농장에 관한 것으로, 실제 법인 소유의 농장이더라도 개인 주민번호로 이력제에 등록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에 포함되어 분석되는 한계가 있음. 다만, 법인을 추정하는 최소 수준의 자료로는 의미가 있음.

그림 3-6. 법인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20두 이상~50두 미만 (2014년)	20두 이상~50두 미만 (2021년)
일반사육농장 53.7% 비육농장 34.1% 번식농장 12.2%	일반사육농장 59.2% 비육농장 20.4% 번식농장 20.4%
50두 이상~100두 미만 (2014년)	50두 이상~100두 미만 (2021년)
일반사육농장 45.9% 비육농장 44.4% 번식농장 9.8%	일반사육농장 52.3% 비육농장 32.3% 번식농장 15.4%
100두 이상(2014년)	100두 이상(2021년)
일반사육농장 61.4% 비육농장 33.1% 번식농장 5.6%	일반사육농장 50.8% 비육농장 42.1% 번식농장 7.1%

□ 법인 사육두수

○ 법인별 전체사육두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지난 7년간('14-'21) 법인에서 사육하는 마릿수는 122,044두(총 사육두수의 4.2%)에서 163,208두(총 사육두수의 4.8%)로 증가함.

–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2014년에 번식농장 6.1%(7,405두), 비육농장 26.9%(32,886두), 일관사육농장 67.0%(81,753두)이었음.

– 2021년에 사육두수는 번식 6.3%(10,355두), 비육 36.4%(59,454두), 일관사육 57.2%(93,399)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전체 사육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6.1%에서 6.3%로 증가하였고, 비육농장의 비율은 26.9%에서 36.4%로 증가하였고, 일관사육 농장의 비율은 67.0%에서 57.2%로 감소함.(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보면, 비육농장의 사육마릿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법인별 가임암소두수 기준 서술(그림 생략)

– 2014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4.8%(1,681), 비육농장 0.3%(97), 일관사육농장 94.9%(32,955)이었음.

– 2021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4.2%(1,815), 비육농장 0.3%(127), 일관사육농장 95.5%(41,014)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가임암소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4.8%에서 4.2%로 감소하였고, 비육농장은 동일하게 0.3%였으며, 일관사육농장의 비율은 94.9%에서 95.5%로 증가하였음.

○ 법인별 번식우두수 기준 서술(그림 생략)

– 2014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6.1%(1,681), 비육농장 0%(0), 일관사육농장 93.9%(25,654)이었음.

– 2021년 사육방식별 사육두수는 번식농장 4.9%(1,815), 비육농장 0%(0), 일관사육농장 95.1%(35,072)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번식우두수 기준 번식농장의 사육두수 비율은 6.1%

에서 4.9%로 감소하였고, 일관사육농장은 93.9%에서 95.1%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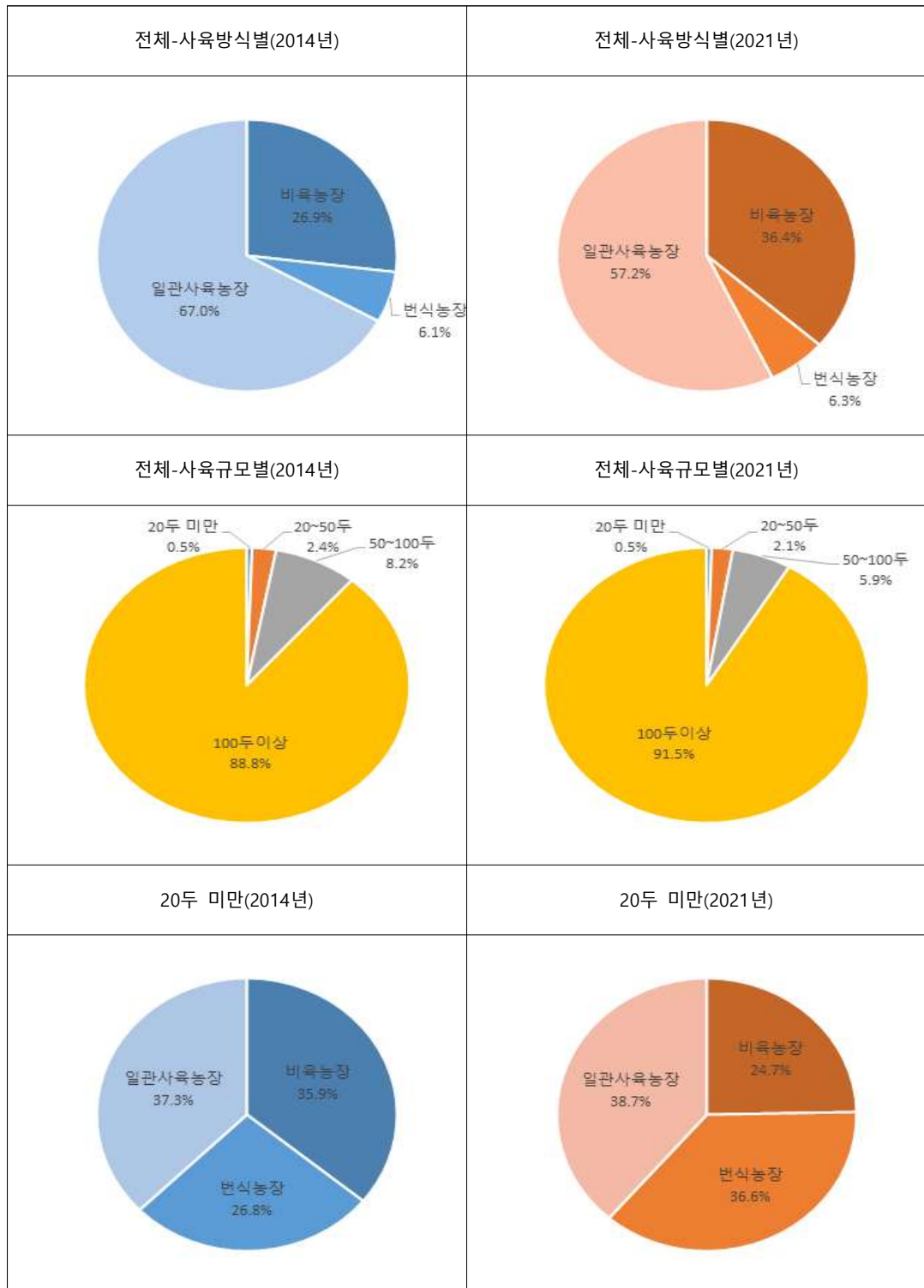
○ 법인 사육규모별 사육두수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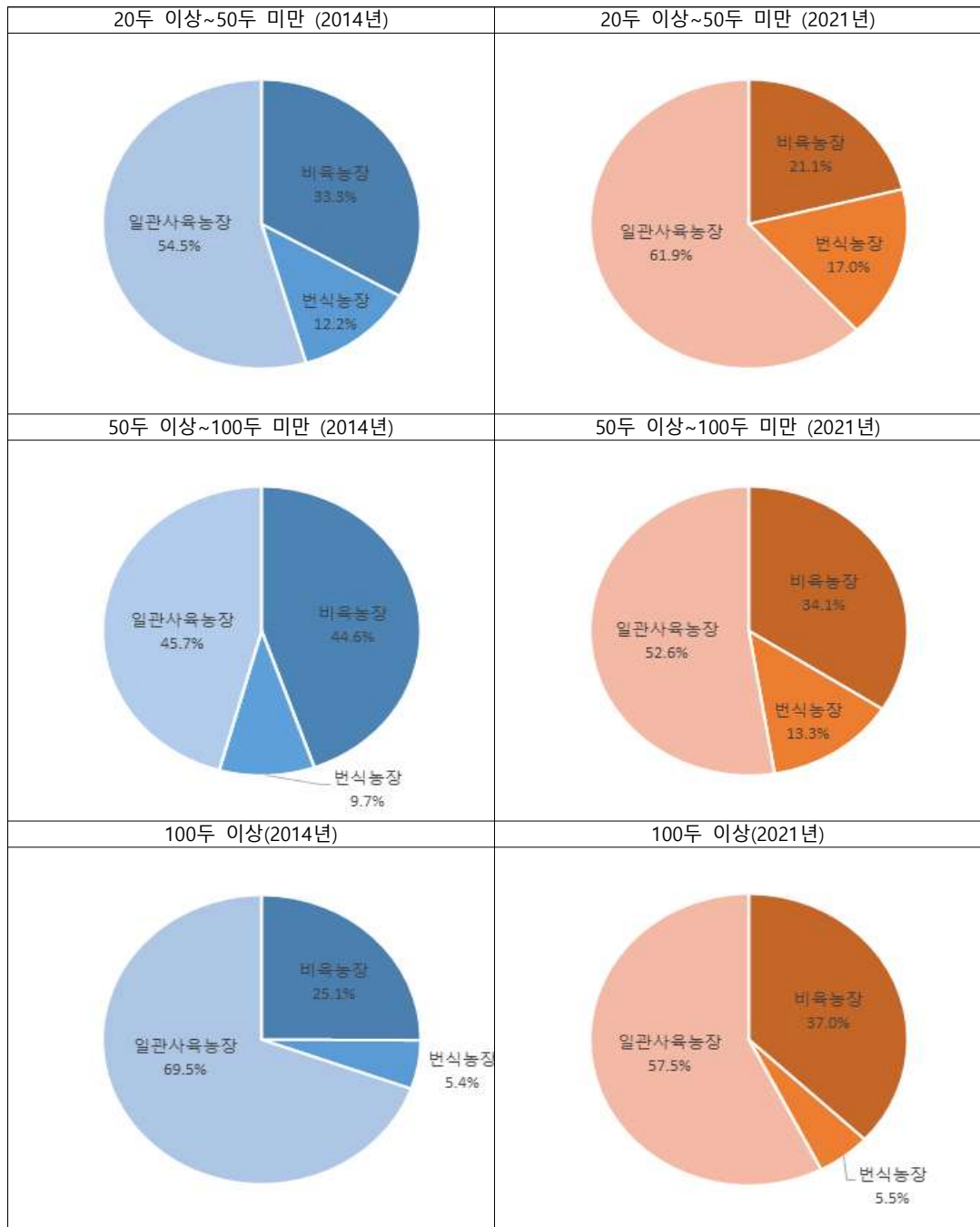
– 사육규모별 사육두수의 경우 2014년 20두 미만은 0.5%(646), 20두~50두 미만은 2.4%(2,901), 50두~100두 미만은 8.2%(10,062), 100두 이상은 88.8%(108,435)이었음.

– 2021년 사육규모별 사육두수는 20두 미만은 0.5%(822), 20두~50두 미만은 2.1%(3,423), 50두~100두 미만은 5.9%(9,585), 100두 이상은 91.5%(149,378)이었음.

– 지난 7년간(‘14-‘21) 20두 미만의 사육두수는 0.5%로 동일하였고, 20두~50두 미만은 2.4%에서 2.1%로 감소하였으며, 50두~100두 미만도 8.2%에서 5.9%로 감소하였고, 100두 이상은 88.8%에서 91.5%로 증가하였음.(100두 이상 규모에서 사육하는 법인의 사육마릿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3-7. 법인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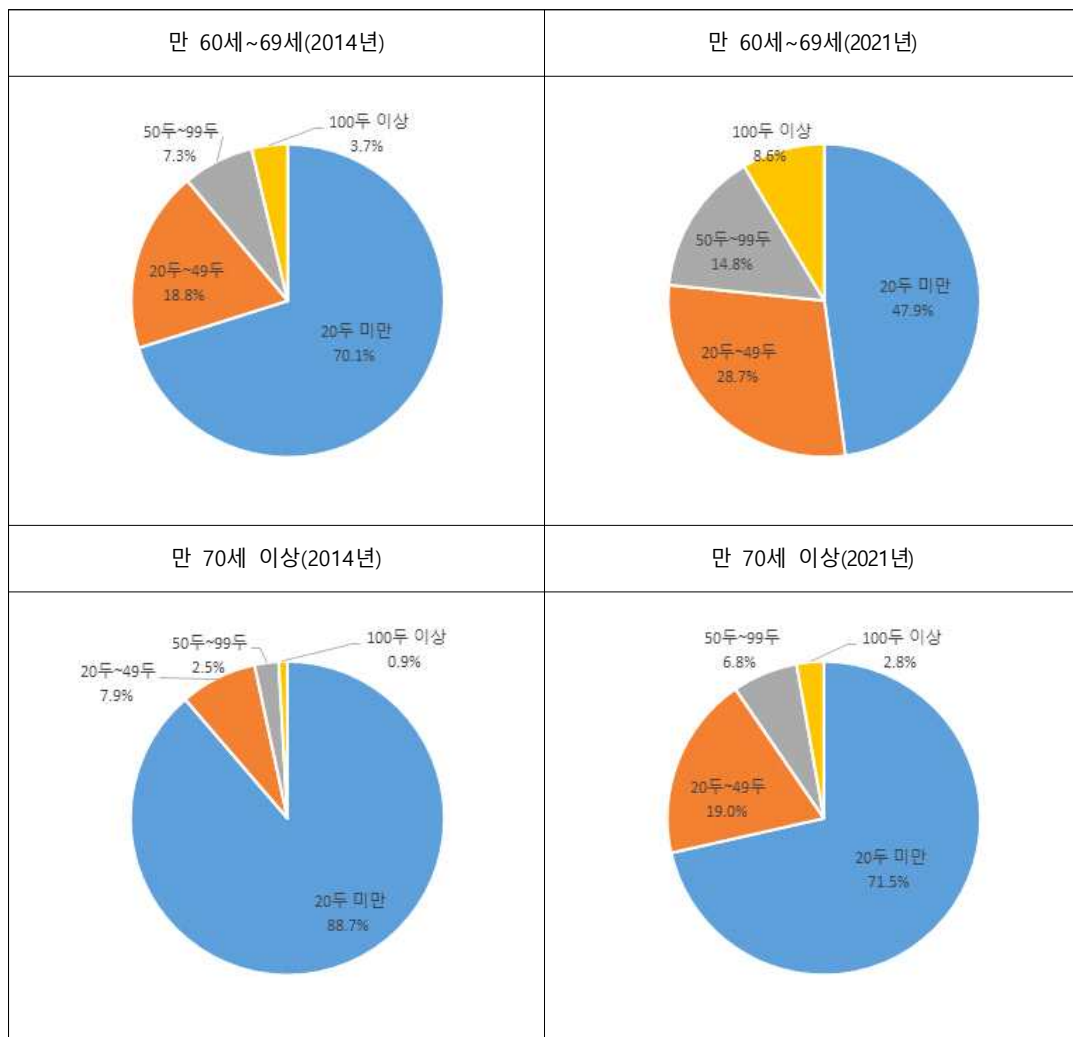


(3) 개인 연령대별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사육두수/농장수 분류

- 개인별 연령대별 사육규모별 농장수 변화(2014년~2021년, 12월 기준)
 - 지난 7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미만 소규모 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감소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연령대가 높을수록 한우를 사육하는 영세농일 확률이 커짐)

그림 3-8. 개인 연령대별 사육규모별 농장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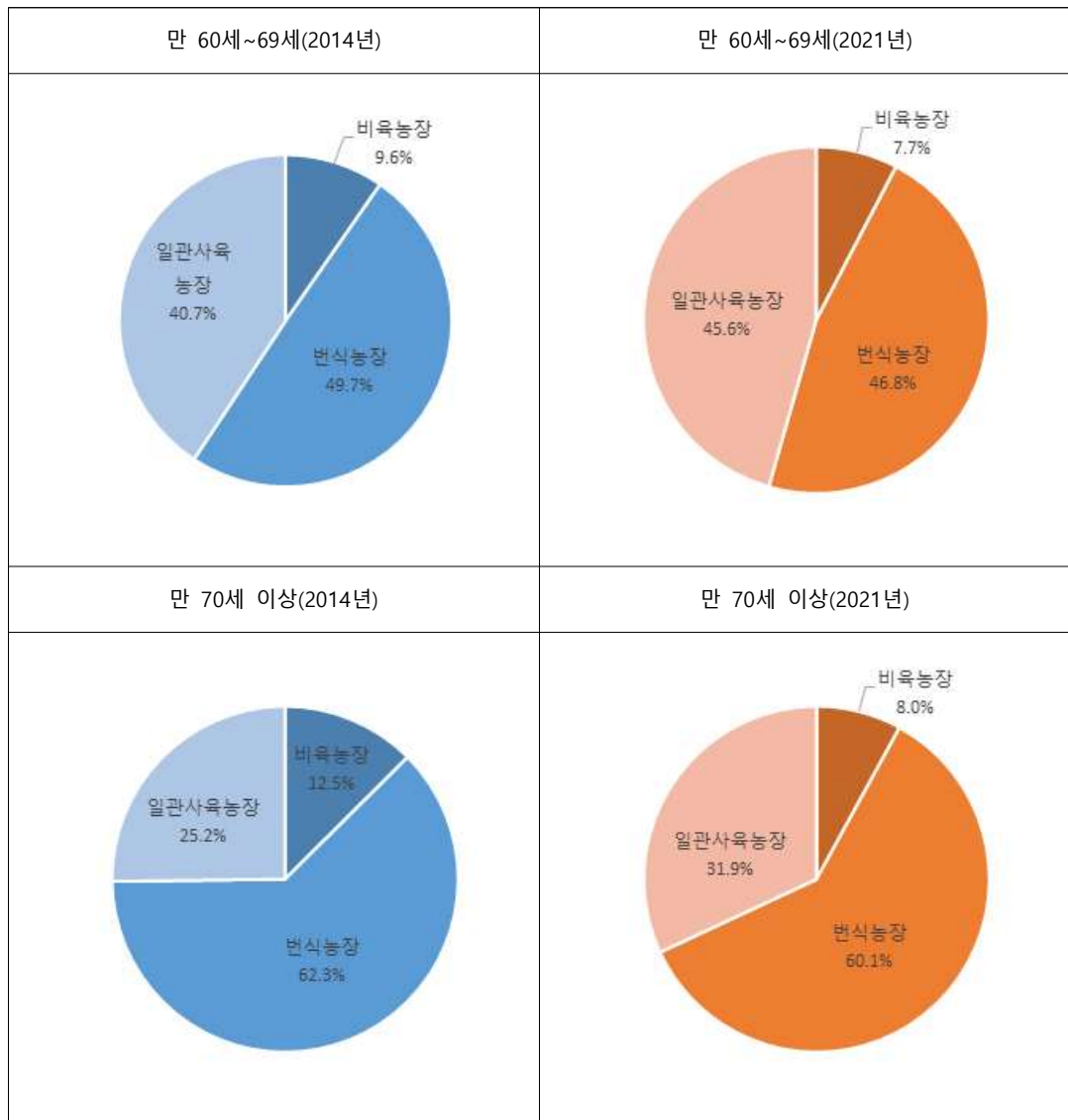


○ 개인별 연령대별 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 지난 7년간 일관사육농장의 비율은 줄고,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음.
- 만 70세 이상에서만 일관사육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번식농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개인 연령대별 사육방식별 농장수 변화





1.2.2. 농가경제조사 자료

○ 농가경제조사 자료 개요

- 표본농가의 수입, 지출, 자산 등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농업경영 개선, 농업관련 연구, 각종 손실보상비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가승인 통계자료임.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 10142호.
- 표본 크기: 매년 약 3,0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전국 3,000 표본 농가(가구원 2인 이상 2,900농가, 1인 단독 100농가)
- 조사 대상 농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1,000m²(10a)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시가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분석자료 기간 : 2003~2020년

- 분석내용: 대동물수입이 발생한 농가들의 전·겸업별, 주·부업별, 연령대별, 경지면적별 농가수지(농가소득, 농업총수입) 분석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최근 자료는 대동물 및 소동물 구분만 가능함. 한우사육 유무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본 분석에서는 대동물금액이 0보다 큰 농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begin{aligned} \text{농가소득} &= \text{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 + \text{비경상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농업소득(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 &\quad + \text{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 + \text{이전소득} \\ \text{농업총수입} &= \text{농작물수입금액} + \text{축산수입금액} + \text{농업잡수입금액}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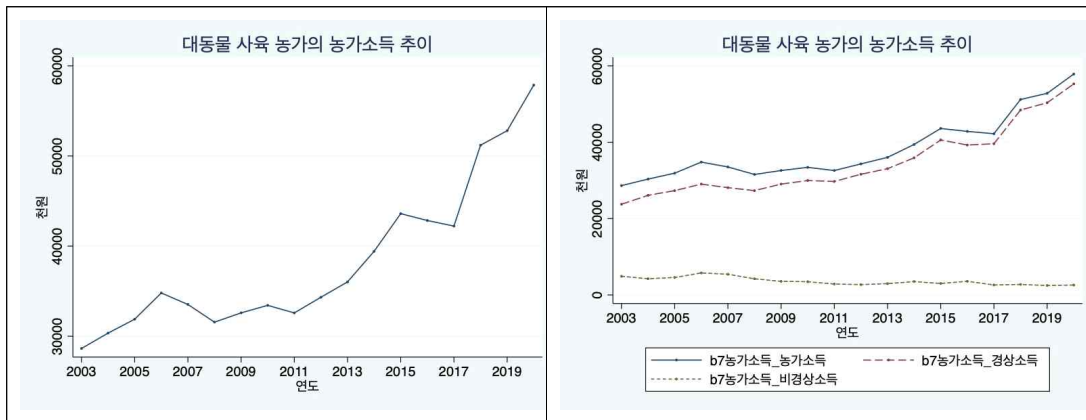
- 대동물은 한육우, 젓소, 돼지, 기타 대동물을 의미함.

- 기타 대동물은 염소, 꿀벌, 말, 노새, 당나귀, 산양, 면양, 타조, 사슴, 개 등을 포함함.
- 이 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경우 성축가격이 10만 원 이상인 동물들은 대동물에 포함시킴.

(1) 대동물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2,864만 원에서 2006년 3,480만 원까지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11년도에는 3,259만 원으로 나타남. 2015년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4,360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증가세가 더욱 커지면서 2020년 농가소득은 5,787만 원이었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소득원별 추이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상소득이 2003년 2,375만 원에서 2006년 2,90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1년도까지 약간 정체기를 보였음. 경상소득은 2015년 4,059만 원까지 다시 늘어났고, 2018년부터 증가폭이 커져 2020년에는 5,526만 원을 기록함.
- 비경상소득의 경우, 2003년 489만 원에서 2006년 576만 원으로 늘었으나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로 2012년에는 271만 원까지 떨어졌음. 2014년 비경상소득은 350만 원까지 회복하였으나 다시 줄어들어 2020년에는 259만 원에 머물렀음.
- 따라서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경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2003년 82.9% ⇨ 2020년 95.5%),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2003년 17.1% ⇨ 2020년 4.5%).

그림 3-10.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3-1.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8,641	23,752	13,358	8,342	2,053	4,889	21,699
2004	30,346	26,089	14,164	8,887	3,039	4,257	23,051
2005	31,893	27,323	14,133	9,104	4,087	4,570	23,237
2006	34,803	29,039	14,917	9,063	5,060	5,763	23,980
2007	33,527	28,099	12,802	10,436	4,860	5,428	23,239
2008	31,565	27,334	11,394	10,846	5,094	4,230	22,240
2009	32,597	29,035	11,992	11,564	5,479	3,562	23,556
2010	33,426	29,970	11,734	13,187	5,049	3,457	24,921
2011	32,590	29,725	11,474	13,242	5,009	2,866	24,716
2012	34,326	31,616	12,750	13,441	5,425	2,710	26,191
2013	36,030	33,075	11,865	15,465	5,745	2,956	27,330
2014	39,426	35,919	14,662	14,610	6,648	3,507	29,271
2015	43,604	40,598	17,969	14,572	8,057	3,006	32,541
2016	42,845	39,271	17,119	13,611	8,542	3,573	30,730
2017	42,224	39,612	17,394	13,902	8,316	2,612	31,296
2018	51,198	48,447	24,778	13,492	10,176	2,751	38,270
2019	52,806	50,332	22,136	15,727	12,469	2,474	37,863
2020	57,866	55,275	25,871	13,877	15,527	2,592	39,74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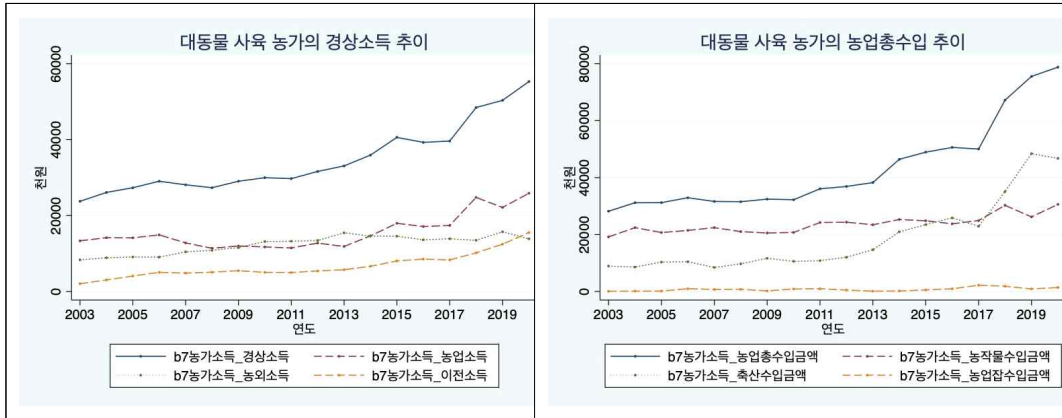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28,199	14,841	1,775	6,567	19,172	8,931	97
2004	31,168	17,004	2,125	6,762	22,431	8,605	132
2005	31,202	17,069	2,393	6,711	20,705	10,333	164
2006	32,933	18,016	2,359	6,704	21,459	10,477	996
2007	31,621	18,819	2,761	7,675	22,428	8,450	743
2008	31,529	20,135	2,635	8,211	21,039	9,709	781
2009	32,441	20,449	3,006	8,558	20,555	11,660	226
2010	32,221	20,487	3,702	9,485	20,737	10,586	897
2011	36,065	24,591	4,139	9,103	24,235	10,851	979
2012	36,882	24,132	3,894	9,547	24,343	12,028	511
2013	38,250	26,386	3,974	11,491	23,434	14,675	141
2014	46,420	31,759	4,279	10,331	25,279	20,955	186
2015	48,923	30,954	4,185	10,387	24,846	23,498	580
2016	50,586	33,467	4,407	9,204	23,770	25,855	962
2017	50,035	32,640	4,115	9,787	24,911	22,900	2,223
2018	67,199	42,421	4,880	8,612	30,261	35,086	1,853
2019	75,518	53,382	5,859	9,868	26,198	48,404	916
2020	78,764	52,894	4,878	8,999	30,607	46,744	1,41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 대동물 사육농가의 경장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2003년 1,336만 원에서 2005년 1,492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1년 1,147만 원까지 줄었음. 이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2,587만 원까지 늘어남. 경장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6.2%에서 2013년 35.9%까지 줄었고, 2014년(40.8%)부터는 다시 늘어나 2020년에는 46.8%였음.
- － 농외소득은 2003년 834만 원에서 2013년 1,567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 이후에는 다소 감소세를 보여 2020년 1,388만 원으로 줄어들었음. 농외소득이 경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5.1%에서 2013년 46.8%로 늘었으나 이후 줄어 2020년에는 25.1%까지 하락하였음.
- － 이전소득의 경우, 2003년 205만 원에서 계속 확대되어 2020년에는 1,553만 원까지 늘어났음. 2020년의 이전소득 1,553만 원은 2003년 이

후 최초로 농외소득(1,388만 원)을 넘어선 것임.

그림 3-11. 대동물 사육 농가의 농가소득 소득원별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2) 전업/겸업별 대동물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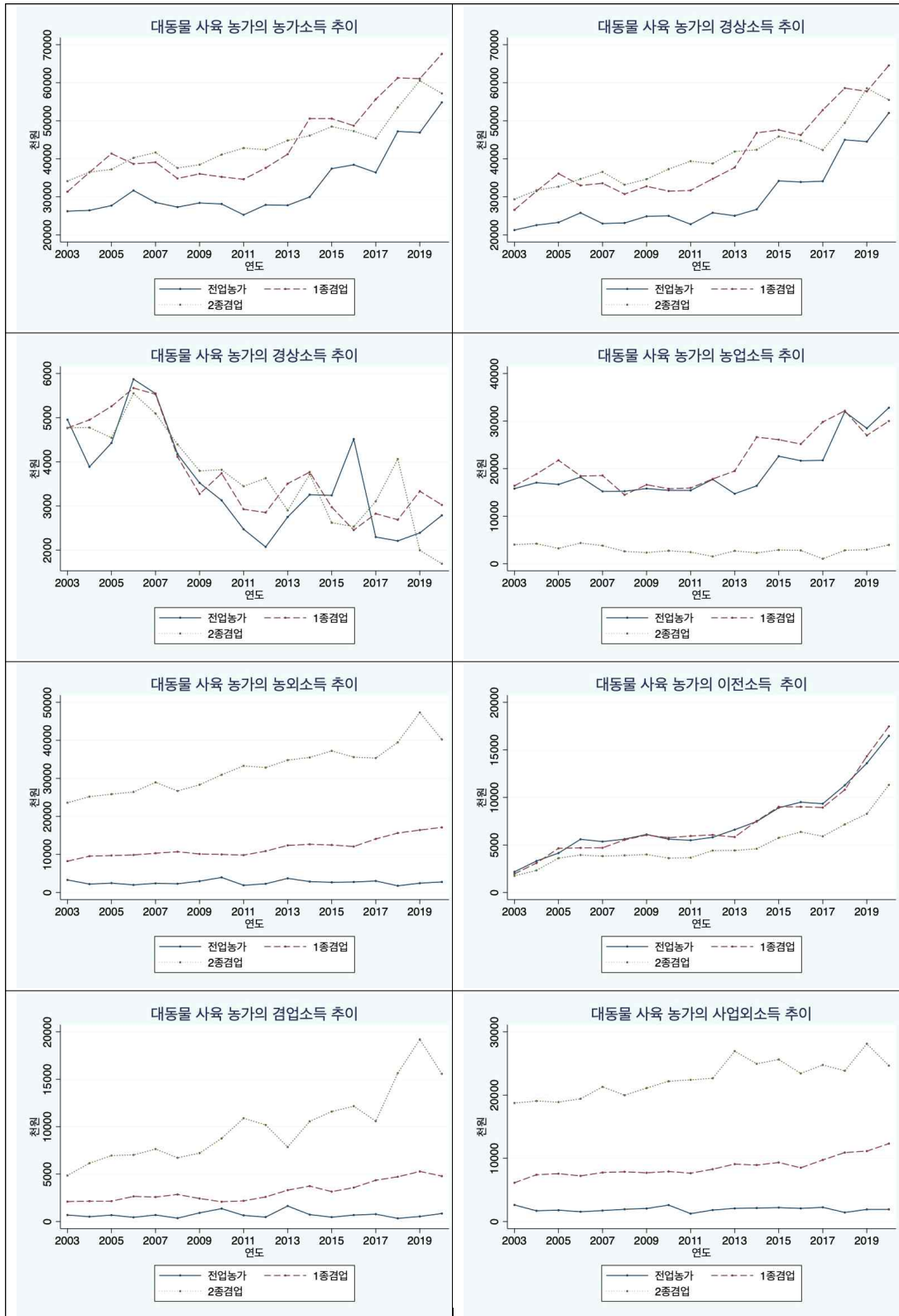
-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전업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2,632만 원에서 2006년 3,168만 원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11년도에는 2,52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2년도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농가소득은 5,483만 원이었음.
- － 2010년 이후 농가소득의 증가는 경상소득이 주도하였음. 경상소득은 2011년 2,280만 원이었으나, 2020년 5,205만 원으로 최근 10년간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음. 농가소득 중 경상소득의 비중은 2003년 81.1%에서 2020년 94.9%로 크게 확대되었음.
- － 반면, 비경상소득은 2003년 496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18.9%를 차지했으나 2020년 279만 원으로 절반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비중은

4) 전업/겸업은 전업농가, 1종 겸업농가, 2종 겸업농가로 구분함. 전업농가는 연간 30일 이상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를 의미함. 1종겸업 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이며, 2종겸업 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적은 농가임.

5.1%로 크게 축소되었음.

- 1종 겸업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은 2003년 3,135만 원에서 2014년 5,05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이후 잠시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2020년 6,758만 원으로 확대됨.
 - － 2003년 84.8%였던 1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20년 95.5%로 확대되었음. 비경상소득은 15.2%에서 4.5%로 크게 감소함.
- 2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414만 원에서 2019년 6,05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5,719만 원으로 다소 줄었음.
 - － 2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03년 86.0%에서 2020년 97.0%로 크게 늘어났음. 이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에 기인함.
-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이 높은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임. 2005년, 2014~2020년 동안에는 1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이 2종 겸업농가보다 높았음.

그림 3-12. 전업/겸업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과 경상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3-3. 전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6,231	21,275	15,793	3,309	2,173	4,956	19,102
2004	26,458	22,570	17,053	2,207	3,310	3,888	19,260
2005	27,709	23,283	16,668	2,468	4,147	4,427	19,136
2006	31,677	25,806	18,216	1,996	5,593	5,871	20,212
2007	28,528	22,982	15,211	2,417	5,353	5,547	17,629
2008	27,315	23,139	15,234	2,295	5,610	4,176	17,529
2009	28,407	24,885	15,804	2,975	6,106	3,523	18,779
2010	28,129	25,002	15,429	3,963	5,610	3,127	19,392
2011	25,276	22,802	15,419	1,895	5,489	2,474	17,313
2012	27,900	25,828	17,734	2,288	5,806	2,072	20,022
2013	27,786	25,035	14,716	3,715	6,604	2,751	18,431
2014	29,975	26,720	16,380	2,873	7,467	3,255	19,253
2015	37,423	34,183	22,606	2,668	8,908	3,241	25,275
2016	38,436	33,921	21,659	2,762	9,500	4,515	24,421
2017	36,403	34,107	21,742	3,029	9,336	2,296	24,771
2018	47,214	45,005	31,965	1,764	11,275	2,210	33,729
2019	46,906	44,515	28,473	2,450	13,593	2,391	30,923
2020	54,833	52,046	32,804	2,768	16,474	2,787	35,57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4. 전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잡수입 (N)
2003	32,605	16,812	684	2,625	21,239	11,262	104
2004	36,851	19,798	510	1,697	25,691	11,007	153
2005	35,676	19,008	676	1,791	22,531	12,930	216
2006	38,669	20,453	445	1,551	23,658	13,990	1,021
2007	36,620	21,408	685	1,732	26,078	9,800	741
2008	38,903	23,668	356	1,939	25,137	13,247	519
2009	41,316	25,513	914	2,061	24,712	16,354	250
2010	39,491	24,062	1,362	2,601	23,148	15,232	1,111
2011	46,906	31,488	645	1,250	28,759	17,105	1,042
2012	46,544	28,811	470	1,818	28,329	17,675	540
2013	49,462	34,745	1,635	2,080	30,197	19,183	81
2014	54,609	38,229	732	2,142	27,818	26,572	219
2015	61,522	38,916	461	2,207	29,671	31,552	299
2016	65,517	43,858	681	2,081	28,546	35,904	1,067
2017	62,925	41,183	776	2,253	28,894	31,220	2,810
2018	86,163	54,198	334	1,430	34,932	48,707	2,524
2019	97,196	68,723	533	1,917	28,598	67,580	1,018
2020	100,242	67,438	845	1,923	35,864	62,716	1,66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5. 1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1,351	26,584	16,387	8,235	1,962	4,767	24,622
2004	36,453	31,504	18,858	9,549	3,097	4,950	28,407
2005	41,375	36,118	21,754	9,717	4,647	5,256	31,471
2006	38,670	32,999	18,445	9,861	4,693	5,671	28,306
2007	39,104	33,572	18,543	10,331	4,698	5,532	28,874
2008	34,846	30,733	14,481	10,721	5,532	4,112	25,202
2009	36,052	32,779	16,604	10,131	6,044	3,273	26,735
2010	35,255	31,516	15,760	9,999	5,757	3,739	25,759
2011	34,618	31,693	15,924	9,827	5,941	2,925	25,751
2012	37,600	34,747	17,816	10,875	6,057	2,852	28,690
2013	41,225	37,718	19,498	12,390	5,830	3,507	31,887
2014	50,578	46,810	26,616	12,669	7,525	3,768	39,285
2015	50,574	47,599	26,089	12,499	9,011	2,975	38,588
2016	48,714	46,259	25,163	12,081	9,016	2,454	37,244
2017	55,652	52,826	29,807	14,090	8,929	2,826	43,897
2018	61,275	58,586	32,152	15,628	10,806	2,688	47,780
2019	61,076	57,742	26,992	16,420	14,330	3,334	43,412
2020	67,577	64,553	29,989	17,106	17,457	3,024	47,09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6. 1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겸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접수입 (N)
2003	37,092	20,704	2,101	6,134	27,670	9,291	131
2004	42,304	23,445	2,149	7,399	30,711	11,520	73
2005	47,913	26,159	2,150	7,567	32,946	14,804	164
2006	42,751	24,306	2,646	7,215	30,775	10,477	1,499
2007	45,661	27,118	2,582	7,749	30,247	14,450	964
2008	46,271	31,790	2,855	7,866	30,551	12,989	2,730
2009	43,194	26,590	2,427	7,704	29,395	13,425	373
2010	44,229	28,469	2,089	7,910	31,857	11,325	1,047
2011	45,761	29,837	2,180	7,647	35,220	9,131	1,411
2012	50,946	33,130	2,595	8,280	36,306	13,543	1,097
2013	54,766	35,269	3,305	9,084	31,247	23,104	415
2014	71,285	44,669	3,737	8,933	38,120	32,840	325
2015	67,060	40,971	3,156	9,343	32,925	32,419	1,716
2016	63,462	38,299	3,578	8,502	31,630	30,291	1,541
2017	72,737	42,930	4,351	9,739	39,770	30,072	2,895
2018	78,843	46,691	4,716	10,913	45,158	31,956	1,730
2019	84,444	57,452	5,284	11,135	39,565	43,508	1,371
2020	87,026	57,037	4,787	12,319	37,255	47,930	1,84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7. 2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4,136	29,369	4,021	23,599	1,749	4,767	27,620
2004	36,518	31,741	4,212	25,203	2,326	4,777	29,415
2005	37,233	32,687	3,230	25,847	3,610	4,545	29,077
2006	40,264	34,716	4,345	26,427	3,943	5,549	30,773
2007	41,671	36,577	3,805	28,947	3,824	5,094	32,752
2008	37,588	33,192	2,599	26,692	3,900	4,396	29,291
2009	38,455	34,658	2,337	28,324	3,997	3,797	30,661
2010	41,113	37,294	2,730	30,948	3,616	3,819	33,679
2011	42,834	39,388	2,430	33,298	3,660	3,446	35,728
2012	42,399	38,769	1,526	32,835	4,408	3,630	34,361
2013	44,824	41,924	2,703	34,799	4,422	2,900	37,502
2014	46,103	42,388	2,283	35,507	4,598	3,714	37,790
2015	48,484	45,863	2,892	37,221	5,750	2,621	40,113
2016	47,280	44,748	2,795	35,586	6,367	2,532	38,381
2017	45,392	42,288	1,032	35,347	5,910	3,104	36,378
2018	53,522	49,459	2,809	39,487	7,163	4,063	42,296
2019	60,537	58,541	2,957	47,308	8,276	1,996	50,265
2020	57,190	55,498	3,952	40,235	11,311	1,693	44,18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8. 2종 겸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겸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9,068	5,046	4,852	18,747	7,357	1,659	51
2004	10,484	6,272	6,148	19,055	9,462	905	116
2005	10,090	6,860	6,957	18,890	8,981	1,080	30
2006	12,228	7,882	7,019	19,408	10,018	1,595	614
2007	11,672	7,867	7,645	21,302	9,326	1,731	616
2008	9,756	7,157	6,718	19,975	8,208	1,364	185
2009	9,949	7,613	7,216	21,108	7,899	1,951	100
2010	11,697	8,967	8,762	22,186	9,029	2,236	433
2011	12,820	10,390	10,892	22,406	10,130	2,085	605
2012	12,352	10,826	10,183	22,652	10,200	2,068	84
2013	10,988	8,286	7,858	26,941	8,384	2,552	53
2014	13,069	10,785	10,560	24,947	10,843	2,205	21
2015	11,317	8,426	11,597	25,624	9,475	1,743	100
2016	12,885	10,090	12,163	23,423	9,118	3,409	357
2017	10,312	9,280	10,588	24,759	7,745	1,926	640
2018	14,664	11,855	15,646	23,842	8,954	5,346	364
2019	15,991	13,034	19,201	28,107	9,806	5,876	309
2020	14,872	10,921	15,576	24,659	10,842	3,651	37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3) 주/부업별 대동물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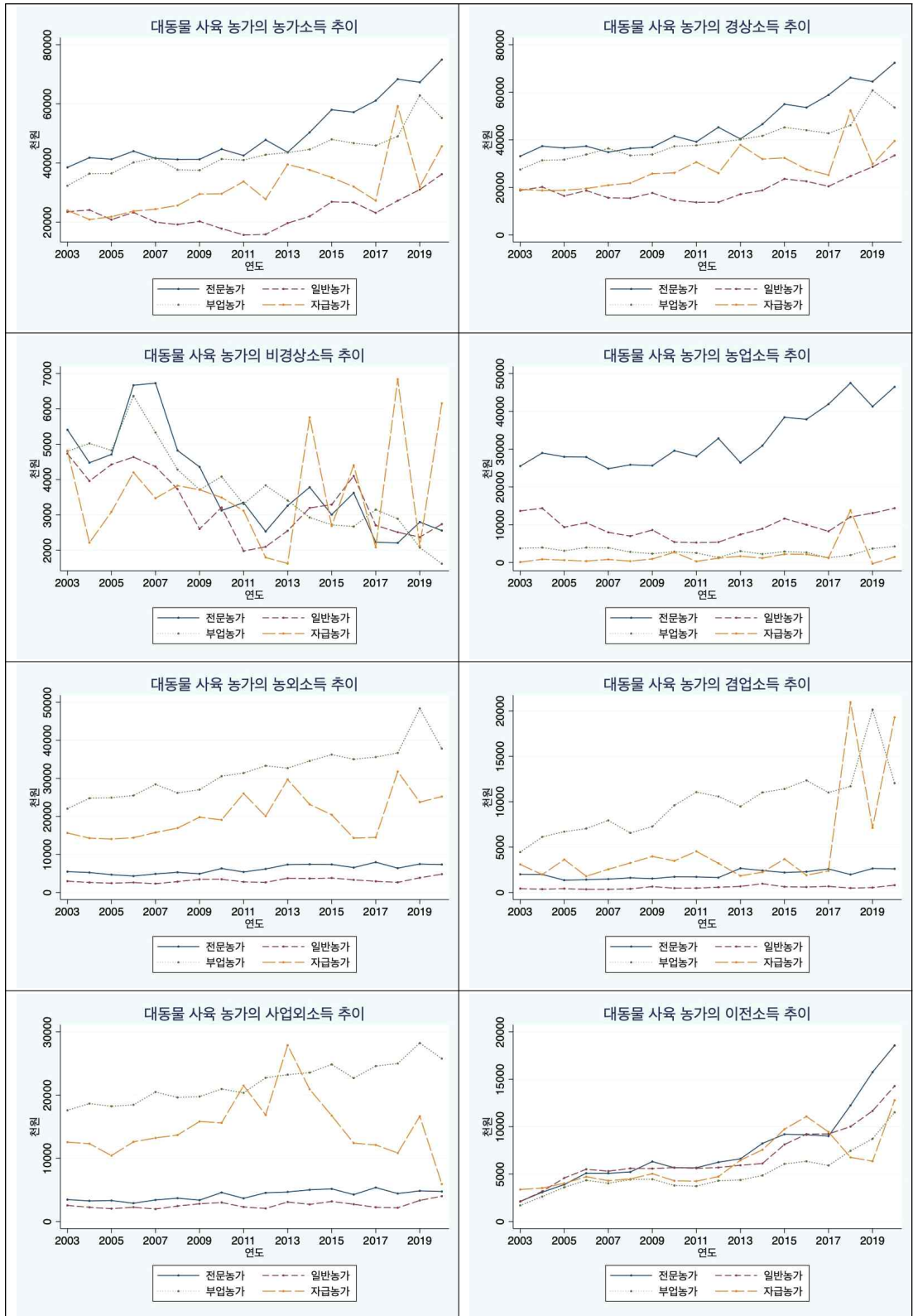
-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전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850만 원에서 2006년 4,399만 원까지 증가하고, 이후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2009년도에는 4,125만 원으로 줄었음. 2013년도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0년 농가소득은 7,494만 원으로 분석됨.
- 전문농가의 농가소득 증가 역시 경상소득이 주도하였음. 경상소득은 2009년 3,689만 원이었으나, 2020년 7,239만 원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음. 농가소득 중 경상소득의 비중은 2003년 86.0%에서 2020년 96.6%로 확대됨.
- 이와 달리, 비경상소득은 2003년 5,41만 원에서 2007년 673만 원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0년에 256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4.0%에서 2020년 3.4%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일반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은 2003년 2,348만 원에서 2011년 1,567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음.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2020년 농가소득은 3,620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전문농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2003년 79.8%였던 일반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20년 92.4%로 확대되었음.
- 전반적으로 부업농가의 농가소득이 일반농가의 경우보다 높았음. 부업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231만 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9년 6,289만 원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2020년에는 많이 하락해서 5,521만 원을 기록하였음.
- 부업농가의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03년 85.1%에서 2020년

5) 농가의 주/부업별 구분은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로 이루어짐. 전문농가는 경지 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 원 이상 농가를, 일반농가는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 원 미만 농가를 의미함. 부업농가는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 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이며, 자급농가는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지칭함.

97.1%까지 꾸준히 늘어났음. 반면, 비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480만 원 (14.9%)에서 162만 원(2.9%)로 크게 줄었음.

- 자급농가의 경우, 앞선 농가들에 비해 경상소득의 비중이 낮고, 비경상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특히 농외소득의 비중이 높음.
- － 자급농가이기는 하지만 2005년도 이후 일반농가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함.

그림 3-13. 주/부업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과 경상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3-9. 전문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8,504	33,097	25,503	5,474	2,120	5,408	30,977
2004	41,801	37,324	28,980	5,254	3,091	4,477	34,233
2005	41,263	36,553	27,969	4,683	3,901	4,710	32,652
2006	43,990	37,322	27,898	4,322	5,103	6,668	32,219
2007	41,527	34,801	24,824	4,886	5,091	6,726	29,710
2008	41,215	36,391	25,856	5,313	5,222	4,823	31,169
2009	41,245	36,887	25,649	4,916	6,322	4,358	30,565
2010	44,692	41,568	29,585	6,314	5,669	3,124	35,899
2011	42,513	39,166	28,104	5,394	5,667	3,347	33,498
2012	47,814	45,282	32,843	6,184	6,255	2,532	39,027
2013	43,625	40,364	26,417	7,340	6,607	3,261	33,757
2014	50,367	46,584	30,913	7,434	8,237	3,783	38,347
2015	58,000	54,993	38,421	7,371	9,200	3,007	45,792
2016	57,198	53,575	37,873	6,551	9,151	3,623	44,424
2017	61,097	58,868	41,895	7,969	9,005	2,229	49,863
2018	68,348	66,140	47,494	6,400	12,246	2,208	53,894
2019	67,299	64,501	41,260	7,489	15,752	2,798	48,749
2020	74,944	72,388	46,470	7,359	18,559	2,556	53,82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0. 전문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52,517	27,015	2,007	3,468	40,911	11,359	247
2004	60,691	31,711	1,988	3,265	48,336	12,184	171
2005	61,374	33,405	1,360	3,322	40,219	20,820	335
2006	61,572	33,674	1,421	2,901	41,504	18,455	1,614
2007	60,642	35,818	1,472	3,414	44,412	15,035	1,195
2008	71,476	45,620	1,619	3,694	44,844	24,674	1,958
2009	68,270	42,621	1,533	3,383	43,574	24,293	404
2010	74,302	44,717	1,729	4,586	47,197	25,567	1,538
2011	81,954	53,850	1,718	3,676	53,932	26,209	1,813
2012	84,987	52,144	1,640	4,544	53,282	30,386	1,319
2013	84,166	57,749	2,664	4,676	51,011	32,806	350
2014	95,500	64,587	2,420	5,013	50,576	44,462	462
2015	105,766	67,345	2,203	5,168	52,390	51,972	1,404
2016	111,204	73,331	2,288	4,263	50,896	58,385	1,923
2017	114,991	73,096	2,592	5,377	56,635	53,249	5,106
2018	120,984	73,490	1,978	4,421	58,643	58,390	3,952
2019	139,723	98,463	2,643	4,847	48,866	88,974	1,884
2020	138,525	92,055	2,611	4,748	56,498	79,369	2,65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1. 일반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3,479	18,747	13,659	2,976	2,113	4,732	16,635
2004	24,120	20,160	14,360	2,624	3,175	3,960	16,985
2005	20,833	16,406	9,359	2,457	4,590	4,427	11,817
2006	23,282	18,646	10,509	2,622	5,514	4,636	13,131
2007	19,979	15,612	7,984	2,321	5,307	4,367	10,305
2008	19,189	15,460	7,002	2,854	5,604	3,729	9,856
2009	20,253	17,650	8,609	3,458	5,583	2,603	12,067
2010	17,815	14,605	5,425	3,488	5,692	3,210	8,913
2011	15,672	13,692	5,294	2,786	5,612	1,979	8,080
2012	15,854	13,756	5,403	2,657	5,696	2,097	8,060
2013	19,670	17,118	7,428	3,758	5,933	2,552	11,186
2014	21,956	18,757	8,962	3,676	6,119	3,199	12,638
2015	26,860	23,569	11,633	3,816	8,120	3,292	15,449
2016	26,638	22,538	9,994	3,331	9,213	4,100	13,325
2017	23,139	20,435	8,262	2,937	9,235	2,705	11,199
2018	27,246	24,736	12,063	2,664	10,010	2,509	14,727
2019	30,995	28,622	13,078	3,880	11,664	2,372	16,958
2020	36,202	33,462	14,363	4,819	14,281	2,740	19,18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2. 일반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28,574	14,915	428	2,547	16,898	11,616	61
2004	31,659	17,298	368	2,256	20,212	11,313	133
2005	18,623	9,263	427	2,030	11,356	7,166	101
2006	20,571	10,061	348	2,274	10,670	9,214	687
2007	18,286	10,302	350	1,971	10,611	7,265	411
2008	16,903	9,901	402	2,452	12,415	4,186	302
2009	20,318	11,709	652	2,806	11,210	8,922	186
2010	16,840	11,415	477	3,011	10,183	5,838	818
2011	17,136	11,842	481	2,305	11,146	5,371	620
2012	17,155	11,752	583	2,074	12,135	4,829	191
2013	22,281	14,854	669	3,089	12,892	9,357	33
2014	24,783	15,821	968	2,708	11,577	13,168	38
2015	26,929	15,296	633	3,182	12,219	14,505	205
2016	25,217	15,223	598	2,733	10,849	13,765	603
2017	22,527	14,264	680	2,257	9,946	11,680	900
2018	37,786	25,723	486	2,178	11,557	25,857	372
2019	40,804	27,725	541	3,338	10,760	29,861	183
2020	45,445	31,082	807	4,012	9,986	34,973	48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3. 부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2,308	27,507	3,768	22,042	1,698	4,800	25,810
2004	36,398	31,377	3,970	24,777	2,630	5,021	28,747
2005	36,481	31,654	3,114	24,934	3,607	4,827	28,047
2006	40,186	33,820	3,968	25,502	4,350	6,366	29,470
2007	41,705	36,374	3,911	28,427	4,036	5,331	32,338
2008	37,703	33,421	2,803	26,187	4,431	4,283	28,990
2009	37,540	33,827	2,333	27,032	4,462	3,713	29,365
2010	41,336	37,254	2,893	30,559	3,802	4,082	33,452
2011	41,003	37,697	2,554	31,410	3,732	3,306	33,964
2012	42,792	38,955	1,336	33,316	4,303	3,836	34,652
2013	43,527	40,119	3,039	32,699	4,381	3,409	35,738
2014	44,600	41,672	2,239	34,580	4,854	2,927	36,818
2015	47,969	45,250	2,910	36,264	6,076	2,719	39,174
2016	46,722	44,050	2,672	35,029	6,348	2,672	37,702
2017	45,898	42,748	1,241	35,600	5,908	3,149	36,841
2018	49,015	46,125	1,978	36,696	7,452	2,890	38,674
2019	62,893	60,815	3,708	48,386	8,722	2,077	52,093
2020	55,210	53,590	4,266	37,813	11,512	1,620	42,07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4. 부업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9,485	5,717	4,450	17,591	7,693	1,733	59
2004	10,949	6,980	6,122	18,655	9,924	907	118
2005	10,369	7,255	6,706	18,227	9,160	1,177	31
2006	12,584	8,616	7,044	18,458	10,268	1,648	668
2007	12,479	8,568	7,945	20,482	9,974	1,846	659
2008	10,548	7,745	6,561	19,626	8,996	1,348	204
2009	10,942	8,609	7,274	19,758	8,579	2,291	71
2010	13,008	10,115	9,599	20,961	10,160	2,340	509
2011	14,012	11,458	11,058	20,352	11,258	2,083	671
2012	12,938	11,601	10,578	22,738	10,922	1,925	90
2013	11,834	8,795	9,478	23,221	9,407	2,366	60
2014	13,876	11,637	11,028	23,551	11,894	1,958	23
2015	11,890	8,980	11,413	24,851	10,045	1,738	107
2016	13,122	10,449	12,350	22,679	9,703	3,038	381
2017	10,919	9,678	11,012	24,587	8,537	1,668	714
2018	14,222	12,244	11,703	24,993	10,094	3,717	411
2019	17,558	13,851	20,154	28,231	11,076	6,132	351
2020	14,695	10,428	12,044	25,768	11,642	2,642	41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5. 자급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3,964	19,145	127	15,641	3,377	4,819	15,768
2004	20,892	18,678	863	14,286	3,529	2,214	15,149
2005	21,824	18,734	644	14,058	4,032	3,090	14,702
2006	23,713	19,511	390	14,397	4,724	4,201	14,787
2007	24,381	20,910	827	15,776	4,307	3,471	16,603
2008	25,639	21,814	384	16,939	4,490	3,826	17,323
2009	29,500	25,786	949	19,796	5,042	3,714	20,745
2010	29,587	26,095	2,712	19,090	4,294	3,492	21,801
2011	33,721	30,601	317	26,028	4,256	3,120	26,345
2012	27,756	25,959	1,161	20,064	4,734	1,797	21,226
2013	39,489	37,865	1,686	29,716	6,463	1,624	31,402
2014	37,652	31,891	1,173	23,153	7,564	5,761	24,326
2015	35,081	32,394	2,227	20,438	9,729	2,686	22,665
2016	31,981	27,576	2,188	14,307	11,080	4,406	16,496
2017	27,271	25,186	1,249	14,492	9,445	2,085	15,741
2018	59,214	52,376	13,816	31,793	6,767	6,838	45,609
2019	31,934	29,816	(304)	23,762	6,358	2,118	23,458
2020	45,643	39,487	1,479	25,217	12,792	6,156	26,69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6. 자급농가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1,936	1,809	3,093	12,548	890	1,041	4
2004	2,387	1,524	1,977	12,309	1,515	871	1
2005	2,392	1,748	3,633	10,425	1,561	830	1
2006	2,399	2,009	1,792	12,605	1,508	803	87
2007	2,515	1,689	2,558	13,219	1,581	865	69
2008	3,081	2,697	3,257	13,682	1,687	1,368	25
2009	3,255	2,306	3,976	15,820	1,725	1,329	202
2010	5,851	3,139	3,490	15,600	1,914	3,887	50
2011	3,701	3,384	4,535	21,493	1,928	1,714	58
2012	5,228	4,067	3,214	16,851	2,477	2,740	11
2013	8,298	6,612	1,837	27,879	2,437	5,861	0
2014	5,683	4,510	2,242	20,911	2,139	3,544	0
2015	8,266	6,040	3,687	16,752	2,451	5,803	13
2016	10,512	8,323	1,908	12,400	2,463	8,003	45
2017	9,000	7,751	2,379	12,113	2,149	6,788	63
2018	34,774	20,958	20,955	10,838	2,151	32,567	56
2019	10,929	11,232	7,120	16,642	1,706	9,223	-
2020	13,525	12,046	19,296	5,920	2,120	11,351	5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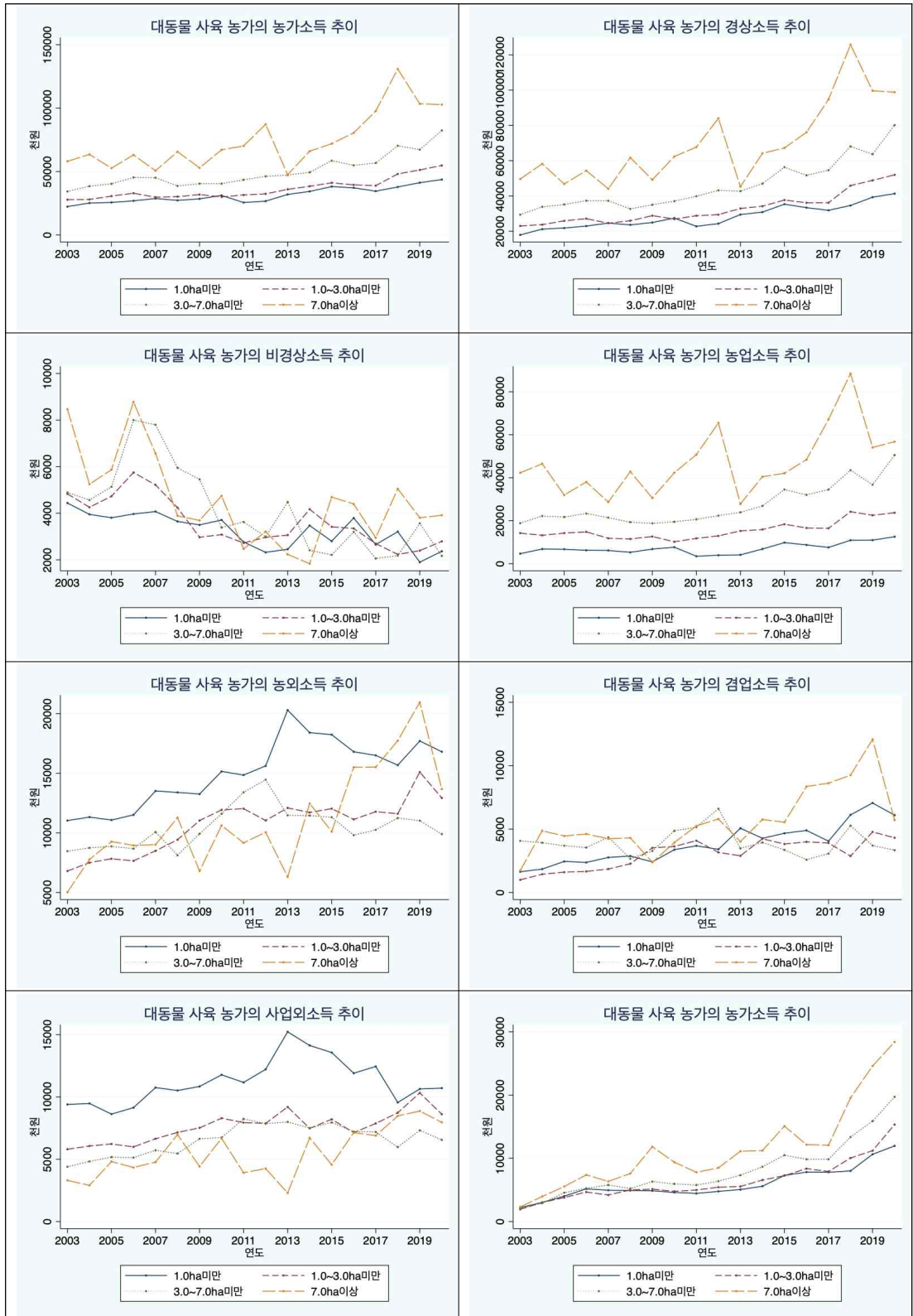
(3) 경지면적별 대동물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⁶⁾

-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경지면적이 넓은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남.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2,234만 원에서 2010년 3,115만 원까지 증가하고, 이후 약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0년도에는 4,368만 원으로 분석되었음.
 - 이들의 농가소득 증가 또한 경상소득의 증가로 인한 것임. 경상소득은 2003년 1,790만 원이었으나, 2020년 4,131만 원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규모가 되었음. 농가소득 중 경상소득의 비중이 2003년 80.1%에서 2020년 94.6%로 높아짐. 경상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전소득의 비중은 크게 확대됨.
 - 비경상소득은 2003년 444만 원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9년 190만 원, 2020년 237만 원으로 분석됨. 이 기간동안 농가소득 대비 비중은 19.9%에서 5.4%로 매우 낮아졌음.
- 경지면적이 1.0~3.0ha 미만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2,781만 원에서 2006년 3,288만 원으로 늘었다가 2018년 4,810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2020년 5,477만 원으로 분석됨.
 - 2003년 2,298만 원이었던 경상소득은 2020년 5,198만 원으로 2배 이상 이 된 반면, 2003년 483만 원인 비경상소득은 2020년 279만 원으로 많이 줄었음
 - 이 기간동안 경상소득 비중은 82.6%에서 94.9%로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 비중은 17.4%에서 5.1%로 줄어들음.
- 경지면적이 3.0~7.0ha 미만인 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430만 원에서 2006년 4,529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8,235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6) 대동물 사육두수로 농가규모를 구분하면 이상적이거나, 최근 농가경제자료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경지면적을 이용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었음. 경지면적 구분은 1.0ha미만, 1.0~3.0ha미만, 3.0~7.0ha미만, 7.0ha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03년 85.7%에서 2020년 97.4%까지 늘어났음. 반면, 비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489만 원(14.6%)에서 217만 원(2.6%)로 크게 줄었음.
-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농가소득이 높았음. 경지면적이 7.0ha이상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이 다른 경지면적과 비교해 높은 경향을 보임. 2020년 농가소득은 1억 274만 원이었으며, 경상소득의 비중은 96.2%임.

그림 3-14. 경지면적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3-17. 경지면적(1.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2,338	17,899	4,674	11,027	2,198	4,439	15,701
2004	25,137	21,186	6,838	11,323	3,025	3,950	18,161
2005	25,613	21,807	6,722	11,073	4,012	3,806	17,794
2006	26,879	22,912	6,234	11,510	5,168	3,967	17,744
2007	28,688	24,615	6,159	13,512	4,944	4,073	19,671
2008	27,245	23,598	5,295	13,390	4,914	3,646	18,684
2009	28,424	24,925	6,801	13,253	4,871	3,499	20,054
2010	31,154	27,444	7,693	15,153	4,598	3,709	22,846
2011	25,529	22,764	3,474	14,845	4,445	2,765	18,319
2012	26,638	24,317	3,928	15,616	4,772	2,322	19,545
2013	31,913	29,458	4,107	20,292	5,060	2,454	24,399
2014	34,296	30,826	6,844	18,404	5,578	3,470	25,248
2015	38,141	35,341	9,813	18,232	7,295	2,800	28,046
2016	37,156	33,360	8,741	16,801	7,817	3,796	25,543
2017	34,507	31,853	7,572	16,493	7,788	2,654	24,065
2018	37,803	34,595	10,909	15,676	8,011	3,208	26,584
2019	41,194	39,295	10,962	17,703	10,630	1,899	28,665
2020	43,676	41,309	12,549	16,804	11,956	2,367	29,35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8. 경지면적(1.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13,912	9,238	1,634	9,393	6,387	7,487	38
2004	18,390	11,552	1,846	9,477	8,520	9,816	54
2005	18,224	11,502	2,451	8,621	7,535	10,641	48
2006	16,554	10,321	2,371	9,139	6,651	9,620	283
2007	17,246	11,087	2,764	10,748	7,561	9,500	185
2008	19,125	13,831	2,875	10,515	7,943	10,138	1,044
2009	19,361	12,559	2,415	10,838	7,649	11,616	95
2010	21,483	13,790	3,377	11,775	8,137	12,857	489
2011	16,203	12,728	3,683	11,162	8,724	7,162	317
2012	13,765	9,837	3,402	12,214	9,367	4,286	112
2013	19,277	15,170	5,068	15,224	8,658	10,582	36
2014	28,602	21,758	4,275	14,130	10,768	17,789	45
2015	27,436	17,623	4,670	13,562	9,626	17,704	106
2016	31,913	23,171	4,898	11,904	9,253	22,429	232
2017	27,788	20,216	4,049	12,444	7,763	19,685	340
2018	34,899	23,991	6,121	9,555	10,689	23,987	223
2019	46,294	35,332	7,062	10,641	9,047	36,976	271
2020	43,965	31,415	6,098	10,705	11,371	32,244	35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19. 경지면적(1.0~3.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7,808	22,975	14,250	6,799	1,926	4,833	21,049
2004	27,985	23,728	13,207	7,504	3,017	4,257	20,711
2005	30,600	25,872	14,249	7,831	3,793	4,727	22,080
2006	32,879	27,129	14,811	7,652	4,667	5,750	22,462
2007	29,734	24,516	11,828	8,493	4,195	5,219	20,321
2008	30,172	25,935	11,518	9,423	4,994	4,237	20,941
2009	31,786	28,817	12,657	11,032	5,128	2,968	23,689
2010	29,970	26,887	10,192	11,927	4,769	3,082	22,119
2011	31,512	28,789	11,774	12,029	4,986	2,723	23,803
2012	32,372	29,404	12,932	11,038	5,434	2,968	23,970
2013	35,953	32,892	15,257	12,091	5,544	3,061	27,348
2014	38,348	34,180	15,906	11,711	6,562	4,169	27,617
2015	41,096	37,680	18,390	12,030	7,259	3,417	30,420
2016	39,470	36,124	16,625	11,132	8,368	3,346	27,756
2017	38,850	36,154	16,468	11,774	7,911	2,697	28,242
2018	48,098	45,866	24,214	11,606	10,046	2,233	35,819
2019	51,229	48,834	22,530	15,099	11,205	2,396	37,629
2020	54,766	51,975	23,716	12,927	15,332	2,791	36,64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0. 경지면적(1.0~3.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잡수입 (N)
2003	27,507	13,257	999	5,801	18,437	9,002	68
2004	27,705	14,498	1,443	6,061	20,890	6,699	116
2005	30,313	16,065	1,605	6,226	20,886	9,228	199
2006	31,146	16,336	1,664	5,988	21,034	9,214	899
2007	28,370	16,543	1,850	6,643	21,399	6,434	538
2008	29,980	18,462	2,268	7,156	22,140	7,328	513
2009	31,346	18,689	3,518	7,514	21,888	9,194	264
2010	28,769	18,577	3,633	8,294	21,428	6,511	830
2011	34,816	23,043	4,089	7,940	24,165	9,665	986
2012	40,822	27,890	3,163	7,874	24,941	15,344	538
2013	39,390	24,134	2,895	9,196	26,791	12,341	259
2014	45,119	29,213	4,236	7,474	26,949	18,052	119
2015	51,275	32,885	3,823	8,207	26,979	24,032	264
2016	49,649	33,024	3,994	7,138	23,998	24,677	974
2017	48,668	32,200	3,903	7,871	27,915	17,699	3,053
2018	65,656	41,443	2,874	8,732	29,771	34,704	1,181
2019	72,646	50,116	4,776	10,323	27,690	43,997	958
2020	74,043	50,326	4,315	8,612	32,241	40,451	1,35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1. 경지면적(3.0~7.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4,299	29,406	18,879	8,467	2,060	4,893	27,346
2004	38,397	33,829	22,188	8,744	2,897	4,568	30,932
2005	40,300	35,163	21,740	8,864	4,558	5,136	30,605
2006	45,291	37,294	23,360	8,676	5,257	7,998	32,037
2007	45,058	37,258	21,412	10,070	5,775	7,800	31,483
2008	38,621	32,672	19,326	8,125	5,221	5,950	27,450
2009	40,466	35,012	18,767	9,922	6,324	5,454	28,688
2010	40,443	37,058	19,505	11,598	5,954	3,385	31,104
2011	43,439	39,813	20,648	13,397	5,768	3,626	34,045
2012	46,181	43,189	22,357	14,453	6,378	2,992	36,810
2013	47,199	42,715	23,910	11,475	7,330	4,483	35,385
2014	49,389	46,980	26,871	11,448	8,661	2,409	38,319
2015	58,538	56,327	34,515	11,310	10,502	2,211	45,825
2016	54,869	51,672	32,028	9,806	9,838	3,197	41,834
2017	56,669	54,610	34,507	10,256	9,848	2,059	44,762
2018	70,290	68,111	43,505	11,246	13,360	2,179	54,751
2019	67,230	63,665	36,769	11,021	15,875	3,564	47,790
2020	82,345	80,179	50,557	9,893	19,729	2,167	60,45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2. 경지면적(3.0~7.0ha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39,904	21,025	4,072	4,395	31,054	8,563	287
2004	48,158	25,970	3,923	4,821	37,176	10,837	144
2005	45,868	24,127	3,693	5,171	34,477	11,186	205
2006	51,308	27,948	3,544	5,132	34,538	14,979	1,790
2007	49,427	28,014	4,355	5,716	37,426	10,397	1,604
2008	54,177	34,851	2,668	5,457	38,831	14,589	756
2009	58,326	39,559	3,278	6,643	39,760	18,112	453
2010	56,862	37,357	4,861	6,737	42,031	13,198	1,633
2011	58,562	37,914	5,159	8,238	48,887	7,770	1,904
2012	64,910	42,553	6,603	7,851	48,134	15,878	898
2013	83,139	59,229	3,482	7,994	49,128	33,915	96
2014	83,353	56,483	3,946	7,502	46,427	36,190	736
2015	86,556	52,041	3,360	7,950	49,152	34,932	2,472
2016	80,523	48,496	2,588	7,218	48,670	29,899	1,955
2017	88,208	53,702	3,067	7,189	48,660	35,514	4,034
2018	111,150	67,645	5,273	5,973	59,891	44,824	6,434
2019	108,455	71,686	3,704	7,317	42,473	64,569	1,413
2020	134,685	84,128	3,339	6,553	52,965	79,233	2,48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3. 경지면적(7.0ha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58,088	49,620	42,292	5,025	2,303	8,468	47,317
2004	63,476	58,229	46,500	7,769	3,960	5,247	54,269
2005	52,650	46,782	31,972	9,268	5,541	5,869	41,241
2006	63,130	54,349	38,029	8,952	7,369	8,781	46,981
2007	50,631	44,063	28,701	9,013	6,349	6,568	37,714
2008	65,611	61,720	42,853	11,276	7,591	3,891	54,129
2009	52,870	49,180	30,546	6,802	11,832	3,690	37,348
2010	67,120	62,375	42,372	10,618	9,385	4,745	52,990
2011	70,170	67,701	50,753	9,163	7,785	2,469	59,916
2012	87,238	84,024	65,484	10,048	8,493	3,213	75,532
2013	47,486	45,252	27,832	6,308	11,113	2,233	34,139
2014	66,011	64,178	40,484	12,467	11,228	1,833	52,951
2015	71,958	67,263	42,078	10,107	15,079	4,695	52,184
2016	80,495	76,098	48,433	15,499	12,166	4,397	63,932
2017	97,678	94,730	67,152	15,515	12,063	2,948	82,667
2018	130,824	125,775	88,495	17,728	19,553	5,049	106,223
2019	103,435	99,629	54,087	20,946	24,595	3,806	75,034
2020	102,735	98,819	56,757	13,669	28,393	3,916	70,42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4. 경지면적(7.0ha 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점업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87,329	45,037	1,722	3,304	67,892	19,387	50
2004	96,411	49,911	4,868	2,901	82,586	12,976	849
2005	67,623	35,650	4,457	4,812	51,643	15,561	419
2006	82,703	44,674	4,614	4,338	67,685	11,656	3,361
2007	77,934	49,233	4,237	4,776	64,149	11,221	2,564
2008	92,868	50,016	4,307	6,970	76,347	15,230	1,292
2009	77,104	46,558	2,384	4,418	61,819	14,985	300
2010	94,724	52,352	3,939	6,679	72,778	18,654	3,292
2011	153,290	102,537	5,254	3,909	82,321	67,157	3,812
2012	132,384	66,900	5,796	4,251	83,825	45,644	2,915
2013	100,301	72,469	4,014	2,294	80,392	19,539	370
2014	110,746	70,262	5,754	6,713	83,475	26,913	358
2015	125,214	83,136	5,544	4,562	84,154	39,574	1,486
2016	128,397	79,964	8,360	7,139	72,905	51,339	4,152
2017	158,941	91,789	8,620	6,894	93,458	57,397	8,086
2018	216,303	127,808	9,254	8,473	106,119	104,212	5,972
2019	205,247	151,160	12,078	8,869	88,001	113,540	3,707
2020	179,247	122,490	5,711	7,958	79,915	93,499	5,83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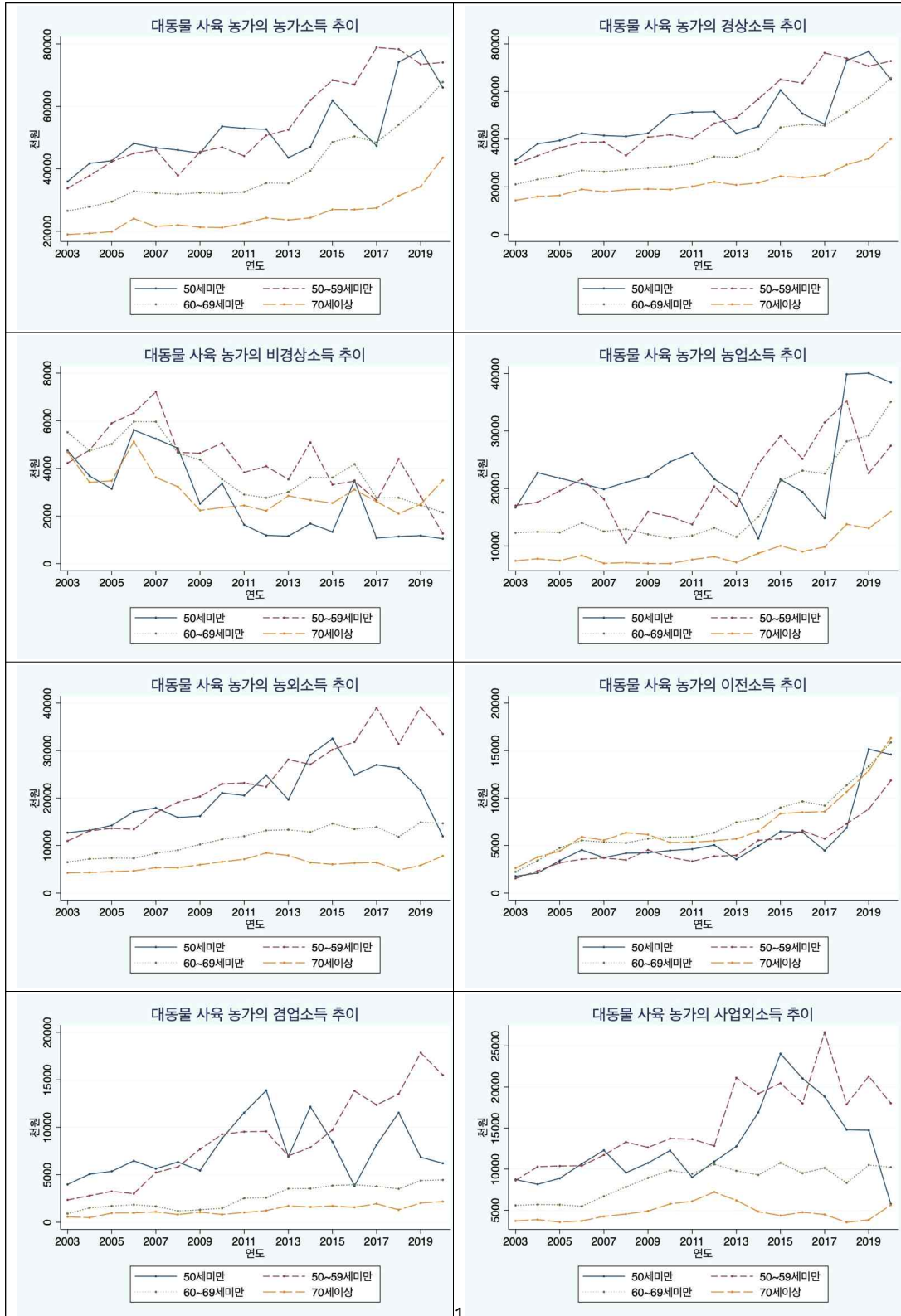
(4) 경영주 연령대별 대동물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결과, 경영주 연령대가 60대 미만(50세미만 + 50대)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이 60대인 경우보다 높았고, 70대인 경우는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경영주 연령이 높을 수록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50대 경영주 연령대가 50대 미만인 젊은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591만 원에서 2010년 5,359만 원까지 증가하였음. 이후 약간 정체를 보이다 2019년도에는 7,799만 원까지 증가 후 2020년 6,603만 원을 기록하였음.
 - 이들의 농가소득 증가 또한 경상소득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 함. 경상소득은 2003년 3,117만 원이었으나, 2020년 6,498만 원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규모가 되었음. 농가소득 중 경상소득의 비중이 2003년 86.8%에서 2020년 98.4%로 상승하였음. 경상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전소득의 비중은 크게 확대됨.
 - 비경상소득은 2003년 475만 원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0년 337만 원을 기록하였고, 2020년 104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이 기간동안 농가소득 대비 비중은 13.2%에서 1.6%로 매우 낮아졌음.
- 경영주 연령대가 50대(50~60세 미만)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376만 원에서 2007년 4,604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7,407만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03년 2,954만 원이었던 경상소득은 2020년 7,280만 원으로 2배를 훨씬 넘었음. 이와 달리 2003년 422만 원인 비경상소득은 2020년 127만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 되었음.
- 경영주 연령대가 60대(60~70세 미만)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2,654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음. 2020년 농가소득은 6,779만 원으로 분석됨.
 - 이들 농가들의 농가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2003년 79.2%에서 2020

년 96.8%까지 꾸준히 늘어났음. 반면, 비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552만 원 (10.6%)에서 215만 원(3.2%)으로 크게 줄었음.

- 경영주 70대 이상의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3년 1,899만 원에서 2020년 4,358만 원으로 높아졌음. 이들 농가 그룹의 농가소득 증가는 경상소득, 특히 이전소득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경상소득 대비 이전소득의 비중은 18.4%에서 40.7%로 상당히 높아짐. 이와 대조적으로 비경상소득은 2003년 468만 원 (24.6%)에서 2020년 350만 원(8.0%)으로 줄어들었음.

그림 3-15. 경영주 연령대별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3-25. 경영주 연령(5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5,916	31,170	16,688	12,711	1,772	4,745	29,399
2004	41,745	38,066	22,740	13,215	2,111	3,679	35,955
2005	42,585	39,445	21,792	14,239	3,414	3,140	36,030
2006	48,130	42,518	20,866	17,119	4,534	5,612	37,985
2007	46,766	41,526	19,864	17,931	3,730	5,241	37,795
2008	46,024	41,176	21,077	15,906	4,193	4,848	36,983
2009	45,024	42,506	22,077	16,192	4,238	2,517	38,269
2010	53,588	50,222	24,652	21,095	4,475	3,366	45,747
2011	52,950	51,322	26,157	20,537	4,628	1,628	46,694
2012	52,674	51,488	21,655	24,785	5,048	1,186	46,439
2013	43,572	42,417	19,193	19,669	3,555	1,155	38,862
2014	47,014	45,334	11,302	29,066	4,966	1,679	40,368
2015	61,885	60,550	21,554	32,515	6,480	1,335	54,069
2016	54,191	50,702	19,421	24,878	6,403	3,489	44,299
2017	47,363	46,292	14,831	26,993	4,468	1,071	41,824
2018	74,198	73,059	39,882	26,321	6,856	1,140	66,202
2019	77,986	76,809	40,072	21,586	15,152	1,177	61,658
2020	66,025	64,982	38,443	11,953	14,586	1,043	50,39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6. 경영주 연령(5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44,524	27,836	3,982	8,729	26,359	18,104	60
2004	58,228	35,488	5,065	8,150	30,187	27,835	206
2005	58,819	37,027	5,362	8,877	26,347	32,284	188
2006	57,825	36,959	6,466	10,653	27,736	28,834	1,255
2007	61,029	41,165	5,643	12,288	33,313	26,242	1,475
2008	81,568	60,492	6,340	9,567	33,518	43,786	4,265
2009	70,513	48,436	5,445	10,747	29,251	40,975	286
2010	64,485	39,834	8,827	12,268	24,375	39,187	923
2011	70,168	44,011	11,535	9,002	30,526	38,371	1,271
2012	93,027	71,373	13,874	10,911	37,511	53,458	2,058
2013	70,519	51,326	6,902	12,767	38,841	31,529	149
2014	63,056	51,754	12,155	16,912	44,943	18,033	80
2015	70,115	48,561	8,458	24,057	39,426	30,353	336
2016	60,187	40,766	3,817	21,061	29,227	29,837	1,122
2017	56,053	41,222	8,158	18,835	24,030	30,014	2,009
2018	162,109	122,227	11,527	14,794	31,283	129,790	1,036
2019	183,705	143,633	6,852	14,734	30,234	151,884	1,587
2020	220,796	182,353	6,206	5,748	39,490	177,958	3,34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7. 경영주 연령(50~6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33,764	29,541	17,025	10,971	1,546	4,223	27,996
2004	37,792	33,025	17,603	13,097	2,325	4,767	30,699
2005	42,290	36,391	19,585	13,627	3,180	5,899	33,211
2006	44,954	38,628	21,642	13,419	3,567	6,326	35,061
2007	46,038	38,826	18,176	16,954	3,696	7,212	35,129
2008	37,797	33,124	10,526	19,120	3,478	4,672	29,646
2009	45,447	40,808	15,943	20,333	4,532	4,639	36,276
2010	46,911	41,846	15,106	22,994	3,746	5,065	38,100
2011	44,113	40,284	13,749	23,189	3,345	3,829	36,939
2012	50,700	46,611	20,351	22,386	3,874	4,089	42,737
2013	52,535	48,998	16,917	28,110	3,971	3,537	45,027
2014	62,006	56,912	24,290	27,074	5,548	5,094	51,364
2015	68,382	65,066	29,187	30,181	5,698	3,316	59,368
2016	67,007	63,544	25,158	31,823	6,563	3,463	56,981
2017	78,881	76,230	31,486	39,029	5,715	2,651	70,515
2018	78,333	73,937	35,227	31,412	7,298	4,395	66,639
2019	73,482	70,656	22,660	39,154	8,842	2,826	61,814
2020	74,065	72,799	27,438	33,515	11,846	1,266	60,95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8. 경영주 연령(50~60세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38,367	21,342	2,348	8,623	24,504	13,691	172
2004	41,461	23,859	2,802	10,295	30,586	10,690	186
2005	44,222	24,637	3,245	10,381	30,654	13,341	227
2006	50,532	28,890	3,015	10,404	32,434	16,734	1,364
2007	46,974	28,798	5,241	11,713	33,909	12,051	1,013
2008	31,402	20,876	5,818	13,302	24,666	6,333	404
2009	43,954	28,011	7,690	12,642	29,967	13,631	357
2010	43,766	28,659	9,265	13,729	30,541	12,087	1,137
2011	55,374	41,625	9,534	13,655	34,636	19,466	1,272
2012	56,798	36,446	9,562	12,824	38,634	17,064	1,100
2013	55,288	38,371	6,987	21,123	28,197	26,748	344
2014	77,331	53,041	7,880	19,194	34,807	42,156	368
2015	78,443	49,256	9,720	20,461	37,265	40,748	430
2016	72,542	47,384	13,822	18,001	31,278	40,002	1,261
2017	85,469	53,983	12,359	26,670	43,379	40,022	2,068
2018	94,018	58,791	13,510	17,902	40,132	52,673	1,213
2019	91,859	69,199	17,847	21,308	35,017	55,771	1,071
2020	99,343	71,905	15,496	18,020	42,760	54,968	1,61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29. 경영주 연령(60~7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26,536	21,018	12,283	6,499	2,236	5,518	18,782
2004	27,817	23,081	12,465	7,196	3,420	4,736	19,661
2005	29,498	24,476	12,350	7,373	4,753	5,022	19,723
2006	32,837	26,875	14,008	7,323	5,544	5,962	21,331
2007	32,255	26,299	12,535	8,386	5,377	5,957	20,921
2008	31,871	27,232	12,932	9,025	5,275	4,639	21,957
2009	32,344	27,981	12,017	10,244	5,721	4,363	22,261
2010	32,067	28,527	11,334	11,320	5,872	3,540	22,654
2011	32,610	29,710	11,814	11,976	5,921	2,900	23,790
2012	35,435	32,673	13,142	13,173	6,358	2,762	26,315
2013	35,362	32,348	11,581	13,322	7,445	3,014	24,903
2014	39,326	35,714	15,064	12,839	7,811	3,612	27,903
2015	48,561	44,949	21,334	14,619	8,997	3,612	35,953
2016	50,384	46,206	23,097	13,465	9,644	4,179	36,562
2017	48,472	45,708	22,588	13,917	9,204	2,763	36,505
2018	54,145	51,380	28,181	11,842	11,356	2,765	40,023
2019	59,912	57,461	29,239	14,893	13,330	2,451	44,131
2020	67,789	65,640	35,089	14,686	15,865	2,150	49,774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30. 경영주 연령(60~70세 미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21,314	9,031	912	5,586	16,850	4,366	98
2004	24,621	12,156	1,513	5,683	20,929	3,583	110
2005	24,663	12,313	1,712	5,662	19,052	5,503	107
2006	28,278	14,270	1,849	5,474	20,562	6,777	939
2007	28,518	15,983	1,684	6,702	21,406	6,470	642
2008	31,404	18,472	1,204	7,820	22,319	8,730	355
2009	32,100	20,083	1,310	8,934	20,223	11,681	196
2010	33,915	22,581	1,475	9,845	21,766	11,292	857
2011	37,316	25,502	2,537	9,439	26,120	10,048	1,147
2012	40,124	26,982	2,585	10,588	23,444	16,304	375
2013	38,354	26,772	3,532	9,790	25,133	13,141	80
2014	46,792	31,728	3,543	9,296	26,091	20,495	207
2015	57,411	36,077	3,863	10,755	27,564	28,820	1,027
2016	67,395	44,298	3,957	9,508	29,388	36,911	1,095
2017	64,425	41,837	3,782	10,135	30,089	31,613	2,722
2018	74,410	46,229	3,517	8,325	35,150	35,986	3,274
2019	93,822	64,583	4,392	10,501	29,347	63,141	1,333
2020	99,797	64,708	4,458	10,228	36,003	62,192	1,60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31. 경영주 연령(70세 이상)-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1)

단위: 천 원

연도	농가소득 (A=B+F)	경상소득 (B=C+D+E)	농업소득 (C=H-I)	농외소득 (D=J+K)	이전소득 (E)	비경상소득 (F)	농가순소득 (G)
2003	18,993	14,312	7,420	4,259	2,633	4,681	11,679
2004	19,324	15,912	7,780	4,338	3,794	3,412	12,118
2005	19,866	16,388	7,461	4,514	4,413	3,478	11,975
2006	24,048	18,927	8,336	4,670	5,920	5,121	13,006
2007	21,507	17,888	6,979	5,345	5,565	3,619	12,323
2008	22,012	18,786	7,098	5,340	6,348	3,226	12,438
2009	21,303	19,069	6,957	5,960	6,151	2,235	12,918
2010	21,182	18,831	6,931	6,579	5,320	2,352	13,510
2011	22,535	20,095	7,624	7,122	5,349	2,440	14,746
2012	24,292	22,075	8,138	8,438	5,499	2,217	16,576
2013	23,604	20,757	7,139	7,915	5,703	2,847	15,054
2014	24,309	21,641	8,716	6,425	6,500	2,668	15,141
2015	26,983	24,440	10,013	6,059	8,368	2,544	16,072
2016	26,954	23,848	9,028	6,321	8,500	3,106	15,349
2017	27,434	24,831	9,836	6,418	8,576	2,603	16,254
2018	31,378	29,281	13,785	4,839	10,658	2,096	18,623
2019	34,298	31,805	13,072	5,842	12,891	2,494	18,913
2020	43,576	40,079	15,948	7,805	16,327	3,497	23,75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32. 경영주 연령(70세 이상)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 추이(2)

단위: 천 원

연도	농업총수입 (H=L+M+N)	농업경영비 (I)	경영소득 (J)	사업외소득 (K)	농작물수입 (L)	축산수입 (M)	농업잠수입 (N)
2003	12,493	5,073	572	3,687	9,754	2,708	30
2004	13,286	5,506	490	3,848	11,474	1,747	65
2005	13,461	6,001	969	3,545	10,707	2,589	165
2006	15,103	6,767	982	3,688	11,237	3,199	667
2007	14,619	7,640	1,102	4,243	11,617	2,574	428
2008	15,692	8,594	815	4,525	12,871	2,381	440
2009	16,186	9,229	1,064	4,896	12,533	3,496	157
2010	15,851	8,920	820	5,759	12,598	2,485	768
2011	18,249	10,625	1,033	6,089	15,484	2,141	623
2012	19,780	11,642	1,235	7,202	17,203	2,395	182
2013	19,734	12,595	1,721	6,194	15,289	4,385	60
2014	24,394	15,678	1,611	4,815	15,841	8,484	69
2015	26,901	16,888	1,719	4,340	15,657	10,972	273
2016	27,760	18,732	1,576	4,745	15,863	11,167	729
2017	28,977	19,140	1,949	4,469	16,112	10,983	1,881
2018	34,079	20,294	1,313	3,525	19,512	13,937	629
2019	38,713	25,642	2,024	3,817	18,951	19,389	373
2020	41,803	25,855	2,179	5,625	21,525	19,257	1,02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분석.

1.2.3. 농업법인조사 자료

- 이 절은 통계청의 농업법인조사(2020년)와 농어업법인조사(2001년) 자료 중 한육우를 1마리 이상 키우는 모든 법인에 대한 MDIS 자료를 토대로 비교 작성하였음.
- 농어업법인조사(2001년) 자료에서는 약 3천 5백개 법인 중 한육우를 1마리 이상 키우는 법인은 모두 274개이고, 이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총 173개로 조사됨.
- 농업법인조사(2020년) 자료에서는 약 1만 9천개 법인 중 한육우를 1마리 이상 키우는 법인은 모두 281개이고, 이 중 1개는 응답이 없어 제외함.

(1) 법인특성별 법인수

- 2001년 농어업법인조사에서 법인특성별 법인수는 모두 173개로 영농조합법인이 167개(96.5%), 농업회사법인이 6개(3.5%)로 한육우를 사육하는 법인들 중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농업법인조사에서 법인특성별 법인수는 모두 280개로 영농조합법인이 215개(76.8%), 농업회사법인이 65개(23.2%)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33. 법인특성별 법인수

조직형태	농어업법인조사(2001)	농업법인조사(2020)
	법인수	법인수
영농조합법인	167(96.5%)	215(76.8%)
농업회사법인	6(3.5%)	65(23.2%)
계	173(100.0%)	280(100.0%)

(2)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사육두수와 경지면적)

○ 2001년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육규모가 100두 미만의 법인이 80개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육규모가 100두 미만의 법인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음(사육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 대다수임).
- 평균경지면적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육규모가 100두 미만인 법인이 다른 사육규모에 비해 논과 밭, 과수원, 목초지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 6개에서는 논과 밭, 과수원, 목초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사육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 경지를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4.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사육두수와 경지면적)-농어업법인조사(2001)

		한육우 사육규모						
		100두 미만	100-199두	200-299두	300-399두	400-499두	500두 이상	합계
영농조합법인	법인수	80	37	21	6	4	19	167
	평균두수	37	140	230	328	413	809	-
	평균경지면적	논	265	0	5	0	0	-
		밭	273	25	115	0	50	-
		과수원	42	0	200	0	0	-
		목초지	100	95	76	0	0	-
농업회사법인	법인수	5	0	0	1	0	0	6
	평균두수	27	0	0	300	0	0	-
	평균경지면적	논	0	0	0	0	0	-
		밭	0	0	0	0	0	-
		과수원	0	0	0	0	0	-
		목초지	0	0	0	0	0	-

- 2020년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0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법인의 수가 86개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100-199두 사육 법인이 18개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음('01년에 비해 사육규모가 큰 법인이 많이 생겨남).
 - 평균경지면적은 영농조합법인이 논과 밭 모두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평수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35. 법인특성별 소유현황(사육두수와 경지면적)-농업법인조사(2020)

		한육우 사육규모							
		100두 미만	100-199 두	200-299 두	300-399 두	400-499 두	500두 이상	합계	
영농조합법인	법인수	86	45	19	19	4	42	215	
	평균 두수	49	115	214	304	400	2,019	—	
	평균경지면적	논	6,115	2,810	16,100	0	0	5,406	—
		밭	150,342	0	0	0	0	13,382	—
		과수원	3,000	0	0	0	0	10,214	—
농업회사법인	법인수	17	18	8	4	1	17	65	
	평균 두수	37	113	240	300	400	2,068	—	
	평균경지면적	논	3,451	0	0	0	0	0	—
		밭	6,343	0	0	58,650	0	0	—
		과수원	0	0	0	0	0	0	—

- 농어업법인조사(2001)에서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총 167개이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1,500두, 가장 적은 사육두수는 2두로 평균 191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총 6개로 조사되었으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농업회사법인은 300두, 가장 적은 사육두수는 6두로 평

균 73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36.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농어업법인조사(2001)

	영농조합법인 사육두수			농업회사법인 사육두수		
	최댓값	최소값	평균	최댓값	최소값	평균
한육우	1,500	2	191	300	6	73
젖소	1,645	2	281	0	0	0
돼지	2,400	100	1,045	20	20	20
닭	200	3	80	0	0	0
꿀벌	150	50	100	0	0	0
기타	250	30	110	0	0	0

- 농업법인조사(2020)에서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1년에 비해 법인의 평균 사육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 －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215개이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법인은 20,000두 가장 적은 사육두수는 2두로 평균 491두('01년 평균 191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한육우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총 65개로 조사되었으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농업회사법인은 6,000두, 가장 적은 사육두수는 4두, 평균은 636('01년 평균 73두)두로 나타남.

표 3-37. 법인의 가축 소유 현황-농업법인조사(2020)

	영농조합법인 사육두수			농업회사법인 사육두수		
	최댓값	최소값	평균	최댓값	최소값	평균
한육우	20,000	2	491	6,000	4	636
젖소	60	12	34	0	0	0
돼지	7,162	40	3,349	6,960	15	2,704
닭	7,157	7,157	7,157	82,500	82,500	82,500
오리	18,000	2,400	10,200	30,000	30,000	30,000
꿀벌	0	0	0	0	0	0
시슴	0	0	0	0	0	0
기타	50	28	39	5,000	100	2,550

- 농어업법인조사(2001)에서 법인 경지면적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영농조합법인 중 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총 12개(7.2%)로 가장 큰 평수가 600평, 가장 작은 평수가 2평으로 평균 222평으로 조사되었으며,

밭을 보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총 18개(10.8%)로 평균 201평으로 조사되었음.

- 농어업법인조사(2001)에서 논과 밭, 과수원, 목초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8. 법인의 경지면적 소유 현황(평)-농어업법인조사(2001)

	영농조합법인 소유 경지면적			농업회사법인 소유 경지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논	600	2	222	0	0	0
밭	2,000	5	201	0	0	0
과수원	200	30	95	0	0	0
목초지	200	2	77	0	0	0

- 농업법인조사(2020)에서 법인 경지면적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 중 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총 10개(4.7%)로 가장 큰 평수가 24,000평, 가장 작은 평수가 200평, 평균 5,901평('01년 평균 222평)으로 조사되었으며, 밭은 총 6개(2.8%)로 평균 128,044평('01년 평균 201평)으로 조사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한옥우를 사육하는 법인 중 논과 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각 4개(6.2%)이며, 과수원을 보유한 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9. 법인의 경지면적 소유 현황(평)-농업법인조사(2020)

	영농조합법인 소유 경지면적			농업회사법인 소유 경지면적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	최소값	평균
논	24,000	200	5,901	10,890	109	3,451
밭	745,030	120	128,044	58,650	5,250	19,419
과수원	3,000	3,000	3,000	0	0	0

(3) 사업유형별 법인수

- 농업법인조사 자료에서 한옥우를 사육하는 280개의 법인들의 주사업유형별 법인수로 축산업이 254개(90.7%) 법인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작물재배업 15개(5.4%), 농축산물유통업(도소매업) 6개(2.1%), 기타사업

5개(1.8%) 순으로 조사됨.

표 3-40. 사업유형별 법인수(2020)

주사업유형	법인 수
작물재배업	15(5.4%)
축산업	254(90.7%)
농축산물가공업	0(0.0%)
농축산물유통업(도소매업)	6(2.1%)
농업서비스업	0(0.0%)
농어촌관광휴양사업	0(0.0%)
기타사업	5(1.8%)
계	280(100.0%)

주: 2001년 자료는 공표가 안 됨.

(4) 품목별 법인수

- 한육우를 사육하는 280개 법인 중 2019년을 기준으로 작물재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법인들의 수는 총 41개(14.6%)임(표 3-41).
 - － 논벼, 식량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 17개(6.0%)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채소(노지) 8개(2.8%), 사료작물 6개(2.1%), 채소(시설) 3개(1.1%), 특용작물 3개(1.1%), 과수(노지) 2개(0.7%), 과수(시설) 1개(0.4%), 화훼(노지) 1개(0.4%) 순으로 조사되었음.
 - － 논벼,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17개 한육우 법인들은 전체 수입 중 논벼와 식량작물을 통한 수입이 평균 49.4%에 이릅니다.
- 한육우를 사육하는 법인 280개 중, 소(한육우) 사육에 참여하는 법인은 총 280개(100.0%)이며, 다음으로 돼지 9개(3.2%), 젓소 4개(1.4)로 일부 돼지와 젓소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3-42).
 - － 한육우 사육 법인들의 전체 수입 중 한육우 판매수입이 평균 86.6%에 이릅니다.
 - － 한육우와 동시에 젓소를 사육하는 법인 4곳의 전체 수입 중 낙농 판매수입은 평균 43.5%에 이릅니다.

- 한육우와 동시에 돼지를 사육하는 법인 9곳의 전체 수입 중 돼지 판매수입은 평균 42.7%에 이릅니다.

표 3-41. 품목별(작물재배업) 법인수(2020)

	법인 수		전체 수입중 작물재배업 수입 비중(%)		
	참여O	참여X	최대값	최소값	평균
논벼, 식량작물	17(6.0%)	264(94.0%)	80.0%	20.0%	49.4%
채소(노지)	8(2.8%)	273(97.2%)	70.0%	10.0%	32.9%
채소(시설)	3(1.1%)	278(98.9%)	50.0%	4.0%	19.7%
과수(노지)	2(0.7%)	279(99.3%)	40.0%	2.0%	30.0%
과수(시설)	1(0.4%)	280(99.6%)	70.0%	70.0%	70.0%
화훼(노지)	1(0.4%)	280(99.6%)	70.0%	70.0%	70.0%
화훼(시설)	0(0.0%)	281(100.0%)	0.0%	0.0%	0.0%
특용작물	3(1.1%)	278(98.9%)	80.0%	10.0%	33.3%
버섯	0(0.0%)	281(100.0%)	0.0%	0.0%	0.0%
사료작물	6(2.1%)	275(97.9%)	60.0%	1.0%	22.8%
종묘	0(0.0%)	281(100.0%)	0.0%	0.0%	0.0%
기타	0(0.0%)	281(100.0%)	0.0%	0.0%	0.0%
계	41(14.6%)	—	—	—	—

주: 2001년 자료는 공표가 안 됨.

표 3-42. 품목별(축산업) 법인수(2020)

	법인 수		전체 수입중 축산업 수입 비중(%)		
	참여O	참여X	최대값	최소값	평균
소(한육우)	280(100.0%)	0(0.0%)	100.0%	1.0%	86.6%
젖소	4(1.4%)	277(98.6%)	99.0%	15.0%	43.5%
돼지	9(3.2%)	272(96.8%)	90.0%	5.0%	42.7%
닭	2(0.7%)	279(99.3%)	10.0%	10.0%	10.0%
오리	3(1.1%)	278(98.9%)	60.0%	10.0%	30.0%
꿀벌	0(0.0%)	280(99.6%)	0.0%	0.0%	0.0%
사슴	0(0.0%)	281(100.0%)	0.0%	0.0%	0.0%
종축	0(0.0%)	281(100.0%)	0.0%	0.0%	0.0%
기타	2(0.7%)	279(99.3%)	60.0%	10.0%	35.0%

주: 2001년 자료는 공표가 안 됨.

(5)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

- 농어업법인조사(2001)에서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는 다음과 같음.
 - 한옥우를 사육하는 법인 173개 중 이 중 88개(50.9%)가 출자자 수 6명 이상 20명 이하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 이하인 법인이 76개(43.9%), 21-49명이 7개(4.0%), 50-99명이 2개(1.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자자가 100명 이상인 법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이 대부분 5명 이하로 출자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3.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농어업법인조사(200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5명 이하	71(41.0%)	5(2.9%)	76(43.9%)
6-20명	87(50.3%)	1(0.6%)	88(50.9%)
21-49명	7(4.0%)	0(0.0%)	7(4.0%)
50-99명	2(1.2%)	0(0.0%)	2(1.2%)
100명 이상	0(0.0%)	0(0.0%)	0(0.0%)
계	167(96.5%)	6(3.5%)	173(100.0%)

- 농업법인조사(2020)에서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는 다음과 같음.
 - 한옥우 법인 280개 중 이 중 184개(65.7%)가 출자자가 5명 이하로 가장 많고, 6-20명이 73개(26.1%), 21-49명이 11개(3.9%), 50-99명이 7개(2.5%), 100명 이상이 5개(1.8%) 순으로 나타남.
 - 2001년 농어업법인조사와 유사하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자가 5명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로 조사됨.
 - 5명 이하 법인수는 '01년에 76개(43.9%)에서 '20년에 184개(65.7%)로 늘어나, 여전히 상당수의 법인의 출자자 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50명 이상인 법인수는 '01년에 2개에서 '20년에 12개로 늘어남.

표 3-44.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농업법인조사(202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5명 이하	129(46.1%)	55(19.6%)	184(65.7%)
6-20명	67(23.9%)	6(2.1%)	73(26.1%)
21-49명	10(3.6%)	1(0.4%)	11(3.9%)
50-99명	4(1.4%)	3(1.1%)	7(2.5%)
100명 이상	5(1.8%)	0(0.0%)	5(1.8%)
계	215(76.8%)	65(23.2%)	280(100.0%)

(6) 법인특성별 종사자수

○ 농어업법인조사(2001)에서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음.

- 종사자수가 4-9명인 법인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하여 87개(50.3%)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종사자수가 20명 이상인 법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5.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농어업법인조사(2001)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3명 이하	72(41.6%)	3(1.7%)	75(43.4%)
4-9명	85(49.1%)	2(1.2%)	87(50.3%)
10-19명	5(2.9%)	1(0.6%)	6(3.5%)
20명 이상	5(2.9%)	0(0.0%)	5(2.9%)
계	167(96.5%)	6(3.5%)	173(100.0%)

○ 농업법인조사(2020)에서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는 다음과 같음.

- 종사자수가 3명 이하인 법인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하여 132개(47.1%)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종사자수 규모가 클수록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에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01년에 비해 종사자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6. 법인특성별 종사자수-농업법인조사(202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3명 이하	103(36.8%)	29(10.4%)	132(47.1%)
4-9명	85(30.4%)	26(9.3%)	111(39.6%)
10-19명	19(6.8%)	9(3.2%)	28(10.0%)
20명 이상	8(2.9%)	1(0.4%)	9(3.2%)
계	215(76.8%)	65(23.2%)	280(100.0%)

2. 민간 자료 검토

2.1. 한우협회 농가 경영실태 조사 자료⁷⁾

(1) 사육규모별 사육방식

- 사육규모별 사육방식에 대해 설문에 답한 농가들을 검토한 결과, 총 540개 응답 중 516개가 유효한 응답으로 처리되었음.
- 전체적으로는 응답 농가의 74.8%가 일관사육으로, 18.0%가 번식으로, 나머지 7.1%가 비육(거세, 수소, 암소)으로 응답함.
- 소규모 농가일수록 번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20두 미만의 경우 25.4%, 20-49두 26.9%, 50-99두 22.1%, 100두이상은 8.3%에 그침).
- 규모가 커질수록 일관사육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0두 미만의 경우 66.7%, 20-49두 66.7%, 50-99두 71.4%, 100두이상은 83.9%로 가장 크게 나타남).
- 100두이상 규모 농가들의 경우, 양질의 우수한 송아지를 얻는 데 따르는 위험(risk)이 커짐에 따라, 일관사육 사육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됨.

7) 이 절의 내용은 한우협회의 “2021년 전국한우협회 패널 농가 경영실태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전체 540 농가의 응답 중 각 문항별로 유효한 응답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이력제 통계자료에 비해 일관사육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번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한우협회의 설문조사 대상 농가는 사육규모에 따른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것이 아니기 한우 사육농가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음.

표 3-47. 사육규모별 사육방식

		사육규모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전체	
사 육 방 식	일관	42	66.7%	72	66.7%	100	71.4%	172	83.9%	386	74.8%
	거세비육	1	1.6%	5	4.6%	6	4.3%	14	6.8%	26	5.0%
	수소비육	0	0.0%	0	0.0%	0	0.0%	1	0.5%	1	0.2%
	암소비육	4	6.3%	2	1.9%	3	2.1%	1	0.5%	10	1.9%
	번식	16	25.4%	29	26.9%	31	22.1%	17	8.3%	93	18.0%
	계	63	100%	108	100%	140	100%	205	100%	516	100%

(2) 사육규모별 판매비중

- 사육규모별 판매두수와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에 대해 설문에 답한 농가들을 검토한 결과, 규모가 작을수록 송아지 판매비중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큰소의 판매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규모가 커질수록 사육두수 중 판매두수의 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육규모별 특징은 아래와 같음.
 - 20두 미만 사육규모의 농가들은, 송아지의 연간 판매두수는 3.0두이고 큰소의 연간 판매두수는 3.6두로 나타나 연간 전체 판매두수는 6.6두로 나타남. 이를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으로 나타내면, 송아지는 26.0%이고 큰소는 28.1%로 전체적으로는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이 54.0%에 이름.
 - 20-49두 사육규모의 농가들은, 송아지의 연간 판매두수는 5.7두이고 큰소의 연간 판매두수는 7.4두로 나타나 연간 전체 판매두수는 13.2두로 나타남. 이를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으로 나타내면, 송아지는 16.4%이고 큰소는 21.1%로 전체적으로는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이 37.5%에 이름.
 - 50-99두 사육규모의 농가들은, 송아지의 연간 판매두수는 9.3두이고 큰소의 연간 판매두수는 15.3두로 나타나 연간 전체 판매두수는 24.6두로 나타남. 이를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으로 나타내면, 송아지는 13.4%

이고 큰소는 21.5%로 전체적으로는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이 34.9%에 이릅니다.

- 100두 이상 사육규모의 농가들은, 송아지의 연간 판매두수는 15.0두이고 큰소의 연간 판매두수는 45.4두로 나타나 연간 전체 판매두수는 60.5두로 나타남. 이를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으로 나타내면, 송아지는 9.1% 이고 큰소는 23.0%로 전체적으로는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이 32.2%에 이릅니다.

표 3-48.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추계소득

		사육규모							
		20두미만		20-49		50-99		100두이상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구분	송아지	3.0	26.0%	5.7	16.4%	9.3	13.4%	15.0	9.1%
	큰소	3.6	28.1%	7.4	21.1%	15.3	21.5%	45.4	23.0%
	계	6.6	54.0%	13.2	37.5%	24.6	34.9%	60.5	32.2%
	추계 소득 (천원)	9,420	-	18,675	-	34,859	-	85,946	-

주: 추계소득을 위해 송아지 판매두수에는 번식후 두당 소득(1,410천원)을 큰소에는 비육후 두당 소득(1,425천원)을 곱하여 계산함. 두당 소득 자료는 축산물생산비통계(2021)의 자료를 이용함.

표 3-49.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세분화), 추계소득

사육규모 (두)	구분			
	송아지판매두수(두)	큰소판매두수(두)	합계(두)	추계소득(천원)
1-9	1.8	1.2	2.9	4,248
10-19	3.7	4.9	8.6	12,200
20-29	4.3	7.8	12.1	17,178
30-39	5.3	5.7	11.0	15,596
40-49	7.0	8.6	15.6	22,125
50-59	8.7	12.9	21.7	30,650
60-69	8.2	12.7	20.9	29,660
70-79	10.8	16.0	26.7	38,028
80-89	9.8	17.9	27.8	39,326
90-99	8.9	18.9	27.7	39,482
100-149	12.8	28.3	41.1	58,376
150-199	16.0	34.5	50.5	71,723
200-249	13.0	46.9	59.9	85,163
250-299	9.7	61.3	71.0	101,030
300두 이상	26.0	112.5	138.5	196,973

주: 추계소득을 위해 송아지 판매두수에는 번식우 두당 소득(1,410천원)을 큰소에는 비육우 두당 소득(1,425천원)을 곱하여 계산함. 두당 소득 자료는 축산물생산비통계(2021)의 자료를 이용함.

(3) 사육규모별 주수입원 비교

- 사육규모별 농가의 주수입원에 대해 설문에 답한 농가들을 검토한 결과, 총 540 응답 중 543개가 유효한 응답(517개 응답, 복수응답 26개 농가)으로 처리되었음.

- 전체적으로는 한우 사육이 주 수입원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66.3%, 농림업이 23.6%, 기타 6.6%, 서비스업 2.4%, 제조업 0.6%, 타축종 0.6% 순으로 나타남.
- 100두 이상 규모 농가들의 경우, 한우사육이 83.3%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뒤로 농림업이 11.9%로 나타남.
- 반면, 규모가 작을수록 한우사육이 주수입원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작아지고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20두 미만 농가의 경우 한우 사육이 주수입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5%이고, 기타 농림업 29.7%, 기타 14.1%, 서비스업 4.7% 순으로 나

타남.

표 3-50. 사육규모별 농가 주수입원

		사육규모									
		20두미만		20-49		50-99		100두이상		전체	
주 수 입 원	한우	32	50.0%	57	48.7%	96	63.2%	175	83.3%	360	66.3%
	타축종	0	0.0%	0	0.0%	2	1.3%	1	0.5%	3	0.6%
	농림업	19	29.7%	41	35.0%	43	28.3%	25	11.9%	128	23.6%
	제조업	1	1.6%	0	0.0%	1	0.7%	1	0.5%	3	0.6%
	서비스업	3	4.7%	3	2.6%	3	2.0%	4	1.9%	13	2.4%
	기타	9	14.1%	16	13.7%	7	4.6%	4	1.9%	36	6.6%
	계	64	100%	117	100%	152	100%	210	100%	543	100%

(4) 사육규모별 부채 비교

- 사육규모별 부채규모에 대해 설문에 답한 농가들을 검토한 결과, 총 540 응답 중 520개가 유효한 응답으로 처리되었음.
- － 대체로 사육규모에 비례하여 농가 부채규모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전체적으로는 부채규모가 2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42.3%로 가장 크고, 1~2억원이 20.2%, 5천만원~1억원이 15.2%, 1~5천만원이 13.8%, 1천만원 미만이 8.5% 순으로 나타남.

표 3-51. 사육규모별 농가 부채규모

		사육규모									
		20두미만		20-49		50-99		100두이상		전체	
부 채 규 모	1천만 미만	8	13.6%	13	11.8%	11	7.5%	12	5.9%	44	8.5%
	1-5천만	10	16.9%	26	23.6%	23	15.8%	13	6.3%	72	13.8%
	5천만-1억	11	18.6%	24	21.8%	24	16.4%	20	9.8%	79	15.2%
	1-2억	12	20.3%	19	17.3%	31	21.2%	43	21.0%	105	20.2%
	2억이상	18	30.5%	28	25.5%	57	39.0%	117	57.1%	220	42.3%
	계	59	100%	110	100%	146	100%	205	100%	520	100%

2.2. 한우자조금 농가컨설팅 자료

- 한우자조금 농가컨설팅 대상 농가들에 대한 농가소득 자료가 2017~2021년까지 사육방식과 사육규모에 따라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음.
- 농가소득이 다른 통계치보다 크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농가가 감가상각비, 자기노동,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 타작목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 3-52.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7년)

단위 : 천 원, 호

		모든 규모	20두 미만	20두-49두	50-99두	100두 이상
모든 농가	조수입	345,106	39,633	79,371	210,650	477,016
	경영비	182,989	41,733	50,772	113,029	249,902
	소득	162,110	-2,100	28,601	97,614	227,105
	농가수	140	3	14	44	80
번식	조수입	163,373	59,450	73,509	163,379	267,974
	경영비	95,091	62,600	39,379	98,034	146,812
	소득	68,279	-3,150	34,133	65,345	121,149
	농가수	31	2	7	14	8
비육	조수입	257,500	-	-	313,250	201,750
	경영비	224,858	-	-	234,175	215,540
	소득	32,643	-	-	79,075	-13,790
	농가수	4	-	-	2	2
일관	조수입	401,561	-	85,234	226,957	508,772
	경영비	207,115	-	62,164	111,874	262,666
	소득	194,437	-	23,070	115,073	246,097
	농가수	106	1	7	28	70

표 3-53.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8년)

단위 : 천 원, 호

		모든 규모	20두 미만	20두-49두	50-99두	100두 이상
모든 농가	조수입	375,469	126,667	102,432	210,440	492,721
	경영비	199,940	95,233	58,619	123,416	255,648
	소득	175,528	31,433	43,813	87,024	237,071
	농가수	248	3	16	77	152
번식	조수입	205,781	86,000	104,001	158,036	330,639
	경영비	125,348	72,250	53,075	109,736	185,052
	소득	80,424	13,750	50,926	48,300	145,559
	농가수	53	2	8	25	18
비육	조수입	333,922	-	33,000	288,500	454,575
	경영비	338,703	-	106,500	296,900	438,558
	소득	-4,781	-	-73,500	-8,400	16,018
	농가수	9	-	1	4	4
일관	조수입	425,831	208,000	110,557	231,228	516,337
	경영비	214,480	141,200	58,114	116,084	259,795
	소득	211,352	66,800	52,443	115,144	256,543
	농가수	186	1	7	48	130

표 3-54.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19년)

단위 : 천 원, 호

		모든 규모	20두 미만	20두-49두	50-99두	100두 이상
모든 농가	조수입	391,393	125,200	114,643	207,760	518,394
	경영비	231,581	89,000	84,376	123,656	303,889
	소득	159,812	36,200	30,267	84,104	214,505
	농가수	314	2	28	88	195
번식	조수입	212,960	49,400	139,431	153,983	343,153
	경영비	123,998	59,300	113,264	86,834	185,156
	소득	88,962	-9,900	26,167	67,149	157,997
	농가수	72	1	13	34	24
비육	조수입	489,961	-	35,000	408,180	597,945
	경영비	460,394	-	63,100	497,510	486,858
	소득	29,567	-	-28,100	-89,330	111,087
	농가수	14	-	1	5	8
일관	조수입	444,825	201,000	97,314	230,472	540,293
	경영비	252,954	118,700	59,071	112,051	312,391
	소득	191,871	82,300	38,244	118,422	227,901
	농가수	226	1	14	47	163

표 3-55.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20년)

단위 : 천 원, 호

		모든 규모	20두 미만	20두-49두	50-99두	100두 이상
모든 농가	조수입	435,912	-	139,294	227,590	558,498
	경영비	243,472	-	78,691	124,554	312,889
	소득	192,441	-	60,603	103,036	245,609
	농가수	212	-	17	57	138
변식	조수입	263,392	-	151,578	169,612	466,018
	경영비	165,174	-	75,761	93,776	321,706
	소득	98,219	-	75,817	75,835	144,312
	농가수	52	-	9	26	17
비육	조수입	493,017	-	82,000	387,425	612,071
	경영비	544,275	-	122,800	338,325	722,171
	소득	-51,258	-	-40,800	49,100	-110,100
	농가수	12	-	1	4	7
일관	조수입	496,367	-	131,686	267,273	569,000
	경영비	247,999	-	76,157	120,810	286,443
	소득	248,368	-	55,529	146,463	282,557
	농가수	146	-	7	25	114

표 3-56. 사육규모별 농가소득, 농가수(2021년)

단위 : 천 원, 호

		모든규모	20두 미만	20두-49두	50-99두	100두 이상
모든 농가	조수입	509,165	-	169,921	217,103	722,519
	경영비	259,138	-	84,604	120,687	363,300
	소득	250,013	-	85,317	96,398	359,204
	농가수	100	-	13	28	59
변식	조수입	237,169	-	184,882	174,820	443,650
	경영비	126,007	-	92,021	105,398	213,743
	소득	111,143	-	92,861	69,386	229,907
	농가수	27	-	7	14	6
비육	조수입	774,600	-	-	320,500	1,077,333
	경영비	406,040	-	-	235,450	519,767
	소득	368,560	-	-	85,050	557,567
	농가수	5	-	-	2	3
일관	조수입	597,646	-	152,467	249,200	734,695
	경영비	301,197	-	75,950	119,396	371,859
	소득	296,436	-	76,517	129,804	362,818
	농가수	68	-	6	12	50

표 3-57. 연도별 사육규모별 소득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모든 규모	162,110	175,528	159,812	192,441	250,013
20두 미만	-2,100	31,433	36,200	-	-
20두-49두	28,601	43,813	30,267	60,603	85,317
50두-99두	97,614	87,024	84,104	103,036	96,398
100두 이상	227,105	237,071	214,505	245,609	359,204

그림 3-16. 연도별 사육규모별 소득변화 추이

단위 : 천 원



제 2절 한우 산업 관련 정책 검토

1. 농림축산식품사업 개요

-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를 기준으로 축산 관련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안내서에 따르면 농식품사업은 대분류 8기준, 중분류 40기분으로 분류됨.
- 이 중 축산(한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굵은 글씨 표기).
 - － 대분류 생산기반 부문 아래 중분류 2개 사업들(직불제, 소득안정)
 - － 대분류 축산 부문 아래 중분류 6개 사업들(시설·장비 지원, 가축사육/말산업, 축산환경개선, 가공/유통/수급/소비, 가축방역/위생지원, 조사료지원)
 - － 대분류 농생명산업 부문 아래 중분류 3개 사업들(스마트농업, 동물복지, 농산업수출/국제개발)
 - － 대분류 탄소중립/기후변화 부문 아래 중분류 5개 사업들(친환경농업, 에너지 전환, 저탄소농축산, 저탄소인증지원, 기후변화대응)

표 3-58. 농식품사업 안내서 분류 세부기준

대분류(8)	중분류(40)	내용(소분류)
생산기반 (공통)	직불제	1.공익형 기본형 직불 2.공익형 선택형, 기타 직불
	소득안정	1.재해지원, 2.경영안정
	농기자재	1.비료·농약, 2.비닐·자재, 3.농기구·장비
	농지	1.농지 구입·임차 지원, 2.농지이용관리 3.농지은행
	농촌인력, 일자리	1.농촌인력지원, 2.일자리 창출·제공
	농기계지원(통합패키지)	
농촌, 공동체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1.농촌복지, 2.취약계층, 3.여성농업인
	농촌개발, 농촌산업	1.농촌개발, 2.농촌산업
	농촌공동체, 환경	1.농촌공동체, 2.농촌환경
	지역먹거리	1.푸드플랜, 2.로컬푸드
	귀농귀촌, 인력육성	1.귀농귀촌, 2.인력육성
식량	공동경영체	1.버공동경영체, 2.발작물공동경영체
	벼,발작물 생산수매	1.벼생산, 2.발작물생산, 3.농가 교육·컨설팅
	식량수급안정	1.쌀수급조정, 2.발작물자급율제고
	기반조성	1.농촌융수, 2.수리·배수, 3.대규모기반
	수매, 가공, 소비	1.수매·건조·가공, 2.소비촉진
원예작물, 유통	시설기반(시설, 장비)	1.기반조성, 2.하우스·온실 설치 3.내외부시설장비
	채소(노지, 시설)	1.노지채소, 2.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작	1.과수, 2.화훼, 특작
	유통, 가공 효율화	1.유통·보관시설, 2.물류·마케팅 3.가공, 원료확보
	수급안정, 소비촉진	1.수급조절, 2.소비촉진
	산지조직화(통합)	
축산	시설·장비지원	1.축사시설, 2.축사부대시설
	가축사육, 말산업	1.소,낙농,돼지, 2.가금,양봉,기타가축 3.말산업, 4.축산농가 교육·컨설팅
	축산환경개선	1.환경개선, 2.분뇨자원화, 3.퇴액비활용
	가공, 유통, 수급, 소비	1.축산물 품질관리, 2.축산물 위생안전 3.축산물 유통,수급관리, 4.축산물 소비촉진
	가축방역, 위생지원	1.방역대응, 2.동물약품개발 3.가축 살처분·사체처리 4.가축백신, 5.질병관리
	조사료지원(통합안내)	
식품	기반구축	1.시설·장비 2.인력 3.산업기반
	식품안전, 환경, 인증	1.식품안전 2.식품인증
	식품산업, 외식산업	1.식품산업 2.외식지원, 3.한식진흥
	식생활, 식품소비	1.식생활개선, 교육 2.식품소비촉진
	농식품 수출,	1.농식품 수출지원 2.해외관로
농생명산업	스마트농업	1.스마트팜시설장비 2.스마트팜실증보급 3.스마트팜농산물유통 4.데이터 구축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1.종자·묘목 2.도시농업 3.곤충 4.미생물
	동물복지	1.반려동물보호복지 2.반려동물산업 3.농장동물복지
	창업, 농산업인력	1.농관련창업 2.농산업인력 3.농산업지원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1.농산업수출 2.국제개발지원
탄소중립, 기후변 화	친환경농업	1.친환경농업 2.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 3.친환경농업 교육홍보
	에너지 전환	1.재생에너지생산 2.재생에너지사용
	저탄소농축산	1.저탄소 농업 2.저탄소 축산
	저탄소인증지원	1.저탄소농업인증 2.저탄소축산인증
	기후변화대응	1.기후변화실태조사 2.기후변화대응기술 3.기후변화대응참여촉진

자료: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2022)

2. 관련 사업 세부 내용

(1) 생산기반

□ 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등
 - 한우 사육 농가 중 소농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지급 대상임.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한우 농가가 해당됨.

□ 소득안정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보험료 지원(가축·가축 질병 영업보험료 50% 지원)
=>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종합자금: 농업인 등
- 농축산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인
- 농업인 부채상환 인센티브: 농업인
-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 중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자

표 3-59. 생산기반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분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내용
직불제			
1. 공익형 기본형 직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 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요건 충족자 등	• (지급대상 농지)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한 하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한 하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 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요건 충족자 등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 (지원내용)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2. 공익형 선택형, 기타 직불	논 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자격)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1ha 당 50만원 (㎡당 50원) 직불금 지급
	경관보전직불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등에서 경관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경영이양직불금	65~74세 이하의 농업인	• (지원자격) 65~7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경영이양한 경우 보조금 지원
소득안정			
1. 재해지원	농업재해보험료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농작물·수입보험(순보험료 50%), 가축·가축 질병(영업보험료 50%)
	농업인재해보험료지원	농식품부 장관과 보험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 NH농협손보)	• (지원자격)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 (NH농협손보) • (지원내용)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비지원 : 일반농 50%, 영세농 70%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관운영비지원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지원자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지원내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2. 경영안정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인 등	• (지원자격)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농업종합자금	농업인 등	• (지원자격)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 • (지원내용)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 지원
	농축산경영자	농업인 등	• (지원자격)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

금		• (지원내용)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
농업자금이자보전사업	농업인 등	• (지원자격)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 (지원내용)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
농업인부채상환인센티브	농업인	• (지원자격) 부채대책 정책자금을 정상 또는 조기 상환한 농업인 • (지원내용) 이차액의 일부(40%)를 환급
농지연금	만65세 이상 농업인 (22.2월 이후 60세이상으로 변경 예정)	• (지원자격)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만60세 이상 가입 가능('22.2 예정) • (지원내용) 담보농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월지급금 지급

(2) 축산

☐ 가축사육/말산업

-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참여 희망 농가

☐ 축산환경개선

- 축산악취개선: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대상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대상

☐ 가축방역, 위생지원

-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지자체, 개인 또는 단체 사업자
- 살처분보상금: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 조사료지원

- 조사료 생산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조사료 유통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조사료 생산·가공 및 운영(융자):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표 3-60. 축산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분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내용
시설/장비 지원			
1. 축사시설	축사시설현대화(민간)	농협경제지주	• (지원자격)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2. 축사부대시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민간)	컨설팅트	• (지원자격) 축산관련 경력 및 자격을 갖추어 전담기관 (농정원)에서 농가에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컨설팅트 • (지원내용) 농가에 컨설팅 제공 후 컨설팅 비용을 지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축산 ICT를 조성 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원자격)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 • (지원내용) 지역내 산재된 축사시설의 이전조성 비용 지원
가축사육/말산업			
1. 소, 낙농, 돼지	한우젓소 개량지원(민간)	농협경제지주	• (지원자격)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한우젓소 개량지원(민간자본)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검정기관	• (지원자격)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 • (지원내용) 젓소개량과 관련하여 유성분 분석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유성분분석기에 대한 취득비용 보조 지원
	한우젓소 개량경상지원(자치단체)	지자체	• (지원자격) 지자체 • (지원내용)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역단위의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한우젓소 개량자본지원(자치단체)	지자체	• (지원자격) 지자체 • (지원내용)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역단위의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소 사육방식 개선	농협경제지주	• (지원자격)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소 단기사육 방식 정립을 위한 실증시험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지원자격)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지원내용)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직전 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원 차등지원
	종축등록 사업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자격)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내용) 우량 가축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체형형질 심사, 종축능력평가대회, 토종가축인정업무 지원
축산환경개선			
1. 환경개선	축산악취 개선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자격)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악취측정	축산농가, 생산자	• (지원자격)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참여 하거나 축산

	ICT기계 장비	단체, 농업법인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
2. 분 노 자 원화	공동자원 화 시 설 (신규)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등	• (지원자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 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 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 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에 한함) • (지원내용)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 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공동 자원 화시설 (개보수)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등	• (지원자격)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자원화시설 (가축분뇨100%활용) • (지원내용) 준공이후 일정기간 경과된 시설의 증축개보수 지원
	공동 자원 화 시 설 (마을형 퇴비저장 시설)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등	• (지원자격)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 전문조직 (농·축협 등),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퇴비저장시설(송풍)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친환경퇴 비생산시 설 현대 화지원사 업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민간(개인) 업체 등	• (지원자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 상 공급하고 '19.1.1. 부터 '22년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 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지원내용)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및 제품 생산·관리장비 비용
3. 퇴 액 비 활용	퇴액비살 포비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등	• (지원자격)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시장·군수·구청장 지정) • (지원내용) 일정 조건을 갖춘 유통전문조직의 퇴액비살포비 일부지원
	자연순환 농업활성 화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등	• (지원자격)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 (지원내용)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를 대상으로 퇴액 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가공,유통,수급,소비			
1. 축 산 물 품 질 관리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2. 축 산 물 위 생 안전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3. 축 산 물 유통, 수 급 관리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4. 축 산 물 소 비 촉진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가축방역, 위생지원			
1. 방 역 대 응	방역인프 라 설치 지원사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를 받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 (앞으	• (지원자격)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농장을 임대하여 운 영하는 농가도 포함) • (지원내용)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일부 지원

		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동물약품 개발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3. 가축 살처분·사체 처리	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단체 사업자	• (지원자격)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신·증축 등 비용의 40% 이상 자부담 가능하고 건물 및 주변 환경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본(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살처분가축처리 또는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실적이 있거나 관련 연구실적 또는 특허가 있는 자 • (지원내용) 시설·장비 제작·구입 비용 일부 지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방자치단체	• (지원자격) 가축매몰지 소재 지자체 * 발굴·소멸 업체 : 최근 5년 동안 매몰지 발굴·소멸 실적이 있거나 연구 실적이 있으며,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보유·운영하는 업체 • (지원내용)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비용 일부 지원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지원자격)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폐기)을 실시한 농가 • (지원내용)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및 기립불능우 폐기 보상금 지원
4. 가축 백신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조사료지원안내(통합)			
조사료 지원	① 조사료 생산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자격) - 농업인 :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품질등급제, 생산·유통 구축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 (지원내용) 일반·전문단지에서 국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는 자에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등 지원,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② 시설 및 기계 장비 구입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	• (지원자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 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TMR 가공시설·유통센터 신규·보완 지원 및 조사료 재배, 사일리지 제조 등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하려는 자	
③ 조사 료 유통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자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 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생산·유통구축비 지원 및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④ 조사 료 생산· 가공 및 운영 (용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자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 영리법인 등 • (지원내용) TMR 가공시설 운영비 및 조사료 재배, 사일리지 제조 등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방목·생태 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자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내용)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에 필요한 초지조성, 경영지원 등을 지원

(3) 농생명산업

□ 스마트농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 동물복지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된 자

표 3-61. 농생명산업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분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내용
스마트농업			
1. 스마트팜시설장비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2. 스마트팜실증보급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 (지원자격)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지원내용)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혁신밸리 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등	• (지원자격)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전남고흥, 경북 상주) • (지원내용) 혁신밸리 내 여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혁신밸리 집적화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동물복지			
1. 농장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 및 기인증 경영체	•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된 자 • (지원내용)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의 일부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1. 농산업수출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2. 국제개발지원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4) 탄소중립/기후변화

☐ 친환경농업

- 유기농업자재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저탄소농축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농업경영체
-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경영체

☐ 저탄소인증지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업경영체

표 3-62.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업명 및 지원내역

분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내용
친환경농업			
1.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로서 지원 대상 필지의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등 • (지원내용)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 구입비,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2.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에너지 전환			
1. 재생에너지			개별 축산농가와 관련 없음.
저탄소농축산			
1. 탄소 절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 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 중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감축사업 등록, 모니터링·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지원 및 감축량 인증 결과에 따른 감축 인센티브 지급• (1만원/1톤CO2)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학, 연구원, 농업법인 등	• (지원자격) 대학 및 국공립·민간연구소, 농업경영체 (법인 등) • (지원내용) 농가 교육 및 농가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감축모델 개발을 위한 지원, 저탄소 논물관리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저탄소 인증지원			
1. 저탄소 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친환경·GAP 인증을 받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가경영체	• (지원자격)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및 인증심사 등 지원
기후변화 대응(해당내용없음)			

제 3절 한우 산업 관련 법률 검토

- 앞 소절에서 축산 관련 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리하면, 농업인(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축산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등록한 자) 등으로 정리됨.
- 이에 이 절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소관 부서에 따라 정리하였음.

1.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상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관련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시행령을 보면, 축산업의 범위에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이 해당됨.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시행령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전업농업인**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의미함.
 - － 시행규칙 제2조에 전업농업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함.
 - － 농업경영체란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
 - －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함.
 - － 시행령을 보면,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함.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②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③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④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관련 고시 참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6. 2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꽃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염전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염전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 12. 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 3. 24., 2015. 12. 23.>

1.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호, 2019. 2. 8., 일부개정]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 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2) 축산법

○ 축산농가에 대한 정의

- 법률상 축산농가에 대한 정의가 명시적으로 내려져 있지는 않음.
- 즉, 축산농가는 따로 정의되지 않고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이 포함되므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

- ‘가축 사육업(축산법 제2조 4)’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가축 사육 주체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축산법 제22조 1항)’로 표현되어 있음.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축산업에는 아래의 범주가 포함됨.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8. 2. 29.,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20. 3. 24.>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죽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3) 농지법

○ 농업인에 대한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농업인 정의와 유사함.
- 시행령에 농지와 가축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환경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의 생산자단체 정의와 유사함.
- 다만, 동법 제2조 10호 라목에 보면 ‘축산업자’라는 명칭이 나오나 이에 대한 정의는 명시적으로 내려지 있지 않음. “축산법” 상 축산업의 범위에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장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지표 설정과 유형화

제 1절 한우 농가 유형 설정을 위한 지표 검토

1. 맞춤형 정책 처방을 위한 지표 도출

- 앞 3장에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통계자료, 정책자료, 법률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통계/정책/법률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논란과 혼란이 따르고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통계작성과 정책과 법률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정책 처방을 하고자 할 경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사육 농가의 유형이 구별되어야 함.
-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우 사육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 무엇이 적절한지 유형 구분을 위한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정책의 목적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용지표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음.
- 가용 지표
 - ① 법인 여부

- ② 사육 규모
- ③ 경영주 연령
- ④ 사육 방식
- ⑤ 농가 소득

표 4-1. 한우 산업 통계·정책·법률 비교 검토

통계	정책	법률	비고
·종사일에 따라 전업/겸업 구분 ·수입에 따라 주업/부업 구분 ·영농형태별로 축산농가 구분 ·농업 법인 구분	·정책 목적에 따라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축산농업인, 농업경영체, 전업농/준전업농, 일반농/영세농,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구분 등으로 구분 ·지원대상이 개인 농가가 아닌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협회,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구분	·농업(축산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통계와 정책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사용용어가 상이하며 정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계상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 ·법률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정책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자세한 정의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농가 유형 구분에 관한 내용은 정책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의되어야 함.

2. 한우 사육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검토

(1) 법인 여부

□ 현황

- (축평원 이력제 자료) 규모별 법인 농장수와 사육두수는 표 4-2와 같음.
 - 2021년 12월 기준 전체 이력제상 법인으로 등록⁸⁾된 농장수는 총 820개 (전체 농가의 0.9%)로, 20두 미만이 107개(13.0%), 20~49두 103개(12.6%), 50~99두 130개(15.9%), 100두 이상이 480개(58.5%)로 100두 이상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육두수를 보면 법인이 사육두수는 한우 전체 사육두수는 163,208두(전체 두수의 4.8%)로, 20두 미만이 822두(0.5%), 20~49두 3,423두(2.1%), 50~99두 9,585두(5.9%), 100두 이상이 149,378두(91.5%)로 100두 이상 규모에서 거의 대부분 사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법인통계 자료) 통계청 법인 통계상(개인사업자는 빠져 있음) 한우를 사육하는 법인은 2020년 기준 모두 280개로 영농조합법인이 215개(76.8%), 농업회사법인이 65개(23.2%)으로, 이력제 자료상 820개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법인통계상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사육두수는 490두이고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사육두수는 636두로 나타남(2020년 기준). 이력제 자료와 유사하게 법인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8) 실체는 법인이지만 이력제상 대표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된 경우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실제 법인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표 4-2. 한우 사육 사육규모별 비중

전체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농장수	45,950	23,100	12,776	7,998	89,824
비중	51.2%	25.7%	14.2%	8.9%	100.0%
사육두수	360,966	745,564	891,884	1,416,918	3,415,332
비중	10.6%	21.8%	26.1%	41.5%	100.0%
법인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농장수	107	103	130	480	820
비중	13.0%	12.6%	15.9%	58.5%	100.0%
사육두수	822	3,423	9,585	149,378	163,208
비중	0.5%	2.1%	5.9%	91.5%	100.0%
개인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농장수	45,843	22,997	12,646	7,518	89,004
비중	51.5%	25.8%	14.2%	8.4%	100.0%
사육두수	360,144	742,141	882,299	1,267,540	3,252,124
비중	11.1%	22.8%	27.1%	39.0%	10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제(2021년 12월 1일 기준)

□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로 법인 여부 반영 필요성

-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도 포함)의 경우 전세 목적으로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이들 법인을 일반 개인농가와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력제 자료를 기준(21년 12월 기준, 820개 법인)으로 보면, 법인에서 사육하는 한우의 91.5%가 100두 이상 규모에서 사육되고 있어 대부분이 규모화된 농장임을 알 수 있음.
- 통계청 자료상 법인의 평균 사육두수가 400두보다 커 대부분이 규모화된 농장임.
- 농가와 법인으로 분류할 경우, 일반 농가와 법인에 각각 맞는 정책을 각각 발굴하고 매칭시켜 정책적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력제 자료상 법인에는 상당수 개인사업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큼. 이들 농가와 사육두수에 대해 엄격하게 모두 법인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정책 성격에 따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대안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도 방법임. 또는,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소규모 농가와 다르게 정책에 매칭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표 4-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개 인 사 업 자	- 사업자 등록이 쉬움 - 자본금 / 등기 / 이사회 / 감사 등의 절차가 필요없음 - 수익에 대해서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법인 전환이 가능함	- 개인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 - 대표자 변경시 폐업 처리를 해야함. - 소득세율이 법인보다 높음 (일정금액 이상) - 외부의 인지도 낮음 (투자 받기 어려움) -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안 될 경우가 많음.
법 인 사 업 자	-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음 (개인사업자 대비) -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음(최대25%) - 유한 책임 (주식 양도 가능) - 급여, 복리후생, 주주구성(가족), 배당금, 퇴직금 등 수익실현 - 법인 전환으로 영업권 산정 가능 (비용처리, 월급 외 수익)	- 법인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통장의 자금을 함부로 못 씀 - 의사결정이 복잡함(이사회, 감사 등) - 정확한 회계 처리가 필요함(증빙처리) -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필요

표 4-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개 인 사 업 자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1,940만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2,540만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만원
법 인 사 업 자	2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3,000억원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2,000만원

자료: <https://hotcoca.tistory.com/92> (2022년 8월 1일 다운로드)

표 4-5.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적 근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설립 요건	-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참여 - 결원 시 1년 이내 충원 (미충원시 해산사유)	- 농업인 10% 이상 - 비농업인 총 출자액 90/100 초과 할 수 없음
설립 요건 (출자)	-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준 조합원 자격 출자(의결권X)	- 발기인 : 농업인 1인 이상(주식회사) - 비농업인출자 : 자본금 90% 이내 (의결권O)
사업의 형태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그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경영,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등 농작업 대행 - 영농에 필요한 자재생산, 공급, 종자 생산 및 배영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
조세 부담	- 농업소득 배당 시 소득세 면제 및 기타소득의 조합원 1,200만원 감면 적용 및 배당 시 기타소득 조합원별 1,200만원 면제 및 초과소득 5% 분리과세	-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 감면만 적용 - 배당 시 배당소득에 감면 규정 없음

표 4-6.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제혜택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세제혜택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법인세 면제 2. 기타작물재배업소득 - 조합원당 연 6억원까지 법인세 면제 3. 감면 대상 농업소득 -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4.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5. 농업인의 농지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이월과세 6. 법인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면제	1.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최대 1억, 5개년동안 최대 2년(조세특례제한법 66조 4항 68조 제2항) 2. 법인세 면제 및 감면 3. 취득세 감면 - 75% 감면:법인설립등기일(2년이내) 단, 청년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 부동산까지 가능 - 50% 감면: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4. 재산세 감면 - 50% 감면(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5.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자료: <https://blog.naver.com/bantax/222831475034> (2022년 8월 1일 다운로드)

(2) 사육규모

□ 현황

- 현재 통계청 이력제의 사육 규모별 공표 기준은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임.
- 2021년 12월 기준, 한우 사육 농장수와 사육두수 비중은 아래와 같음.

표 4-7. 한우 사육 사육규모별 비중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농장수	45,950	23,100	12,776	7,998	89,824
비중	51.2%	25.7%	14.2%	8.9%	100.0%
사육두수	360,966	745,564	891,884	1,416,918	3,415,332
비중	10.6%	21.8%	26.1%	41.5%	100.0%

주: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제(2021년 12월 1일 기준)

□ ‘두수환산 표준 사육규모(Transformed Size of Breeding: TSB)’ 지표화에 대한 검토

- 사육규모에 따른 농가 유형 구분의 한계점
 - 통계청 통계 기준 사육규모를 4가지(20두 미만, 20-50두 미만, 50-100두 미만, 100두 이상)로 분류하여 통계치(농장수, 사육두수 등)를 발표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우 사육 농가가 한우 사육 외에 타 축종 혹은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단순 사육두수만을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할 경우, 농가 소득 추계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두수환산 표준 사육규모’ 지표화 방식
 - 표준 사육규모 = 사육두수 + 사육두수 외 지표들(경지면적, 축사면적, 농업고정자산)의 사육두수 환산
 - 사육두수 외 지표들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그 해의 성우가격으로 나누어서 사육두수로 환산하고 이를 사육두수에 합하여 표준 사육규모를 계산함.

○ ‘두수환산 표준 사육규모’ 지표의 장단점 검토

- 장점: 농가와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가 소득이 작은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이라면, 표준 사육규모와 같은 지수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합함. 하지만, 축산 정책의 대부분이 축산/한우 산업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 지표의 활용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임.
- 단점: 정책의 대상이 한우 산업에 국한된 경우라면⁹⁾, ‘표준 사육규모’ 보다는 단순히 한우 ‘사육두수’만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표준 사육규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모든 정보들(경지면적, 축사면적, 농업고정자산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음. 지표 계산 방식의 복잡성으로 정책 대상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사육규모를 근거로 한 한우 전업농 관련 현재 기준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시행지침에 전업농 기준 제시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축산업허가제’ 도입 과정에서의 전업규모 구분

9) 축산업(한우)의 정책목표는 소득안정, 수급안정, 경쟁력 제고 등에 있으므로 사육두수를 지표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과 적용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고 간편함.

표 4-8. 축산업허가제 도입 과정에서의 전업규모 구분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일	'14.2.23일	'15.2.23일	'16.2.23일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과	50㎡초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년 2월 23일자.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의 대규모, 영세농 기준
 - － 선정우선순위 1순위: 영세농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 선정우선순위 8순위: 대규모농 미만
 - 대규모농: 소 150마리, 돼지 3천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5,00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근거로 한 한우 전업농 기준 검토

- 전업농 선정 기준의 근거
 - － 도농간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전업농 선정
- 전업농 기준 상향시 관련 법규 수정 검토 필요
 - － 예를 들어, 한우 전업농의 사육규모를 10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우농가 비과세 사육 규모: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소 50마리

소득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20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 소 소	50마리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한우 전업농 규모 추정을 위한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 비교

- 2000년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의 연간 실질소득(2021년 기준)은 36,526천원이고 2005년은 44,219천원이었음. 이를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 규모와 비교하면, 50~100두 사육규모의 한우사육추계소득에 해당함. 농가가 한우 외에 타작목으로부터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은 표에 제시된 한우사육추계소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한우 사육 전업규모를 대략 50두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음.
- (최근 상황) 2020년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의 연간 실질소득(2021년 기준)은 62,255천원이고 2021년은 62,702천원이었음. 이는 한우

사육규모 100~149두 사육규모에 근접함. 이를 근거로 볼 때, 한우 사육 전업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표 4-9. 도시 가구 연간 소득(2021년 기준)

연도	명목소득(연간, 천원)			GDP디플레이터		실질소득(연간, 천원)		
	전체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2015 =100	2021 =100	전체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2000	28,922	27,213	24,360	72.119	66.692	43,366	40,803	36,526
2005	39,178	37,783	33,894	82.887	76.650	51,113	49,293	44,219
2010	48,407	46,929	42,210	92.710	85.734	56,462	54,738	49,234
2015	58,039	56,103	50,064	100.000	92.475	62,762	60,669	54,138
2020	72,362	71,142	60,738	105.502	97.563	74,169	72,919	62,255
2021	74,507	73,345	62,702	108.137	100.000	74,507	73,345	62,702

주: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해 2021년 연간 실질소득으로 환산함.

표 4-10. 한우 사육농가 추계소득(2021년 기준)

사육규모(두)	구분			한우사육추계소득(연간, 천원)
	송아지판매두수(두)	큰소판매두수(두)	합계(두)	
1-9	1.8	1.2	2.9	4,248
10-19	3.7	4.9	8.6	12,200
20-29	4.3	7.8	12.1	17,178
30-39	5.3	5.7	11.0	15,596
40-49	7.0	8.6	15.6	22,125
50-59	8.7	12.9	21.7	30,650
60-69	8.2	12.7	20.9	29,660
70-79	10.8	16.0	26.7	38,028
80-89	9.8	17.9	27.8	39,326
90-99	8.9	18.9	27.7	39,482
100-149	12.8	28.3	41.1	58,376
150-199	16.0	34.5	50.5	71,723
200-249	13.0	46.9	59.9	85,163
250-299	9.7	61.3	71.0	101,030
300두 이상	26.0	112.5	138.5	196,973

주: 한우협회의 “2021년 전국한우협회 패널 농가 경영실태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추계소득을 위해 송아지 판매두수에는 번식우 두당 소득(1,410천원)을 큰소에는 비육우 두당 소득(1,425천원)을 곱하여 계산함. 두당 소득 자료는 축산물생산비통계(2021)의 자료를 이용함.

(3) 경영주 연령

□ 현황

- 현재 통계청 이력제 상 전체 농장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농장(이 중 일부는 법인)의 규모별 농장수와 사육두수는 아래와 같음.
- 개인의 연령대는 만 나이로 모두 4개 구간(50세 미만,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이를 규모별(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로도 세분화하였음.
- 2021년 12월 기준, 한우 사육 농장수와 사육두수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
-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60~69세 구간이 농장수 비중으로 38.1%로 가장 많고 사육두수 비중도 같은 구간대가 39.4%로 가장 많음.
- 60세 이상 구간의 농장수와 사육두수 비중이 각각 64.4%, 53.8%로, 향후 한우 사육에 있어서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표 4-11. 개인 한우 사육 연령대별/사육규모별 비중

	연령대				
	50세 미만 (~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계
농장수	12,204	19,473	33,890	23,437	89,004
비중	13.7%	21.9%	38.1%	26.3%	100.0%
사육두수	631,041	871,387	1,280,101	469,595	3,252,124
비중	19.4%	26.8%	39.4%	14.4%	10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제(2021년 12월 1일 기준)

주: 이 수치에서 개인으로 분류된 농장은 이력제 등록상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을 뺀 것으로 일부 실제 법인이 포함된 수치임.

- 연령대별 사육 현황을 사육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의 비율이 늘고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20두 미만 농장수는 36.9%이지만, 7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71.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농가의 연령과 규모화는 정반대의 연관성을 맺고 있음.

표 4-12. 개인 한우 사육 연령대별/사육규모별 비중

구분		20두미만	20-49두	50-99두	100두이상	합계
모든 연령	농장수	45,843	22,997	12,646	7,518	89,004
	비중	51.5%	25.8%	14.2%	8.4%	100.0%
	사육두수	360,144	742,141	882,299	1,267,540	3,252,124
	비중	11.1%	22.8%	27.1%	39.0%	100.0%
~49세 (50세 미만)	농장수	4,499	3,479	2,495	1,731	12,204
	비중	36.9%	28.5%	20.4%	14.2%	100.0%
	사육두수	38,319	114,721	175,796	302,205	631,041
	비중	6.1%	18.2%	27.9%	47.9%	100.0%
50~59 세	농장수	8,380	5,331	3,538	2,224	19,473
	비중	43.0%	27.4%	18.2%	11.4%	100.0%
	사육두수	70,721	173,409	249,001	378,256	871,387
	비중	8.1%	19.9%	28.6%	43.4%	100.0%
60~69 세	농장수	16,217	9,738	5,028	2,907	33,890
	비중	47.9%	28.7%	14.8%	8.6%	100.0%
	사육두수	137,673	314,451	349,131	478,846	1,280,101
	비중	10.8%	24.6%	27.3%	37.4%	100.0%
70세 이상	농장수	16,747	4,449	1,585	656	23,437
	비중	71.5%	19.0%	6.8%	2.8%	100.0%
	사육두수	113,431	139,560	108,371	108,233	469,595
	비중	24.2%	29.7%	23.1%	23.0%	10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제(2021년 12월 1일 기준)

(4) 사육 방식

□ 현황

- 현재 통계청 이력제 상 사육 방식을 번식, 비육, 일관사육농장으로 구분할 경우, 각 사육 방식에 해당하는 농장수와 사육두수는 아래와 같음.
 - 번식농장: 농장수 비중은 47.3%, 사육두수 비중은 21.5%
 - 일관사육농장: 농장수 비중은 43.7%, 사육두수 비중은 68.8%
 - 비육농장: 농장수 비중은 9.1%, 사육두수 비중은 9.6%

- 농장수를 기준으로 보면, 번식농장과 일관사육농장이 47.3%와 43.7%로 한우 사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관사육 농장이 68.8% 한우 사육두수의 약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앞의 표에서 보았듯이, 일관사육농장의 대부분이 번식 쪽에 가까운 사육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나 비육 쪽에 가까운 사육방식을 보여주는 농장도 소수 있음.

표 4-13. 한우 사육 방식별 비중

	연령대			
	비육농장	번식농장	일관사육농장	합계
농장수	8,130	42,455	39,239	89,824
비중	9.1%	47.3%	43.7%	100.0%
사육두수	329,376	734,800	2,351,156	3,415,332
비중	9.6%	21.5%	68.8%	10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이력제(2021년 12월 1일 기준)

(5) 농가 소득

□ 현황

- (한우협회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 20두 미만 사육규모의 농가들의 추정 소득은 연평균 1092만원,
 - 20-49두 사육규모의 농가들의 추정소득은 연평균 1,887만원,
 - 50-99두 사육규모의 농가들의 추정소득은 연평균 3,463만원,
 - 100두 이상 사육규모의 농가들의 추정소득은 연평균 8,585만원임.

표 4-14. 사육규모별 판매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추계소득

		사육규모							
		20두미만		20-49		50-99		100두이상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판매 두수	사육두수 대비 판매두수 비중
구 분	송아지	3.6	26.0%	5.8	16.4%	9.2	13.4%	15.0	9.1%
	큰소	4.1	28.1%	7.5	21.1%	15.2	21.5%	45.4	23.0%
	계	7.7	54.0%	13.3	37.5%	24.4	34.9%	60.5	32.2%
	추계 소득 (천원)	10,919	-	18,866	-	34,632	-	85,845	-

주: 추계소득을 위해 송아지 판매두수에는 번식우 두당 소득(1,410천원)을 큰소에는 비육우 두당 소득(1,425천원)을 곱하여 계산함. 두당 소득 자료는 축산물생산비통계(2021)의 자료를 이용함.

□ 소득을 유형 구분 지표로 활용시 검토 내용

- 정책의 목적이 농가 소득을 기초로 설계된 경우
 - 한우 사육 농가가 타 가축을 사육하거나 혹은 경지를 이용하여 타작목을 재배하거나, 혹은 기타 농외소득을 얻을 경우, 단순 사육두수만을 기준으로 농가 유형을 구분한다면 농가 소득 추계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농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 자료에 대한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떨어짐.
- 정책의 목적이 한우 산업에 국한시
 - 반면, 정책의 목적이 농가 소득이 아니라, 축산/한우 분야의 특정한 목적을 기초로 설계되었다면 농가 소득보다는 한우 판매 소득이 더욱 중요한 기초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 지표로서 한우 소득 추계의 어려움
 - 소득지표의 경우 매출(조수입)과 달리 경영비(생산비)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 변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가 필수적임(특히, 경영비와 생산비).

- 한우협회 자료와 한우자조금컨설팅 자료의 비교를 통해 보았듯이, 양 자료 간에 사육규모에 따른 농가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소득 변수보다는 경영비(생산비) 항목에 대한 염려가 없는 조수입(혹은 매출액) 변수가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함.
- 조수입(매출액)의 경우, 매해 시장가격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면 이를 결정짓는 실물변수인 사육두수가 합리적인 대체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
- 이는 이미 두 번째 가용지표인 ‘사육규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지표는 대체변수로 ‘사육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 2절 한우 농가 유형화

1.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고려 사항

□ 한우산업 정책과 매칭 가능성 고려

- 한우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선택 및 구간값 설정 이전에 유형 구분의 목적이 한우 산업 정책과 매칭되도록 유형 구분의 목적이 명확해야 함.
 - － 맞춤형 한우 정책 제언을 위한 것이라면, 각 유형별로 나누어 어느 정책에 매칭시킬 것인지를 염두하고서 지표를 설정하고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우 농가 유형 구분시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활용의 편리성 고려

- 앞서 제시한 5가지 지표의 모든 경우수를 고려하면 $2^5 = 32$ 가지 유형이 나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불가함.
 - － 최대한 유형을 간소화하고 지표를 단순히 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유형으로 구분함.
- 앞서, 제시된 논거를 토대로 소득을 제외한 법인여부, 사육규모, 연령, 사육방식 등 4가지를 지표로 사용하되, 정책의 성격에 따라 그 대상을 최소한의 유형으로 구분함.

2. 농가 유형 구분 관련 실무자 지문회의 결과 요약

□ 농가 유형 구분과 관련된 지문회의 결과 요약

- 농가 유형 구분의 목적이 특정 유형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유형별 농가의 장점을 살려 정책 목적 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함.

-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 목적과 사업대상자가 뚜렷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 대상자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정책 집행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꼭 사업대상자의 수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상자의 유형구분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여 매칭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 국비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할 때, 농업경영체와 같은 조건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축산물 허가가 되어있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 정부 정책 대상을 크게 구분하면,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등의 측면으로 구분 가능함. 대체로 한우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등 환경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개인 농가와 달리 규모가 법인과 같은 큰 사육 주체의 경우, 개인 농가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송아지 번식우단지, 공동 환경처리시설 등)을 매칭시키면 정책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법인 분류에 있어서 일반 법인, 축협, 기업 등 분류를 더 세분화 했으면 함.
- 현재 ICT 장비지원과 같은 사업에서는 법인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축협과 같은 법인체에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보조사업들을 위해서 부가적인 사업들에서도 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전업농 기준인 50두를 조금 더 상향조정하여 전업농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조사료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규모농가들은 중·대규모 농가에 비해 시장가격 등과 같은 외부 환경 변

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영 안정과 관련된 정책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중,대규모의 농가들은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정책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소규모 번식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 전반적으로 한우 산업의 번식 기반 안정과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위해 소규모 번식 농가를 위해 경영안정대책(송아지생산안정제 등) 마련, 우수 송아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세 장려금 지원과 같은 매칭 노력이 필요함.
- 송아지 가격에 따라 농가들이 번식과 비육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송아지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에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지방비로 소규모 농가들의 시설 개선까지 지원해줄 수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규모 농가들이 시설 개선과 같은 사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리융자나 이차보전이 아니라 직접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
- 소규모 농가들 중 대다수가 고령이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경우가 있음. 이들 농가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3. 한우 농가 유형 구분

(1) 개인과 법인의 구분

- 먼저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분류함.
- 법인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수는 820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0.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63,208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8%)임.
-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할 필요가 있음.

(2) 사육 규모

- 개인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전업농’과 ‘비전업농’으로 분류함.
 - 전업농의 규모를 현행 50두에서 몇 두로 상향조정해야 될 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통계청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통계)에는 전업농가를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규정하고 있음. 즉, 농가소득원으로 농업 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작은 농가를 전업농가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6조에서 전업농업인이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의 기준을 내리고자 함.
 -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구 근로소득과 소득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업농의 기준을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는 7,998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8.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41만7천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1.5%)임.

- 사육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작은 규모의 농가에 비해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수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경영안정화 여력 등이 서로 다름. 따라서,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각 그룹에 맞는 정책을 달리해가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3) 경영주 연령

- 농가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선행연구들은 65세와 70세로 다름) ‘고령농’에 대한 정의를 내림.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와 물리적 신체적 건강정도로 보아 70세 정도로 고령농의 기준을 삼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70세 이상 연령의 경영주가 소유한 농장은 23,437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26.1%)이고, 한우 마리수는 47만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13.7%)임.
- 농가의 연령은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각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각 항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매칭시킬 필요가 있음.

(4) 사육 방식

- 사육방식에 따라 ‘번식 농가’, ‘비육 농가’, ‘일관사육 농가’로 나눔.
 -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
 - 통일된 지표가 마련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번식 농장수는 42,455개(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전체 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전체 농장의 43.7%)이었음.

- 사육두수(2021년)를 기준으로 보면, 번식농장은 734,800두(전체 사육두수의 21.5%), 비육농장 329,376두(9.6%), 일관사육 농장 2,351,156두(68.8%)임.
-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함.

(5) 노동 의존 방식

- 한우 사육농가들 중 “농장운동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의 주 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 ‘가족전업농’으로 규정하고, 일부 외부에 노동력을 의존하는 ‘일반농’으로 나눌 수 있음.
-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는 7,998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8.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41만7천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1.5%)임.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노동력을 가족노동력에만 의존하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상당수 농가가 가족 노동력에 의존할 것이라 추정됨.

표 4-15. 지표 도출과 유형 구분

지표	법인여부	사육규모	경영주연령	사육방식	노동 의존 방식
유형 구분	개인, 법인	전업농, 비전업농	고령농, 청장년농	번식, 비육, 일관사육	가족전업농, 일반농
기준	법인등록여부	100두	70세	p.30 분류기준 참조	100두, 가족노동 의존도

<참고: 전업농 설정 기준 관련 검토>

-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소 100두 이상 규모가 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1명)의 근로소득은 평균 약 6,200만원 수준으로 이와 소득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우 사육두수는 최소 100두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우협회(2021년 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90-110두 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집계됨.

표 4-16. 한우 사육 100두 규모 세부 사육두수 내역

경산우	미경산우	비육우	송아지(암)	비거세우	거세우	송아지(수)	종모우
41.5	8.3	5.7	11.3	0.8	25.2	6.4	2.0

주: 한우협회(2021년 경영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100두 규모(90~110두)의 세부 사육 내역을 분류한 결과임.

- 이를 축산물이력제(축산물품질평가원) 적정사육면적(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 2 제2항 관련 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따라 추정된 면적)에 대입한 결과,
 - 방사식의 적정 사육면적은 $697.5m^2$ 이고,
 - 계류식의 적정사육면적은 $422.5m^2$ 으로 계산됨.
- 위 사육두수 100두 규모를 통계청 축산물생산비통계와 연계하여 건물, 토지, 노동시간에 대한 필요 면적 및 시간을 추계하면,
 - 총 건물면적은 $1,528 m^2$ (축사 1,285, 창고 48, 퇴비사 177, 기타 18)
 - 총 토지면적은 $11,910 m^2$ (초지 2,304, 사료포 2,937, 답리작 4,051, 축사

부지 2,513, 운동장 12, 기타 92)

－ 총 노동시간은 2,275시간(6.2시간/1일)으로 추계됨.

표 4-17. 한우 사육 100두 규모 건물 면적, 토지 면적, 노동 시간 추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통계 (두당 기준)						100두 규모 추계		
번식우 50두이상규모 (두당)			비육우 100두이상 규모 (두당)			번식우 (50.4두 기준)	비육우 (33.7두 기준)	전업농 (50.4두+ 33.7두)
건물 (m^2)	축사	17.13	건물	축사	12.51	863	422	1,285
	창고	0.7		창고	0.37	35	12	48
	퇴비사	2.5		퇴비사	1.5	126	51	177
	기타	0.32		기타	0.07	16	2	18
	계	20.65		계	14.45	1,041	487	1,528
토지 (m^2)	초지	45.72	토지	초지		2,304	—	2,304
	사료포	54.14		사료포	6.19	2,729	209	2,937
	답리작	69.03		답리작	16.98	3,479	572	4,051
	축사부 지	33.17		축사부 지	24.97	1,672	841	2,513
	운동장	0.24		운동장		12	—	12
	기타	0.89		기타	1.4	45	47	92
	계	203.19		계	49.54	10,241	1,669	11,910
노동 (시간)	자가	24.54	노동	자가	18.49	1,237	623	1,860
	고용	2.77		고용	8.18	140	276	415
	계	27.31		계	26.67	1,376	899	2,275

주: 성우환산기준은 통계청의 기준을 따라, 경산우 1.0, 초임우 0.88, 육성우 0.67, 송아지 0.30를 가정함.

제 3절 한우농가 유형구분에 대한 제언

1.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사례(현행)

□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 사례

- 농식품사업안내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정책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그에 맞는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의 선택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대다수 정책이 농가유형을 특별하게 구분 짓기 보다는 큰 범주에서 가급적 대상 범위를 넓게 포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농가유형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 많음.

표 4-18. 농식품사업 안내서 분류 세부기준

정책		사업대상자
농업일반	공익형 기본형/선택형 직불	○ 농지면적, 소득, 거주기간 등에 따른 대상자 구분
	농지연금	○ 연령, 영농경력에 따른 대상자 구분
축산	송아지생산안정제	○ 암소 사육농가(번식, 일관사육)
	축산분야HCT융복합지원 (민간)	○ 축산업허가/등록여부에 따른 대상자 구분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	○ 지자체
	퇴·액비살포비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

주: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2022)에서 추출

2. 한우 산업 정책 방향 검토

□ 본 연구의 한우 농가 유형 구분의 목적

- 본 연구에서 한우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한우 농가를 정책대상에서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님. 각 농가 유형별 장단점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처방하고자 하는 것임.
- 유형별 농가의 장점과 필요를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미래 한우 산업 정책 방향 검토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 경영, 환경, 수급, 소비, 유통,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이슈, 문제점, 대응방향이 표에 정리되어 있음.
-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사업들에 대한 사업대상자의 분류는 주로 정책 목적에 따라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축산농업인, 농업경영체, 전업농/준전업농, 일반농/영세농, 연령/영농경력에 따른 구분,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협회, 생산자단체, 법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향후, 한우 산업의 분야별 필요 정책에 따라 농가를 적절히 유형별로 구분하고 매칭함.

표 4-19. 미래 한우 산업 정책분야와 대응방향

분야	생산, 경영	환경	생산, 경영, 환경	수급	소비	유통	경쟁력 강화
이슈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 사료가격 불안정	환경친화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	수급불안 상황 반복	육류 소비트렌드 변화	유통·소비체계 개선 및 新시장 확충 필요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소고기 시장 지속 확대
여건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 불안정	○환경·사회안전 기여 등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	○품질제고 위해 사육일수 장기화, 그에 따른 생산비(사료비 등) 동반 상승	○최근 가격호조에 따른 한우 사육과잉 기조 지속	○환경·건강 중시, 윤리소비 등 확산	○식생활 변화, 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육류 유통 및 소비 구조 변화 가속화	○소고기 수입물량 지속 증가, FTA 체결 확대 검토 등 시장개방 기조 지속
문제	○생산비(사료비) 증가에 따라 농가 경영 불안정 상황 지속 우려	○가축분뇨·악취 발생,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개선 시 한우산업 존립 기반 불안정	○「사육장기화 → 사료투입량 증가 → 생산비·환경부하 상승」 -경영 불안정, 환경부하 상승 등 사회적 후생 저하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급락으로 농가 소득하락 및 경영 불안정 상황 지속 우려	○마블링 위주 육류 생산방식 고수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 적시 대응 미흡시 한우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한우와 수입소고기와와의 지속적 경쟁 불가피
대응방향	○등급별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 다양화 -저등급으로 갈수록 사육기간, 사료비 감소 ○배합사료 원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농가 대상 배합사료 구매비용 지원 등 병행 추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가격 안정화	○한우사육 시 탄소저감 방안 마련 -저단백·저탄소 사료 개발 및 사용 의무화(제도화) -사료첨가물 개선, 사육기간 단축, 관련 제도·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경축순환체계 확립 -가축분뇨·악취 적정 처리 및 관리 기반 확충	○사육기간 단축 및 환경부하(탄소저감 등) 저감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타당성 실증 추진(시범사업추진) -농가 이행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농가 대상 인센티브 제공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한우수급조절매뉴얼 마련, 선제적 압소감축 프로그램 운영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한우관측 고도화 및 정보제공 강화, 한우자조금 역할 확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품질·급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건강·품질·가격 등 감안하여 사육기간 축소 등을 통한 대중육 시장 육성 검토 ○일반 한우고기 이외에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인증, HACCP 인증, 방목생태축산농장 인증 제품 등 환경·건강·윤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육류 종류 다양화 및 관련 시장 확대	○단기사육 등급제 검토 ○브랜드 경영체 규모화·광역화 ○한우고기 유통 차별화 -신선유통체계 구축(가공·포장·배송 일원화, D2C·B2B·B2C 플랫폼 구축 등) -1~2인 가구증가 대응 소량·다품목 소포장 및 가정간편식 개발·보급 ○수출시장 확대 -국가간 검역협정 체결 확대 -한우 수출시장 확대	○품질고급화 보완 -등급제 보완 등 -단기사육 시범사업과 연계 ○소비자 신뢰도 제고 -소·축산물 이력제 보완 등 ○한우소비 홍보전략 개선 -단순 소비촉진 >> 안전성, 신선함 등 한우의 소비효용성 구체화

자료: 전상곤 외(2021), 적정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사육구조 구축 등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연구

3.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 검토 및 제언

□ 농가 유형별 정책 매칭의 목표

○ 법인 여부

- 법인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체로 양성
- 개인은 법인에 비해 보다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

○ 사육 규모

- 전업농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전업농(소농)은 경영안정을 통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경영주 연령

- 고령농에 대한 정책을 매칭시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한우 산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고령농에 대한 소득 안정 문제 등을 해결함.

○ 사육 방식

- 번식농(대부분은 소규모 농가)은 번식기반 안정화 방향으로 매칭시키고, 일관사육농가(중대규모)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매칭시키고, 비육농가는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매칭시킴.

○ 노동 의존 방식

- 한우 사육이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가족전업농’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이들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정책을 매칭시켜 한우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함.

□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매칭

- 미래 한우 산업의 정책 분야와 대응 방안 중 농가와 관련된 주요 분야를 뽑아 농가 유형 구분에 따라 매칭한 결과가 표 4-18에 정리되어 있음.

- 농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는 대략 5개 분야(축산업 진입,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후계인력양성, 경영안정, 수급안정)로 요약할 수 있음.

- 축산업 진입: 기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한우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매칭. ex) “축사은행 설립”을 통한 개인농 사육 활성화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소규모 비전업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융자 외에 보조 검토
- 후계인력양성: 한우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 후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매칭
- 경영안정: 한우 산업의 근간인 번식농가와 가족전업농에 대한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을 개발하여 매칭시킴. ex)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 개편
- ☞ 규모화, 전업화 되는 한우 사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축인 ‘가족전업농’의 소득 수준이 안정되어야 함. 통계청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1명)의 근로소득은 평균 약 6,200만원 수준이나,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전업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약 5,500만원 수준으로 도시 가구에 비해 낮음. 한우 산업의 중장기 발전과 도농 소득 균형 차원에서 ‘가족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정대책 개발과 매칭이 필요함.
- ☞ 2인 이상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가족전업농의 사육규모는 100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2인 기준 4,000만원, 3인 기준 6,000만원, 4인 기준 8,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급안정: 과거 한우 수급과동시 피해를 크게 본 그룹은 소규모 번식 개인농이 대부분이어서 공급과잉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경영안정망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매칭함. 동시에 대규모 법인 등의 농장에 대해서도 수급균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표 4-20.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매칭

정책구분	농가 유형 구분				
	법인여부	사육규모	경영주연령	사육방식	노동 의존 방식
	개인, 법인	전업농, 비전업농	고령농, 청장년농	번식, 비육, 일관사육	가족전업농, 일반농
축산업진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개인농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	-	-	-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	소규모 비전업농은 투자의 유인이 적기 때문에 용자 외에 보조 검토	소규모 고령농은 투자의 유인이 적기 때문에 용자 외에 보조 검토	-	-
후계인력양성	-	-	고령농을 중심으로 후계농 양성 정책 매칭	-	-
경영안정	-	-	-	번식농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 강화	가족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정대책 개발
수급안정	개인농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법인농의 사업참여 유도	-	공급과잉 시 고령농의 폐업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 수급안정 과육 유도	-	-

제 5장 요약 및 결론

- 최근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로 한우 사육농가들의 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한우 사육두수의 변동은 한우사육 농가의 사육 유형별 비중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우농가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가용 지표를 활용하여 농가를 구분하고 유형별 장단점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처방하고자 함.
- 기존의 국내 농가 유형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들마다 유형 구분에 대한 방법이 상이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표로는 표준영농규모, 영농규모, 경영주 연령 등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있었음.
- 한우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통계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공공기관 자료로 이력제 자료, 농가경제통계 자료, 농업법인조사 자료, 민간 자료에서 한우협회 경영실태조사 자료, 한우자조금 농가컨설팅 자료를 사용함.
- 이력제 자료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육규모별/사육방식별, 개인/법인별, 연령대별 농장수, 사육두수에 대한 변화를 검토함.
 - －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사육농장수는 111,914개에서 89,824개로 감소함.
 - －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사육두수는 290만4천두에서 341만5천두로 증가함.
 - － 일관사육 농장의 분포로 보았을 때, 2021년에 들어서 번식에 집중하는 사육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법인의 농장수는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665개에서 820개로 증가하였고, 농장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번식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좀 더 크게 증가함.
- 법인의 사육두수는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122,044두에서 163,208두로 증가하였으며, 비육농장 사육마릿수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과거에 비해 일관사육농장의 비율은 줄고,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번식농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는 한우 사육 유무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대동물 금액이 0보다 큰 농가들을 대상으로 전·겸업별, 주·부업별, 및 연령대별, 경지면적별 농가수지에 대해 분석하였음.
-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에 2,864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5,787만 원으로 나타남.
- 전업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에 2,632만 원에서 2020년에 5,483만 원으로 나타남.
- ☞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1명)의 근로소득이 평균 약 6,200만원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대동물 사육농가의 소득 수준이 이보다 못 미치고 있어, 도농 소득 균형을 위한 소득안정대책이 필요함.
- 1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135만 원에서 2020년 6,785만 원으로 증가함. 2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 역시 2003년 3,414만 원에서 2020년 5,719만원으로 나타남.
-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5년, 2014년~2020년 동안에는 1종 겸업농가의 농가소득이 2종 겸업농가보다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남.
- 전문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2003년 3,850만 원,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2020년 7,494만 원으로 나타남.
- 일반농가의 2020년 농가소득은 3,62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업농가의

농가소득의 경우 2020년 5,521만 원으로 일반농가에 비해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남.

-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2001년)와 농업법인조사(2020년)에서 한육우를 1마리 이상 사육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수, 사육두수, 소유현황 등에 대해 검토함.
- － 법인특성별 법인수로 2001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167개(96.5%), 농업회사법인이 6개(3.5%)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215개(76.8%), 농업회사법인이 65개(23.2%)로 과거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 한육우를 1마리 이상 사육하는 법인에 대한 사육두수, 경지면적 등의 소유현황을 2001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과거 2001년에 비해 2020년에 평균 사육두수, 경지면적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농업법인조사(2020년)에서 한육우 사육농가들의 주 사업유형으로는 축산업이 90.7%, 작물재배업이 5.4%, 농축산물유통업이 2.1% 순으로 나타남.
- － 2020년 농업법인조사 자료에서 2019년 기준 한육우를 사육하면서 작물재배업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총 41개(14.6%)로 나타났으며, 그 중 논벼식량작물을 재배하는 17개의 법인들은 전체 수입 중 논벼와 식량작물을 통한 수입이 평균 49.4%로 나타남.
- － 법인특성별 출자자 규모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특성별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에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에 따른 축산 관련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는 농업인(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앞선 통계자료와 법률과 비교했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 따라서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의 성격에 따라 사육 농가의 유형이 구별되어야 함.

- 정책의 목적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용지표는 총 다섯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법인 여부
 - 사육 규모
 - 경영주 연령
 - 사육 방식
 - 농가 소득
- 가용지표로 법인 여부 검토
 - 법인의 경우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개인농가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법인의 경우 대부분이 규모화된 농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 자료상 법인의 평균 사육두수는 400두 이상으로 나타남. 하지만 이력제 자료의 등록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성격에 따라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용지표로 ‘표준 사육규모’ 검토
 - 가용지표로 ‘두수환산 표준 사육규모(Transfomed Size of Breeding: TSB)’ 지표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표준 사육규모 = 사육두수 + 사육두수 외 지표들(경지면적, 축사면적, 농업고정자산)
 - 사육두수 외 지표들을 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그 해의 성우가격으로 나누어서 사육두수로 환산하고 이를 사육두수에 합하여 표준 사육규모를 계산함.
 - 농가와 농가소득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축산/한우 산업에 국한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육두수 외 지표들에 대해 개별 농가들의 정보에 대한 확보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짐.
- 가용지표로 농가 소득 검토

- 농가 소득을 유형 구분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농외소득의 존재 가능성 등 자료 확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가용지표 중 하나인 ‘사육규모’에서 조수입(매출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지표는 대체변수로 ‘사육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제외한 4가지 지표에 따라 정책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는 제외)’
 - ‘전업농’과 ‘비전업농’
 - 경영주 연령 (‘고령농’, ‘후계농’)
 - ‘번식농가’, ‘비육 농가’, ‘일관사육 농가’
 - ‘가족전업농’과 ‘일반농’
- 법인 여부, 사육규모별, 연령대별, 사육방식별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정책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한우 산업 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의 해소와 안정적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정책 분야에 따라 농가 유형을 매칭하면,
 - 축산업 진입: 기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한우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매칭. ex) “축사은행 설립”을 통한 개인농 사육 활성화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소규모 비전업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융자 외에 보조 검토
 - 후계인력양성: 한우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 후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매칭
 - 경영안정: 한우 산업의 근간인 번식농가와 가족전업농에 대한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을 개발하여 매칭시킴. ex)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 개편

- ☞ 규모화, 전업화 되는 한우 사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축인 ‘가족전업농’의 소득 수준이 안정되어야 함. 통계청 도시 가구(2인 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1명)의 근로소득은 평균 약 6,200만원 수준이나,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전업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약 5,500만원 수준으로 도시 가구에 비해 낮음. 한우 산업의 중장기 발전과 도농 소득 균형 차원에서 ‘가족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정대책 개발과 매칭이 필요함.
- ☞ 2인 이상 도씨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가족전업농의 사육규모는 100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2인 기준 4,000만원, 3인 기준 6,000만원, 4인 기준 8,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급안정: 과거 한우 수급과동시 피해를 크게 본 그룹은 소규모 번식 개인농이 대부분이어서 공급과잉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경영안정망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매칭함. 동시에 대규모 법인 등의 농장에 대해서도 수급균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혜정. 2018.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농촌경제』. 29(5). 29-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승용, 김미복, 최지선, 한보현. 2017. “농업경영체 현황 및 농업투자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상, 반경훈, 허정희. 2018. “농업부문 연구개발투자가 농가유형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41(2). 1-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은순. 2003. “농가유형별 생산기술효율 및 환경성과 비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희. 2018. “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농정연구』. 66. 130-154. (사)농정연구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2022).
- 오내원, 박준기, 정원호, 권오상, 강혜정. 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2017. “농업경영체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김명환, 표유리. 2017. “한우 일관사육구조의 진실”. 『시선집중GSnJ』. 231. GS&J.
- 임청룡, 정호중, 임성수, 정원호. 2018. “농가유형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효과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45(3). 567-588.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전상곤. 2020. “한우 사육구조 변화 및 수급영향 분석”.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전상곤, 지인배. 2021. “적정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사육구조 구축 등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전찬익, 이명현. 2020. “농가 및 농업인 정의에 관한 연구-해외사례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훈희, 김태연. 2016. “가족농 유형별 경영전략 차이 분석 - 우수농업경영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43(3). 668-689. 한국축산경영학회.
- 하지희, 김성섭, 김태후, 서상택. 2018. “농업회계 재무지표를 활용한 벼 재배농가 유형구분”. 『농업경영·정책연구』. 45(3). 522-544.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황의식, 이용호. 2008. “전업농 위험관리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집행위원회결정 85/377/EEC, 부속서 III

<부록 1> 이력제 통계

부표 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 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¹⁾	0% 농장만 (비육농장) ²⁾	12,050	10.8	9,313	12.5	1,403	6.5	745	7.5	589	10.0	12	10.8
	0~10%미만	12,086	10.8	9,320	12.5	1,421	6.6	751	7.6	594	10.1	12	10.8
	10~20%미만	146	0.1	84	0.1	30	0.1	16	0.2	16	0.3	1	0.9
	20~30%미만	413	0.4	307	0.4	67	0.3	25	0.3	14	0.2	2	1.8
	30~40%미만	756	0.7	587	0.8	102	0.5	41	0.4	26	0.4	0	0.0
	40~50%미만	716	0.6	382	0.5	207	1.0	66	0.7	61	1.0	2	1.8
	50~60%미만	3,640	3.3	2,788	3.7	501	2.3	217	2.2	134	2.3	4	3.6
	60~70%미만	4,507	4.0	2,947	4.0	890	4.1	391	3.9	279	4.8	8	7.2
	70~80%미만	6,545	5.8	2,902	3.9	1,908	8.8	972	9.8	763	13.0	26	23.4
	80~90%미만	13,333	11.9	5,122	6.9	4,301	19.8	2,395	24.1	1,515	25.8	23	20.7
	90~100%	69,772	62.3	50,005	67.2	12,248	56.5	5,048	50.9	2,471	42.1	33	29.7
	100% 만	56,775	50.7	48,526	65.2	6,493	30.0	1,401	14.1	355	6.0	5	4.5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5,010		3,107		1,420		367		116		2	
	(번식농장) ³⁾	51,765	46.3	45,419	61.0	5,073	23.4	1,034	10.4	239	4.1	3	2.7
	(일관사육농 장) ⁴⁾	48,099	43.0	19,712	26.5	15,199	70.1	8,143	82.1	5,045	85.9	96	86.5
합계		111,914	100.0	74,444	100.0	21,675	100.0	9,922	100.0	5,873	100.0	111	100.0

주 1: 기준 = $\frac{\text{번식우두수}}{\text{가임암소}}$

번식우 = 15개월령 이상 한우 암소(가임암소) - 27개월 이상 암소 중 분만내역이 없는 암소 - 40개월령 이상 한우 경산우 중 최근 2년간 송아지 출생이 없는 암소

2. 비육농장은 기준이 0%이거나 수소만 있는 농장

3. 번식농장은 기준이 100%인 농장에서 15개월령 수소가 1마리라도 있는 농장을 뺀 나머지 농장

4. 일관사육농장 = 전체 농장 - 비육농장 - 번식농장

부표 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 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 수	비 중 (%)	두 수	비 중 (%)	두 수	비 중 (%)	두 수	비 중 (%)	두 수	비 중 (%)	두 수	비 중 (%)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241,749	8.3	34,054	7.2	44,905	6.5	52,611	7.6	110,179	10.5	11,278	12.3
		가임암소두수	7,772	0.6	6,576	2.3	808	0.2	257	0.1	131	0.0	2	0.0
		번식우두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506,434	17.4	249,697	52.6	150,422	21.9	68,563	9.9	37,752	3.6	2,406	2.6
		가임암소두수	270,229	19.5	155,633	54.5	77,130	21.5	28,140	8.8	9,326	2.2	7	0.0
		번식우두수	270,228	22.6	155,633	62.2	77,130	24.6	28,140	10.1	9,325	2.6	7	0.0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2,156,091	74.2	191,004	40.2	491,272	71.6	568,158	82.4	905,657	86.0	78,350	85.1
		가임암소두수	1,107,726	79.9	123,371	43.2	280,113	78.2	291,993	91.1	412,249	97.8	29,294	100.0
		번식우두수	926,043	77.4	94,560	37.8	236,832	75.4	250,267	89.9	344,384	97.4	22,690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2,904,274	100.0	474,755	100.0	686,599	100.0	689,332	100.0	1,053,588	100.0	92,034	100.0	
	가임암소두수	1,385,727	100.0	285,580	100.0	358,051	100.0	320,390	100.0	421,706	100.0	29,303	100.0	
	번식우두수	1,196,271	100.0	250,193	100.0	313,962	100.0	278,407	100.0	353,709	100.0	22,697	100.0	

주: 번식우 = 15개월령 이상 한우 암소(가임암소) - 27개월 이상 암소 중 분만내역이 없는 암소 - 40개월령 이상 한우 경산우 중 최근 2년간 송아지 출생이 없는 암소

부표 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 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8,130	9.1	4,762	10.4	1,475	6.4	928	7.3	965	12.1	34	23.0
	0~10%미만	8,156	9.1	4,770	10.4	1,481	6.4	932	7.3	973	12.2	34	23.0
	10~20%미만	89	0.1	38	0.1	22	0.1	17	0.1	12	0.2	-	-
	20~30%미만	175	0.2	98	0.2	31	0.1	27	0.2	19	0.2	-	-
	30~40%미만	272	0.3	177	0.4	52	0.2	22	0.2	21	0.3	-	-
	40~50%미만	260	0.3	108	0.2	71	0.3	46	0.4	35	0.4	2	1.4
	50~60%미만	1,475	1.6	1,040	2.3	223	1.0	120	0.9	92	1.2	5	3.4
	60~70%미만	2,225	2.5	1,310	2.9	459	2.0	254	2.0	202	2.5	4	2.7
	70~80%미만	3,725	4.1	1,453	3.2	1,140	4.9	601	4.7	531	6.6	14	9.5
	80~90%미만	10,268	11.4	3,496	7.6	3,279	14.2	2,042	16.0	1,451	18.1	22	14.9
	90~100%	63,179	70.3	33,460	72.8	16,342	70.7	8,715	68.2	4,662	58.3	67	45.3
	100% 만	44,986	50.1	32,155	70.0	9,339	40.4	2,805	22.0	687	8.6	6	4.1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11,216		2,559		3,296		2,743		2,618		69	
	(번식농장)	42,455	47.3	30,971	67.4	8,482	36.7	2,432	19.0	570	7.1	4	2.7
	(일관사육농 장)	39,239	43.7	10,217	22.2	13,143	56.9	9,416	73.7	6,463	80.8	110	74.3
합계		89,824	100.0	45,950	100.0	23,100	100.0	12,776	100.0	7,998	100.0	148	100.0

부표 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 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329,376	9.6	23,033	6.4	47,390	6.4	65,203	7.3	193,750	13.7	25,947	22.8
		가임암소두수	3,529	0.2	2,332	1.1	498	0.1	256	0.1	443	0.1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734,800	21.5	226,839	62.8	259,978	34.9	161,584	18.1	86,399	6.1	3,929	3.4
		가임암소두수	386,923	23.7	139,284	65.3	143,110	35.5	77,791	17.6	26,738	4.7	272	0.8
		번식우두수	386,923	26.1	139,284	70.9	143,110	38.5	77,791	19.3	26,738	5.2	272	0.9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2,351,156	68.8	111,094	30.8	438,196	58.8	665,097	74.6	1,136,769	80.2	84,027	73.8
		가임암소두수	1,240,881	76.1	71,610	33.6	259,177	64.3	363,585	82.3	546,509	95.3	35,516	99.2
		번식우두수	1,097,360	73.9	57,302	29.1	228,206	61.5	326,061	80.7	485,791	94.8	31,334	99.1
합계	전체사육두수	3,415,332	100.0	360,966	100.0	745,564	100.0	891,884	100.0	1,416,918	100.0	113,903	100.0	
	가임암소두수	1,631,333	100.0	213,226	100.0	402,785	100.0	441,632	100.0	573,690	100.0	35,788	100.0	
	번식우두수	1,484,283	100.0	196,586	100.0	371,316	100.0	403,852	100.0	512,529	100.0	31,606	100.0	

부표 5.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농장수: 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242	36.4	36	40.0	28	34.1	59	44.4	119	33.1	6	16.2
	0~10%미만	245	36.8	36	40.0	28	34.1	60	45.1	121	33.6	6	16.2
	10~20%미만	3	0.5	-	-	-	-	2	1.5	1	0.3	1	2.7
	20~30%미만	7	1.1	3	3.3	-	-	3	2.3	1	0.3	-	-
	30~40%미만	8	1.2	1	1.1	3	3.7	-	-	4	1.1	-	-
	40~50%미만	12	1.8	2	2.2	2	2.4	1	0.8	7	1.9	1	2.7
	50~60%미만	18	2.7	2	2.2	1	1.2	2	1.5	13	3.6	-	-
	60~70%미만	39	5.9	3	3.3	5	6.1	7	5.3	24	6.7	2	5.4
	70~80%미만	55	8.3	4	4.4	5	6.1	9	6.8	37	10.3	10	27.0
	80~90%미만	90	13.5	5	5.6	11	13.4	16	12.0	58	16.1	8	21.6
	90~100%	188	28.3	34	37.8	27	32.9	33	24.8	94	26.1	9	24.3
	100% 만	92	13.8	33	36.7	13	15.9	17	12.8	29	8.1	2	5.4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211	31.7	15	16.7	24	29.3	31	23.3	141	39.2	22	59.5
	(번식농장)	71	10.7	28	31.1	10	12.2	13	9.8	20	5.6	2	5.4
	(일관사육농 장)	352	52.9	26	28.9	44	53.7	61	45.9	221	61.4	29	78.4
합계		665	100.0	90	100.0	82	100.0	133	100.0	360	100.0	37	100.0

부표 6.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사육두수: 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32,886	26.9	232	35.9	966	33.3	4,490	44.6	27,198	25.1	6,645	16.4
		가임암소두수	97	0.3	18	6.8	2	0.2	-	-	77	0.3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7,405	6.1	173	26.8	354	12.2	974	9.7	5,904	5.4	1,797	4.4
		가임암소두수	1,681	4.8	77	29.1	181	17.7	575	19.0	848	2.8	5	0.0
		번식우두수	1,681	6.1	77	39.7	181	20.7	575	23.8	848	3.6	5	0.1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81,753	67.0	241	37.3	1,581	54.5	4,598	45.7	75,333	69.5	31,968	79.1
		가임암소두수	32,955	94.9	170	64.2	841	82.1	2,445	81.0	29,499	97.0	11,296	100.0
		번식우두수	25,654	93.9	117	60.3	693	79.3	1,837	76.2	23,007	96.4	8,799	99.9
합계		전체사육두수	122,044	100.0	646	100.0	2,901	100.0	10,062	100.0	108,435	100.0	40,410	100.0
		가임암소두수	34,733	100.0	265	100.0	1,024	100.0	3,020	100.0	30,424	100.0	11,301	100.0
		번식우두수	27,335	100.0	194	100.0	874	100.0	2,412	100.0	23,855	100.0	8,804	100.0

부표 7.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농장수: 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309	37.7	44	41.1	21	20.4	42	32.3	202	42.1	20	29.9
	0~10%미만	313	38.2	44	41.1	21	20.4	44	33.8	204	42.5	20	29.9
	10~20%미만	1	0.1	0	-	1	1.0	0	-	0	-	0	-
	20~30%미만	6	0.7	0	-	1	1.0	1	0.8	4	0.8	0	-
	30~40%미만	4	0.5	0	-	2	1.9	1	0.8	1	0.2	0	-
	40~50%미만	7	0.9	0	-	3	2.9	2	1.5	2	0.4	1	1.5
	50~60%미만	20	2.4	1	0.9	6	5.8	1	0.8	12	2.5	3	4.5
	60~70%미만	29	3.5	4	3.7	6	5.8	3	2.3	16	3.3	2	3.0
	70~80%미만	46	5.6	5	4.7	6	5.8	9	6.9	26	5.4	3	4.5
	80~90%미만	112	13.7	8	7.5	16	15.5	17	13.1	71	14.8	12	17.9
	90~100%	282	34.4	45	42.1	41	39.8	52	40.0	144	30.0	26	38.8
	100% 만	131	16.0	42	39.3	25	24.3	23	17.7	41	8.5	3	4.5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195	23.8	14	13.1	21	20.4	31	23.8	129	26.9	30	44.8
	(번식농장)	111	13.5	36	33.6	21	20.4	20	15.4	34	7.1	2	3.0
	(일관사육농 장)	400	48.8	27	25.2	61	59.2	68	52.3	244	50.8	45	67.2
합계		820	100.0	107	100.0	103	100.0	130	100.0	480	100.0	67	100.0

부표 8.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법인 사육두수: 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59,454	36.4	203	24.7	723	21.1	3,268	34.1	55,260	37.0	15,771	27.3
		가임암소두수	127	0.3	35	8.1	25	1.6	23	0.7	44	0.1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0,355	6.3	301	36.6	581	17.0	1,277	13.3	8,196	5.5	2,073	3.6
		가임암소두수	1,815	4.2	200	46.5	331	20.6	539	16.7	745	2.0	6	0.0
		번식우두수	1,815	4.9	200	55.2	331	25.5	539	20.1	745	2.3	6	0.0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93,399	57.2	318	38.7	2,119	61.9	5,040	52.6	85,922	57.5	39,911	69.1
		가임암소두수	41,014	95.5	195	45.3	1,251	77.8	2,659	82.6	36,909	97.9	16,668	100.0
		번식우두수	35,072	95.1	162	44.8	965	74.5	2,138	79.9	31,807	97.7	14,790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163,208	100.0	822	100.0	3,423	100.0	9,585	100.0	149,378	100.0	57,755	100.0	
	가임암소두수	42,956	100.0	430	100.0	1,607	100.0	3,221	100.0	37,698	100.0	16,674	100.0	
	번식우두수	36,887	100.0	362	100.0	1,296	100.0	2,677	100.0	32,552	100.0	14,796	100.0	

부표 9.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2,138	11.8	1,574	16.1	277	6.0	166	7.0	121	8.4	1	5.3
	0~10%미만	2,154	11.8	1,578	16.2	286	6.2	168	7.1	122	8.5	1	5.3
	10~20%미만	36	0.2	21	0.2	8	0.2	3	0.1	4	0.3	-	-
	20~30%미만	83	0.5	52	0.5	21	0.5	6	0.3	4	0.3	-	-
	30~40%미만	167	0.9	118	1.2	32	0.7	13	0.5	4	0.3	-	-
	40~50%미만	155	0.9	77	0.8	51	1.1	14	0.6	13	0.9	1	5.3
	50~60%미만	640	3.5	411	4.2	142	3.1	50	2.1	37	2.6	3	15.8
	60~70%미만	814	4.5	470	4.8	190	4.1	92	3.9	62	4.3	1	5.3
	70~80%미만	1,309	7.2	467	4.8	432	9.4	238	10.0	172	11.9	2	10.5
	80~90%미만	2,692	14.8	803	8.2	941	20.4	559	23.6	389	27.0	3	15.8
	90~100%	10,139	55.7	5,768	59.1	2,509	54.4	1,226	51.8	636	44.1	8	42.1
	100% 만	7,200	39.6	5,480	56.1	1,284	27.8	351	14.8	85	5.9	1	5.3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3,940	21.7	1,216	12.5	1,217	26.4	814	34.4	693	48.0	9	47.4
	(번식농장)	6,405	35.2	5,047	51.7	1,035	22.4	260	11.0	63	4.4	1	5.3
	(일관사육농 장)	9,646	53.0	3,144	32.2	3,300	71.6	1,943	82.0	1,259	87.2	17	89.5
합계		18,189	100.0	9,765	100.0	4,612	100.0	2,369	100.0	1,443	100.0	19	100.0

부표 10.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50세~59세(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3,403	9.6	2,415	12.3	515	5.9	272	6.2	201	7.7	3	9.1
	0~10%미만	3,416	9.7	2,417	12.3	522	6.0	275	6.3	202	7.7	3	9.1
	10~20%미만	63	0.2	31	0.2	14	0.2	9	0.2	9	0.3	-	-
	20~30%미만	162	0.5	114	0.6	34	0.4	8	0.2	6	0.2	2	6.1
	30~40%미만	242	0.7	177	0.9	34	0.4	16	0.4	15	0.6	-	-
	40~50%미만	249	0.7	105	0.5	88	1.0	30	0.7	26	1.0	-	-
	50~60%미만	1,097	3.1	792	4.0	166	1.9	89	2.0	50	1.9	1	3.0
	60~70%미만	1,487	4.2	854	4.3	352	4.0	165	3.8	116	4.4	3	9.1
	70~80%미만	2,434	6.9	899	4.6	780	8.9	418	9.6	337	12.9	10	30.3
	80~90%미만	5,187	14.7	1,705	8.7	1,736	19.8	1,043	23.9	703	26.9	7	21.2
	90~100%	21,060	59.5	12,557	63.9	5,045	57.5	2,307	52.9	1,151	44.0	7	21.2
	100% 만	15,403	43.5	12,009	61.1	2,617	29.8	625	14.3	152	5.8	1	3.0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7,698	21.7	2,319	11.8	2,492	28.4	1,638	37.6	1,249	47.8	19	57.6
	(번식농장)	13,652	38.6	11,046	56.2	2,040	23.3	462	10.6	104	4.0	-	-
	(일관사육농 장)	18,342	51.8	6,190	31.5	6,216	70.9	3,626	83.2	2,310	88.3	30	90.9
합계		35,397	100.0	19,651	100.0	8,771	100.0	4,360	100.0	2,615	100.0	33	100.0

부표 1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60세~69세(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3,222	9.6	2,454	10.5	438	7.0	199	8.1	131	10.5	2	9.5
	0~10%미만	3,225	9.6	2,455	10.5	439	7.0	199	8.1	132	10.6	2	9.5
	10~20%미만	30	0.1	18	0.1	8	0.1	2	0.1	2	0.2	-	-
	20~30%미만	98	0.3	80	0.3	11	0.2	4	0.2	3	0.2	-	-
	30~40%미만	215	0.6	180	0.8	22	0.3	9	0.4	4	0.3	-	-
	40~50%미만	200	0.6	127	0.5	46	0.7	17	0.7	10	0.8	-	-
	50~60%미만	1,026	3.1	815	3.5	133	2.1	55	2.2	23	1.8	-	-
	60~70%미만	1,306	3.9	908	3.9	243	3.9	96	3.9	59	4.7	1	4.8
	70~80%미만	1,843	5.5	945	4.0	488	7.8	231	9.4	179	14.4	5	23.8
	80~90%미만	3,844	11.5	1,693	7.2	1,230	19.6	615	25.0	306	24.6	5	23.8
	90~100%	21,648	64.7	16,226	69.2	3,667	58.3	1,229	50.0	526	42.3	8	38.1
	100% 만	18,188	54.4	15,758	67.2	2,017	32.1	338	13.8	75	6.0	1	4.8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5,771	17.3	2,346	10.0	1,884	30.0	918	37.4	623	50.1	15	71.4
	(번식농장)	16,603	49.7	14,751	62.9	1,552	24.7	253	10.3	47	3.8	-	-
	(일관사육농 장)	13,610	40.7	6,242	26.6	4,297	68.3	2,005	81.6	1,066	85.7	19	90.5
합계		33,435	100.0	23,447	100.0	6,287	100.0	2,457	100.0	1,244	100.0	21	100.0

부표 1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3,037	12.5	2,830	13.2	144	7.5	48	8.0	15	7.1	-	-
	0~10%미만	3,039	12.5	2,830	13.2	146	7.6	48	8.0	15	7.1	-	-
	10~20%미만	13	0.1	13	0.1	-	-	-	-	-	-	-	-
	20~30%미만	61	0.3	57	0.3	1	0.1	3	0.5	-	-	-	-
	30~40%미만	123	0.5	110	0.5	9	0.5	4	0.7	-	-	-	-
	40~50%미만	95	0.4	69	0.3	18	0.9	4	0.7	4	1.9	-	-
	50~60%미만	833	3.4	758	3.5	53	2.8	15	2.5	7	3.3	-	-
	60~70%미만	840	3.5	700	3.3	95	4.9	30	5.0	15	7.1	-	-
	70~80%미만	870	3.6	585	2.7	187	9.7	68	11.3	30	14.2	-	-
	80~90%미만	1,497	6.2	910	4.2	382	19.9	151	25.0	54	25.6	-	-
	90~100%	16,857	69.6	15,459	71.9	1,032	53.7	280	46.4	86	40.8	1	100.0
	100% 만	15,961	65.9	15,286	71.1	580	30.2	78	12.9	17	8.1	-	-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2,505	10.3	1,589	7.4	558	29.0	252	41.8	106	50.2	1	100.0
	(번식농장)	15,085	62.3	14,579	67.8	447	23.2	53	8.8	6	2.8	-	-
	(일관사육농 장)	6,106	25.2	4,082	19.0	1,332	69.3	502	83.3	190	90.0	1	100.0
합계		24,228	100.0	21,491	100.0	1,923	100.0	603	100.0	211	100.0	1	100.0

부표 1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48,481	7.6	6,873	9.4	8,852	6.0	11,962	7.2	20,794	8.3	940	6.6
		가임암소두수	1,520	0.5	1,148	2.7	278	0.3	83	0.1	11	0.0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91,796	14.4	33,265	45.7	31,242	21.1	17,425	10.6	9,864	3.9	609	4.3
		가임암소두수	47,504	15.2	20,507	47.8	16,495	20.7	7,441	9.3	3,061	2.8	2	0.0
		번식우두수	47,503	17.7	20,507	56.1	16,495	23.9	7,441	10.7	3,060	3.3	2	0.0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496,256	78.0	32,710	44.9	107,916	72.9	135,628	82.2	220,002	87.8	12,608	89.1
		가임암소두수	263,030	84.3	21,265	49.5	62,807	78.9	72,154	90.6	106,804	97.2	6,424	100.0
		번식우두수	220,278	82.3	16,050	43.9	52,431	76.1	61,878	89.3	89,919	96.7	4,673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636,533	100.0	72,848	100.0	148,010	100.0	165,015	100.0	250,660	100.0	14,157	100.0
		가임암소두수	312,054	100.0	42,920	100.0	79,580	100.0	79,678	100.0	109,876	100.0	6,426	100.0
		번식우두수	267,781	100.0	36,557	100.0	68,926	100.0	69,319	100.0	92,979	100.0	4,675	100.0

부표 1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50세~59세(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81,591	6.9	10,471	7.1	16,641	5.9	19,016	6.2	35,463	7.9	1,873	8.4
		가임암소두수	2,110	0.4	1,776	2.0	276	0.2	50	0.0	8	0.0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80,249	15.2	73,721	49.7	61,041	21.8	30,630	10.1	14,857	3.3	-	-
		가임암소두수	94,181	16.6	45,707	51.4	31,724	21.5	12,955	9.0	3,795	2.0	-	-
		번식우두수	94,181	19.2	45,707	58.8	31,724	24.5	12,955	10.3	3,795	2.4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921,647	77.9	64,142	43.2	202,260	72.3	254,842	83.7	400,403	88.8	20,541	91.6
		가임암소두수	469,700	83.0	41,404	46.6	115,390	78.3	131,116	91.0	181,790	98.0	6,314	100.0
		번식우두수	395,869	80.8	31,963	41.2	97,950	75.5	112,860	89.7	153,096	97.6	4,862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1,183,487	100.0	148,334	100.0	279,942	100.0	304,488	100.0	450,723	100.0	22,414	100.0	
	가임암소두수	565,991	100.0	88,887	100.0	147,390	100.0	144,121	100.0	185,593	100.0	6,314	100.0	
	번식우두수	490,050	100.0	77,670	100.0	129,674	100.0	125,815	100.0	156,891	100.0	4,862	100.0	

부표 15.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60세~69세(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60,912	8.3	9,452	6.1	14,013	7.1	13,848	8.2	23,599	11.3	1,820	12.5
		가임암소두수	1,802	0.5	1,524	1.6	156	0.2	102	0.1	20	0.0	2	0.0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53,709	21.0	85,100	54.7	45,460	23.1	16,730	9.9	6,419	3.1	-	-
		가임암소두수	83,044	23.7	52,891	56.5	22,708	22.7	5,916	7.9	1,529	1.9	-	-
		번식우두수	83,044	27.2	52,891	63.5	22,708	25.6	5,916	9.0	1,529	2.2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515,695	70.6	60,903	39.2	137,220	69.8	138,359	81.9	179,213	85.7	12,682	87.5
		가임암소두수	265,196	75.8	39,170	41.9	77,167	77.1	69,323	92.0	79,536	98.1	5,069	100.0
		번식우두수	222,654	72.8	30,341	36.5	65,842	74.4	59,541	91.0	66,930	97.8	4,250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730,316	100.0	155,455	100.0	196,693	100.0	168,937	100.0	209,231	100.0	14,502	100.0	
	가임암소두수	350,042	100.0	93,585	100.0	100,031	100.0	75,341	100.0	81,085	100.0	5,071	100.0	
	번식우두수	305,698	100.0	83,232	100.0	88,550	100.0	65,457	100.0	68,459	100.0	4,250	100.0	

부표 16.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14년)

2014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17,283	7.5	7,002	7.2	4,388	7.4	3,244	7.9	2,649	7.7	-	-
		가임암소두수	2,169	1.8	2,093	3.5	69	0.2	7	0.0	-	-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74,461	32.1	57,728	59.2	12,633	21.4	3,254	8.0	846	2.4	-	-
		가임암소두수	44,364	36.1	36,651	61.2	6,191	20.6	1,351	7.4	171	1.2	-	-
		번식우두수	44,364	41.6	36,651	69.6	6,191	23.7	1,351	8.6	171	1.4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140,150	60.4	32,742	33.6	42,032	71.2	34,332	84.1	31,044	89.9	551	100.0
		가임암소두수	76,374	62.1	21,179	35.3	23,766	79.2	16,872	92.6	14,557	98.8	191	100.0
		번식우두수	62,254	58.4	16,000	30.4	19,971	76.3	14,313	91.4	11,970	98.6	175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231,894	100.0	97,472	100.0	59,053	100.0	40,830	100.0	34,539	100.0	551	100.0
		가임암소두수	122,907	100.0	59,923	100.0	30,026	100.0	18,230	100.0	14,728	100.0	191	100.0
		번식우두수	106,618	100.0	52,651	100.0	26,162	100.0	15,664	100.0	12,141	100.0	175	100.0

부표 17.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1,572	12.9	812	18.0	298	8.6	214	8.6	248	14.3	5	21.7
	0~10%미만	1,578	12.9	816	18.1	298	8.6	216	8.7	248	14.3	5	21.7
	10~20%미만	26	0.2	9	0.2	7	0.2	6	0.2	4	0.2	-	-
	20~30%미만	40	0.3	19	0.4	9	0.3	8	0.3	4	0.2	-	-
	30~40%미만	47	0.4	24	0.5	11	0.3	8	0.3	4	0.2	-	-
	40~50%미만	51	0.4	16	0.4	16	0.5	12	0.5	7	0.4	-	-
	50~60%미만	217	1.8	121	2.7	35	1.0	39	1.6	22	1.3	-	-
	60~70%미만	349	2.9	156	3.5	87	2.5	56	2.2	50	2.9	-	-
	70~80%미만	596	4.9	165	3.7	185	5.3	125	5.0	121	7.0	4	17.4
	80~90%미만	1,475	12.1	352	7.8	469	13.5	394	15.8	260	15.0	1	4.3
	90~100%	7,825	64.1	2,821	62.7	2,362	67.9	1,631	65.4	1,011	58.4	13	56.5
	100% 만	4,785	39.2	2,685	59.7	1,381	39.7	535	21.4	184	10.6	-	-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1,857	15.2	358	8.0	481	13.8	507	20.3	511	29.5	7	30.4
	(번식농장)	4,392	36.0	2,540	56.5	1,239	35.6	464	18.6	149	8.6	-	-
	(일관사육농 장)	6,240	51.1	1,147	25.5	1,942	55.8	1,817	72.8	1,334	77.1	18	78.3
합계		12,204	100.0	4,499	100.0	3,479	100.0	2,495	100.0	1,731	100.0	23	100.0

부표 18.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50세~59세(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1,776	9.1	1,029	12.3	323	6.1	216	6.1	208	9.4	4	14.8
	0~10%미만	1,784	9.2	1,030	12.3	327	6.1	216	6.1	211	9.5	4	14.8
	10~20%미만	32	0.2	15	0.2	8	0.2	6	0.2	3	0.1	-	-
	20~30%미만	42	0.2	26	0.3	8	0.2	7	0.2	1	0.0	-	-
	30~40%미만	67	0.3	37	0.4	18	0.3	5	0.1	7	0.3	-	-
	40~50%미만	80	0.4	31	0.4	23	0.4	17	0.5	9	0.4	-	-
	50~60%미만	315	1.6	205	2.4	62	1.2	32	0.9	16	0.7	1	3.7
	60~70%미만	496	2.5	275	3.3	119	2.2	66	1.9	36	1.6	1	3.7
	70~80%미만	857	4.4	294	3.5	263	4.9	161	4.6	139	6.3	2	7.4
	80~90%미만	2,414	12.4	711	8.5	752	14.1	533	15.1	418	18.8	2	7.4
	90~100%	13,386	68.7	5,756	68.7	3,751	70.4	2,495	70.5	1,384	62.2	17	63.0
	100% 만	8,602	44.2	5,477	65.4	2,133	40.0	807	22.8	185	8.3	3	11.1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2,693	13.8	509	6.1	722	13.5	752	21.3	710	31.9	15	55.6
	(번식농장)	8,054	41.4	5,243	62.6	1,960	36.8	699	19.8	152	6.8	2	7.4
	(일관사육농 장)	9,643	49.5	2,108	25.2	3,048	57.2	2,623	74.1	1,864	83.8	21	77.8
합계		19,473	100.0	8,380	100.0	5,331	100.0	3,538	100.0	2,224	100.0	27	100.0

부표 19.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60세~69세(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2,597	7.7	1,485	9.2	530	5.4	338	6.7	244	8.4	2	8.7
	0~10%미만	2,604	7.7	1,488	9.2	532	5.5	338	6.7	246	8.5	2	8.7
	10~20%미만	23	0.1	10	0.1	4	0.0	4	0.1	5	0.2	-	-
	20~30%미만	52	0.2	31	0.2	7	0.1	7	0.1	7	0.2	-	-
	30~40%미만	96	0.3	67	0.4	14	0.1	6	0.1	9	0.3	-	-
	40~50%미만	84	0.2	41	0.3	20	0.2	11	0.2	12	0.4	-	-
	50~60%미만	498	1.5	346	2.1	81	0.8	36	0.7	35	1.2	1	4.3
	60~70%미만	746	2.2	428	2.6	158	1.6	89	1.8	71	2.4	2	8.7
	70~80%미만	1,331	3.9	490	3.0	448	4.6	197	3.9	196	6.7	3	13.0
	80~90%미만	4,071	12.0	1,352	8.3	1,351	13.9	803	16.0	565	19.4	6	26.1
	90~100%	24,385	72.0	11,964	73.8	7,123	73.1	3,537	70.3	1,761	60.6	9	39.1
	100% 만	16,848	49.7	11,441	70.5	4,038	41.5	1,136	22.6	233	8.0	-	-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4,438	13.1	943	5.8	1,379	14.2	1,079	21.5	1,037	35.7	14	60.9
	(번식농장)	15,854	46.8	10,991	67.8	3,678	37.8	988	19.6	197	6.8	-	-
	(일관사육농 장)	15,439	45.6	3,741	23.1	5,530	56.8	3,702	73.6	2,466	84.8	21	91.3
합계		33,890	100.0	16,217	100.0	9,738	100.0	5,028	100.0	2,907	100.0	23	100.0

부표 20.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농장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농장수	비중(%)
기 준	0% 농장만 (비육농장)	1,872	8.0	1,390	8.3	301	6.8	118	7.4	63	9.6	3	37.5
	0~10%미만	1,873	8.0	1,390	8.3	301	6.8	118	7.4	64	9.8	3	37.5
	10~20%미만	7	0.0	4	0.0	2	0.0	1	0.1	-	-	-	-
	20~30%미만	32	0.1	22	0.1	5	0.1	3	0.2	2	0.3	-	-
	30~40%미만	57	0.2	48	0.3	7	0.2	2	0.1	-	-	-	-
	40~50%미만	30	0.1	17	0.1	9	0.2	2	0.1	2	0.3	-	-
	50~60%미만	423	1.8	365	2.2	38	0.9	11	0.7	9	1.4	-	-
	60~70%미만	598	2.6	446	2.7	84	1.9	40	2.5	28	4.3	-	-
	70~80%미만	863	3.7	495	3.0	231	5.2	101	6.4	36	5.5	1	12.5
	80~90%미만	2,189	9.3	1,072	6.4	687	15.4	295	18.6	135	20.6	1	12.5
	90~100%	17,365	74.1	12,888	77.0	3,085	69.3	1,012	63.8	380	57.9	3	37.5
	100% 만	14,663	62.6	12,525	74.8	1,777	39.9	313	19.7	48	7.3	-	-
	수소 15개월령 이상 있는 농장	2,033	8.7	735	4.4	693	15.6	374	23.6	231	35.2	3	37.5
	(번식농장)	14,080	60.1	12,172	72.7	1,599	35.9	269	17.0	40	6.1	-	-
	(일관사육농 장)	7,485	31.9	3,185	19.0	2,549	57.3	1,198	75.6	553	84.3	5	62.5
합계		23,437	100.0	16,747	100.0	4,449	100.0	1,585	100.0	656	100.0	8	100.0

부표 21.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49세 미만(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75,892	12.0	4,465	11.7	9,644	8.4	15,124	8.6	46,659	15.4	3,712	25.4
		가임암소두수	637	0.2	385	1.8	108	0.2	85	0.1	59	0.0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13,854	18.0	20,945	54.7	39,136	34.1	31,279	17.8	22,494	7.4	-	-
		가임암소두수	55,057	19.1	12,744	59.4	21,206	35.1	14,525	16.8	6,582	5.5	-	-
		번식우두수	55,057	21.2	12,744	66.4	21,206	38.4	14,525	18.6	6,582	6.1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441,295	69.9	12,909	33.7	65,941	57.5	129,393	73.6	233,052	77.1	10,916	74.6
		가임암소두수	231,909	80.6	8,332	38.8	39,058	64.7	71,606	83.1	112,913	94.4	5,196	100.0
		번식우두수	205,170	78.8	6,463	33.6	34,078	61.6	63,733	81.4	100,896	93.9	4,752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631,041	100.0	38,319	100.0	114,721	100.0	175,796	100.0	302,205	100.0	14,628	100.0	
	가임암소두수	287,603	100.0	21,461	100.0	60,372	100.0	86,216	100.0	119,554	100.0	5,196	100.0	
	번식우두수	260,227	100.0	19,207	100.0	55,284	100.0	78,258	100.0	107,478	100.0	4,752	100.0	

부표 22.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50세~59세(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68,853	7.9	5,087	7.2	10,406	6.0	15,084	6.1	38,276	10.1	3,127	16.4
		가임암소두수	811	0.2	539	1.3	127	0.1	104	0.1	41	0.0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73,590	19.9	41,975	59.4	61,055	35.2	47,222	19.0	23,338	6.2	1,856	9.7
		가임암소두수	91,218	21.3	25,816	61.8	34,315	36.0	23,182	18.2	7,905	4.8	266	5.0
		번식우두수	91,218	23.4	25,816	67.9	34,315	39.2	23,182	19.9	7,905	5.4	266	5.6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628,944	72.2	23,659	33.5	101,948	58.8	186,695	75.0	316,642	83.7	14,075	73.9
		가임암소두수	336,122	78.5	15,405	36.9	60,834	63.9	103,880	81.7	156,003	95.2	5,074	95.0
		번식우두수	298,596	76.6	12,181	32.1	53,175	60.8	93,433	80.1	139,807	94.6	4,498	94.4
합계	전체사육두수	871,387	100.0	70,721	100.0	173,409	100.0	249,001	100.0	378,256	100.0	19,058	100.0	
	가임암소두수	428,151	100.0	41,760	100.0	95,276	100.0	127,166	100.0	163,949	100.0	5,340	100.0	
	번식우두수	389,814	100.0	37,997	100.0	87,490	100.0	116,615	100.0	147,712	100.0	4,764	100.0	

부표 23.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60세~69세(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두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89,552	7.0	7,685	5.6	17,068	5.4	23,474	6.7	41,325	8.6	1,254	7.6
		가임암소두수	1,105	0.2	662	0.8	158	0.1	29	0.0	256	0.1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292,639	22.9	88,099	64.0	112,504	35.8	64,921	18.6	27,115	5.7	-	-
		가임암소두수	158,136	25.0	54,262	66.3	62,271	36.3	31,919	18.5	9,684	4.7	-	-
		번식우두수	158,136	27.3	54,262	71.3	62,271	39.1	31,919	20.1	9,684	5.2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897,910	70.1	41,889	30.4	184,879	58.8	260,736	74.7	410,406	85.7	15,199	92.4
		가임암소두수	473,942	74.9	26,921	32.9	109,337	63.7	140,559	81.5	197,125	95.2	6,470	100.0
		번식우두수	421,245	72.7	21,803	28.7	97,144	60.9	126,881	79.9	175,417	94.8	5,479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1,280,101	100.0	137,673	100.0	314,451	100.0	349,131	100.0	478,846	100.0	16,453	100.0
		가임암소두수	633,183	100.0	81,845	100.0	171,766	100.0	172,507	100.0	207,065	100.0	6,470	100.0
		번식우두수	579,381	100.0	76,065	100.0	159,415	100.0	158,800	100.0	185,101	100.0	5,479	100.0

부표 24. 모든 월령의 사육규모별 암소농가 비중 분포 비교(사육두수)-연령별: 만 70세 이상(2021년)

2021년 12월 1일 기준														
구 분			전체		20두 미만		20두 이상~50두 미만		50두 이상~100두 미만		100두 이상 (100~500두가 아님)		500두 이상	
			두 수	비중(%)	두 수	비중(%)	두 수	비중(%)	두 수	비중(%)	두 수	비중(%)	두 수	비중(%)
기준	0% 농장만 (비육농장)	전체사육두수	35,560	7.6	5,589	4.9	9,488	6.8	8,253	7.6	12,230	11.3	2,083	34.7
		가임암소두수	844	0.4	709	1.0	77	0.1	15	0.0	43	0.1	-	-
		번식우두수	-	-	-	-	-	-	-	-	-	-	-	-
	(번식농장)	전체사육두수	145,850	31.1	75,632	66.7	47,185	33.8	17,499	16.1	5,534	5.1	-	-
		가임암소두수	81,499	34.0	46,341	68.4	25,269	34.3	7,924	15.1	1,965	4.3	-	-
		번식우두수	81,499	37.2	46,341	73.6	25,269	37.2	7,924	16.6	1,965	4.9	-	-
	(일관사육농장)	전체사육두수	288,185	61.4	32,210	28.4	82,887	59.4	82,619	76.2	90,469	83.6	3,926	65.3
		가임암소두수	157,097	65.6	20,680	30.5	48,418	65.6	44,583	84.9	43,416	95.6	2,108	100.0
		번식우두수	137,328	62.8	16,650	26.4	42,678	62.8	39,772	83.4	38,228	95.1	1,857	100.0
합계		전체사육두수	469,595	100.0	113,431	100.0	139,560	100.0	108,371	100.0	108,233	100.0	6,009	100.0
		가임암소두수	239,440	100.0	67,730	100.0	73,764	100.0	52,522	100.0	45,424	100.0	2,108	100.0
		번식우두수	218,827	100.0	62,991	100.0	67,947	100.0	47,696	100.0	40,193	100.0	1,857	100.0

본 보고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있으며, 본 연구결과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자료 인용에 대한 내용을 명기한 경우에만 사전 승인 없이 무상으로 인용할 수 있음.